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134-01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본 보고서는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가 서울시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 출 문

서울특별시 귀하

우리 연구진은 서울특별시에서 의뢰 받은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에 대해 계약에 따른
연구목적에 충족하고 연구기간을 준수하여 작성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10. 28

연구진

책임 연구원 : 공병호

공동 연구원 : 최인화, 한유미

연구 보조원 : 김현정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 1990년대 말부터 유보통합의 시도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개괄적인 연구를 심화시켜 행정, 교직원 양성과정, 교육보육과정, 평가제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모델이 될 만한 보육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유보통합의 합리적인 절차 및 통합시스템 전반에 대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 현재 대한민국 유보통합의 장애 요인 관련 심층 조사
 -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
 - 유보통합 추진 과정상의 문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인사 인터뷰 등 조사 연구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및 정책 관련 연구 분석
 - 스웨덴, 뉴질랜드 유보통합 관련 연구 분석
 - 양국의 유보통합 역사, 행정체계, 재정, 관리 감독, 교육과정, 교직원의 처우 및 양성, 평가 관련 연구 분석
 - 향후 우리나라 유보통합 장애 요인(과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양국의 행정체계, 교직원 처우 및 양성, 재정 등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도출
 -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과 통합 시스템 도출
 -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구체적 절차 도출
 - 교육과정, 교직원 처우, 교직원 양성과정, 행정체계, 재정, 관리 감독, 평가 등 분야별로 구체적 시스템 도출

다. 연구 방법

문헌조사 실시

- 보육·교육 통합 시스템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 보육·교육 통계자료 조사
- 뉴질랜드, 스웨덴, 한국의 보육·교육 통합 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현지 방문조사 실시

- 스웨덴 현지 프리스쿨, 원장, 유아교사, 가정보육사, 교육부 공무원, 국가교육청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부모, 교수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 뉴질랜드 현지 교사, 센터 매니저, 교육서비스 매니저, 유치원협회장, 교육부 공무원, 교육기관 평가국(ERO) 공무원, 대학교 교수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전문가 초점그룹면담/자문회의 실시

- 보육·교육 학계, 연구자, 연합회, 원장, 교사, 부모 등 인터뷰

서면조사(이메일)

2. 시사점 도출

가. 유보 통합의 행재정 방안

- 행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체제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유아교육법’ 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법령의 확보가 필요함. 또한 영유아 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유보통합 시 중앙정부(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는 중앙담당부처와 지방담당부처를 신설하여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고 통합법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자체의 효과적 기능분담을 위해 재정지원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의 높은 부채비율(최대 50%) 인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궁극적으로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충분치는 않으나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의 제도처럼 외견상 보육료 지원을 줄이는 정책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부로의 통합을 전제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인상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계속 순환되므로 교육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따라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제안함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방안

- 우리나라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에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를 유치원교사 양성과 같은 폐쇄적 목적형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음. 아직 모색의 단계이지만 연구진의 의견은 3년제, 개방형 학점제에서 학과 단위의 폐쇄형 목적제로, 학과도 관련 커리큘럼 편성률 80% 이상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방안이 실현(2022년까지 법제화, 2023년 실시 전망)되면 실제로 유치원교사 양성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되므로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일원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통합과 양성과정의 격차 해소를 전제로 기취득자의 자격인정 문제, 현직교육, 유아교육(학)과와 보육(학)과 등 대학교 내 학과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사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현행 양성과정에 있어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현장실습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임. 양국 모두 재학기간 중 통산 한 학기에 준하는 실습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보육교사는 6주로 되어 있음
-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양국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데도 양국의 보육의 질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보육교육의 질이 유아교사의 학력이나 자격 기준에 의존해온 것만은 아니고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음
-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처우 등은 끝없는 질적 차이의 문제가 제시되어왔음.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둘러싼 양성체계와 지원체계의 통합을 위해서 유보 일원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다. 교육·보육과정 방안

-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개편되어 2020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임. 즉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유아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임. 유아들은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기존교육과정과 달리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됨. 교사와 원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는 개별 현장에서 영유아와의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실천을 개발하는 것임. 이는 뉴질랜드의 교사들이 테파리키를 기반으로 교육적 실재를 개발하도록 요구받는 상황과 유사하며, 스웨덴의 경우에도 영유아교육과정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교육활동은 다양하게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25개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사, 원장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교사와 원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

과정의 실천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험적 적용이 절실함. 그 예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친화형 보육’은 어른 편익 중심이 아닌 아이의 성장 발달 및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프로그램을 교사 연수과정 등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함

라. 평가 관련(평가제도, 질 관리) 방안

- 특별한 점검이나 감사, 평가 위주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개방 등 일상적인 질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사립의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제도 실시 과정에서 자체 평가의 비중이 높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와 달리 보육교직원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운다는 점임.
-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가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음. 따라서 특히 물리적 환경 기준은 인가규정과 평가기준의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또한 평가 지표는 현재 처한 상황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중장기적 안목이 반영되어야 함. 예를 들어 누리과정의 개편 등도 평가지표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즉, 교육과정이 대강화(大綱化)되어 있으므로 평가도 대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고려가 제시되어야 함.
- 나아가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질 관리에 대한 관점 등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즉 영유아기 관에 대한 획일화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누리과정 지도서식 운영을 강제한다면 기관의 교육철학과 지역 특성, 기관의 상황, 영유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이 어려울 것임
- 서울형이나 국공립 전환 시설 등을 선정할 때 운영과정에서 바꾸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어 선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자체 놀이터가 없더라도 외부 실외놀이터 이용의 용이성은 보육과정의 질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됨. 특별한 점검이나 감사, 평가 위주가 아니라 등하원시 부모에 대한 일상적 개방 등 일상적인 질 관리에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는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음. 향후 서울시 정책에 더욱 고려할 점이라고 사료됨

목 차

요 약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
II.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 및 현황	9
1.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9
2. 국내 유보통합 관계자 인터뷰 조사	14
3.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 및 현황	16
4. 우리나라 향후 유보통합의 쟁점 및 과제	18
III. 스웨덴의 유보통합	23
1. 스웨덴의 유보통합 과정	23
2. 스웨덴 유보통합 시스템	36
3. 교육과정	65
4. 평가 및 질 관리	69
IV.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79
1. 뉴질랜드의 유보통합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79
2. 뉴질랜드 유보통합 시스템	84
3. 교사자격 및 교사양성	103
4. 교직원	115
5. 교육과정	120
6. 평가 및 질 관리	127
V. 우리나라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	136
1. 유보통합 행.재정 방안	136
2. 영유아 교사의 양성 및 자격 방안	143
3. 교육.보육과정 방안	146

4. 평가 관련(평가제도, 질 관리) 방안	149
5. 영유아 권리/ 교사 권리/ 부모 권리	154
■ 참고문헌	160

표 목 차

<표 I - 1> 주요 전화 및 면담 인터뷰 내역	4
<표 I - 2> 스웨덴 방문 일정	5
<표 I - 3> 스웨덴 면접 대상 목록	6
<표 I - 4> 뉴질랜드 방문 일정	7
<표 II - 1> 당시 유보통합 모델 개발 및 검토 범위	17
<표 II - 2>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달 및 지원체계 현황	21
<표 II - 3> 유보통합 분야별 통합 추진 현황	22
<표 III - 1> 교육법(Skollagen) 법 8장 : 프리스쿨의 제공	37
<표 III - 2> 연령별 프리스쿨 등록 아동 비율	39
<표 III - 3> 공립과 사립 시설 수(2017)	39
<표 III - 4> 나카 지자체의 입소 우선 기준	40
<표 III - 5> 교육법 8장 부모 부담 관련 조항	42
<표 III - 6> 보육료 상한제(Maxtaxa)	43
<표 III - 7> 스톡홀름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43
<표 III - 8> 나카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43
<표 III - 9> 보조교사 교육과정	48
<표 III -10> 지자체별 대체교사 요구 조건	51
<표 III -11> 2001년 스톡홀름 교원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의 선택과목	52
<표 III -12> 2002년 예테보리 대학교의 초기교사 양성과정	54
<표 III -13> 스톡홀름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교과목(2014)	56
<표 III -14> 예테보리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학점구성	57
<표 III -15> 예테보리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학기별 교과목(2019)	57
<표 III -16> 공립과 사립 프리스쿨의 풀타임 교직원의 수와 1인당 아동 수	63
<표 III -17> 부트쉬르카 지자체의 보육의 질 평가	72
<표 III -18> 외부 평가로서의 부모만족도 설문 조사 문항	73
<표 III -19> 나카 지자체의 부모만족도 조사에 기초한 통계 항목	73
<표 III -20> 지자체와 프리스쿨의 자체 평가를 위한 국가적 기준(축약판)	74
<표 III -21> 국립교육감사원의 감사 유형	75
<표 III -22> 국립교육감사원의 감사 단계	77
<표 IV - 1>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	85
<표 IV - 2>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집행	88
<표 IV - 3> 교육보육센터 종일반(All day)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1

<표IV- 4> 교육보육센터 반일반(Sessional)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	91
<표IV- 5> 유치원 종일반/반일반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2
<표IV- 6> 가정기반센터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2
<표IV- 7> 코헝가 레오(교사주도기관 제외)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2
<표IV- 8> 부모주도 놀이센터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3
<표IV- 9> 부모주도 인가 놀이집단과 인가면제서비스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3
<표IV-10> 형평성 기금의 한 아동 당 지원액	93
<표IV-11> 특정대상을 위한 표적 기금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94
<표IV-12> 뉴질랜드 유치원과 교육보육센터의 비교	95
<표IV-13> 인가 서비스 유형별 기관 수 (2000년, 2017년)	100
<표IV-14> 와이카토 대학 (유아교육) 학사 학년별 교과목	106
<표IV-15> 와이카토 대학 (유아교육) 대학원 수료증과정 교과목	107
<표IV-16> 와이카토 기술대학 (유아교육) 학사 학년별 교과목	108
<표IV-17> 뉴질랜드 고등 전문학교 (유아교육) 학사 학년별 교과목	111
<표IV-18> 뉴질랜드 교육 직업 표준	112
<표IV-19> 교사위원회의 등록증 유형, 실무자격증과 유효기간(2015년 이전) ..	114
<표IV-20> 교육위원회의 등록증 유형, 실무자격증과 유효기간(2015년 후)	114
<표IV-21> 교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최저연봉	119
<표IV-22>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의 4 원칙	122
<표IV-23>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의 5 가닥	122
<표IV-24> 뉴질랜드 ERO 평가지표의 역할	130
<표IV-25> 평가 틀의 네 가지 축과 구성 요소	131
<표V- 1> 공사립 운영 관련 양국 제도 비교	141
<표V- 2> ERO 평가: 높은 자체 평가(자기 평가)의 비중	150
<표V- 3> 뉴질랜드 유아교육 전략 계획:단계적 실행 방안	152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수행 절차	4
<그림 II - 1>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 계획(3개년 통합 로드맵: 2014- 2016 후)	18
<그림 III - 1> 국립교육청 조직도	38
<그림 IV - 1>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분담	86
<그림 IV - 2> 뉴질랜드 인가 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 수(2000, 2017)	101
<그림 IV - 3> 인가 서비스 유형별 등록/이용 아동 연령별 비율(2000, 2017)	102
<그림 IV - 4> 연령별 인가 서비스 등록/이용 비율(2005-2017)	103
<그림 IV - 5> 뉴질랜드 정교사자격 체계	104
<그림 IV - 6> 뉴질랜드 교사양성기관 검색서비스	106
<그림 IV - 7> 인가 서비스 유형별 교직원 수(2012-2018)	115
<그림 IV - 8> 전체 교직원 중 자격/비자격 교직원의 수(2012-2018)	116
<그림 IV - 9> 전체 교직원 중 남성의 비율(2012-2018)	117
<그림 IV - 10> 유치원의 교사들 근무시간표	118
<그림 IV - 11> 뉴질랜드 ERO의 평가 틀	129
<그림 V - 1> 유보통합 시 영유아교육 행정체계	1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영유아보육법 제3조)
- 따라서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면 영유아가 어떠한 유형의 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받든지, 즉, 선택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서 차별을 받거나 영유아와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기회균등(機會均等)이 보장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종교,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음
- 영유아기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의 문제는 UN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서는 물론,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통합적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심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무상교육,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정책을 수립해왔음.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국가는 차이 없는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 없는 통합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였음
- 한편 공공성(公共性)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되어 있음. 즉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기회균등의 보장은 정책적으로 공공성의 확보로 귀결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위와 같은 의미에서 1990년대 말부터 유보통합의 시도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개괄적인 연구를 심화시켜 행·재정, 교직원 양성과

정, 교육·보육 과정, 평가제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으로 인하여 보육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문제도 새로이 이슈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모델이 될 만한 보육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유보통합의 합리적인 절차 및 통합시스템 전반에 대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활용 방안
 - 연구 결과 분석·파악된 통합과정을 기반으로 향후 유보통합 등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020년 누리과정 개편 시행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비한 서울시 보육정책방향 설정에 참고
 -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관련 정책과제 추진 논의 시 연구 결과 활용제안 등

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현재 대한민국 유보통합의 장애 요인 관련 심층 조사

-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
- 유보통합 추진 과정상의 문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인사 인터뷰 등 조사 연구

나.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및 정책 관련 연구 분석

- 스웨덴, 뉴질랜드 유보통합 관련 연구 분석
- 양국의 유보통합 역사, 행정체계, 재정, 관리 감독, 교육과정, 교직원의 처우 및 양성, 평가 관련 연구 분석
- 향후 우리나라 유보통합 장애 요인(과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양국의 행정체계, 교직원 처우 및 양성, 재정 등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도출
-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스웨덴과 뉴질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보육선진국인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사례 연구를 통해 유보통합의 걸림돌이 되

고 있는 행·재정 통합, 교직원 양성과정 통합 등의 과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전 세계에서 유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은 1998년에 유보통합을 이루었고, 뉴질랜드는 1988년에 유보통합을 이루었음
- 스웨덴은 인권 선진국으로서 영유아의 권리 보장에 가장 앞선 나라이며, 뉴질랜드는 보육공급에서 민간의 비율이 70% 정도이므로 민간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과 통합 시스템 구축 전반에 참조할 사항이 있음
- 아울러 현재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보육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 과제와 통합 이후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함

다.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과 통합 시스템 도출

-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구체적 절차 도출
- 교육과정, 교직원 처우, 교직원 양성과정, 행정체계, 재정, 관리 감독, 평가 등 분야별로 구체적 시스템 도출

3. 연구 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 보육·교육 통합 시스템 관련 문헌 및 보육·교육 통계자료 조사
- 전문가 초점그룹면담/자문회의 : 보육·교육 학계, 연구자, 연합회, 원장, 교사, 부모 등 인터뷰
- 서면조사(이메일)

나.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연구 설계 (착수 보고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방법 검토
2단계 문헌 조사	문헌 조사 보육교육 통합 시스템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 ▷ 국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도출
3단계 국내 조사	국내 유보통합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보통합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 국내 유보통합 장애 요인 도출

4단계	뉴질랜드 현지 조사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교육보육센터, 유치원, 가정기반 보육센터, 비영리교육보육센터 방문 조사 ▷ 유치원연합회 방문 조사 ▷ 교육부, 교육기관평가국(ERO) 공무원 면담 ▷ 대학 방문, 전문가 등 면담
	스웨덴 현지 조사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스쿨, 프리스쿨 클래스, 교육적 보육 방문 등 조사 ▷ 교육부 방문 조사 ▷ 전 국가교육청 공무원 등 면담 ▷ 대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 면담
5단계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과정 및 구체적인 통합 시스템 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도출 ▷ 최종보고회 ▷ 서울시에 제출

<그림 I-1> 연구수행 절차

다. 국내 유보통합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내역

-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수렴이 있었음. 이 외에도 다수의 교수, 기관운영자 등과의 의견 교환이 있었음

<표 I - 1> 주요 면담 인터뷰 내역

일시	주요 활동
7월 14일	西南学院大学 米谷**, 四天王大学 한** 교수 면담
7월 27일	(전)한어총회장 최** 면담
8월 09일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9인 면담
8월 14일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면담
8월 16일	유아교육과 이**, 백**교수 면담
8월 28일	최**, 고**(전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9월 0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 면담, 부산시 민간 원장들 면담
9월 09일	경기연합회 임원 등 5인 면담
9월 18, 2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 전화 면담
9월 19일	유치원(전 어린이집)원장 박** 전화 면담
9월 20일	전 교육부장관 면담

9월 24일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 김** 전화 면담
9월 25일	유치원원장 1인, 어린이집 원장 1인, 유치원학부모 1인, 어린이집학부모 1인, 가족보육과 공무원(과장) 1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인 면담
9월 31일	어린이집교사 98인 의견 청취

라. 국외 전문가 인터뷰 내역

1) 스웨덴 방문 일정

○ 방문일정 : 2019.8.11.(일) ~ 2019.8.17.(토)

<표 I -2> 스웨덴 방문 일정

일시	주요 활동
8월 11일	출국 (인천 → 모스크바 → 스톡홀름 → 예테보리)
	전직 교사(조**) 인터뷰(통역 불필요)
8월 12일	프리스쿨 방문(통역 조**)
	예테보리 대학, 예테보리 지자체 인터뷰(통역 조**)
8월 13일	프리스쿨 방문(통역 최1**)
	교육적 보육 방문(통역 불필요)
	기차 이동 (예테보리 → 스톡홀름)
8월 14일	교육부 방문(통역 김**)
	프리스쿨 방문(통역 김**)
8월 15일	프리스쿨 방문(통역 이**)
	전 국가교육청 공무원 인터뷰(통역 불필요)
8월 16일	프리스쿨 클래스 방문(통역 최2**)
	프리스쿨 방문(통역 최2**)
8월 17일	귀국 (스톡홀름 → 모스크바 → 인천)

○ 방문지역 : 스톡홀름, 예테보리, 나카 등 3개 지자체

○ 방문기관 :

현장 - 프리스쿨(5), 프리스쿨 클래스(1), 교육적 보육(1)

행정 - 교육부, 예테보리 시청

학계 - 예테보리 대학교 교육학과

○ 면접대상 :

프리스쿨, 원장, 교사, 가정보육사, 교육부 공무원, 국가교육청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부모, 교수

<표 I -3> 스웨덴 면접 대상 목록

지역	소속	성명	교직원				공무원		부모	교수
			원장	유아 교사	보조 교사	가정 보육 사	국가	지 자 체		
예테보리	전직 유아교사	C*****		○						
	Norra förskola	L*****		○						
		M*****		○						
		Z*****							○	
	Göteborgs University	S*****								○
		W*****								○
		M*****								○
	Göteborgs Stad Förskoleförvaltningen	P*****						○		
		R*****						○		
	Besöka förskola	P*****	○							
		R*****		○						
		J*****		○						
		R*****		○						
	Pedagogical care	유*****				○				
송*****				○						
조*****								○		
스톡홀름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T*****		○				○		
	National Agency of Education	황*****						○		
	Magelungs skolan Preschool Class	N*****	○							
		A*****		○						
		E*****		○						
나카	Förskolan Sagoskogens	V*****		○						
	Condoresns förskola	C*****	○							
		O*****		○						
Skogstigens förskola	G*****	○								

○ 기관 및 인터뷰 섭외, 통역 협력

한국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	김** 회장
	한국 외국어 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최** 교수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교육학과 교직원
	스웨덴 한인회	이** 전문통역가
		조** 전직 교사
		최** 유학생
최** 교포		

2) 뉴질랜드 방문 일정

○ 방문일정 : 2019.7.21.(일) ~ 2019.7.27.(토)

<표 I -4> 뉴질랜드 방문 일정

일시	주요 활동 및 면담자
7월 21일	출국 (인천 → 싱가포르 → 뉴질랜드)
7월 22일	뉴질랜드 도착
	유아교육과정 개발자 면담 W*****, M***** (전 와이카토 대학교수)
7월 23일	유치원 방문 및 면담(Chartwell Kindergarten)
	C***** (와이카토유치원연합회 소속 Education Service Manager)
	민간 교육보육센터 방문 (Kindercare Learning Centre) S1***** (교사)
7월 24일	교육부 해밀턴사무소 방문 및 면담 P*****, M1*****, & M2***** (교육부 공무원)
	유아교육 연구자 면담 L***** (와이카토 대학교수)
7월 25일	가정기반보육센터 방문 S2***** (코디네이터)
	비영리 법인소속 교육보육센터 방문 (Cumberland Early Education Centre) A***** (센터 매니저)
	유치원연합회 회장 면담 M***** (와이카토유치원연합회 회장)

일시	주요 활동 및 면담자
7월 26일	교육기관평가국(ERO) 해밀턴 사무소 방문 및 면담 P***** (Director Review and Improvement Services)
	뉴질랜드 출발
7월 27일	귀국 (뉴질랜드 → 싱가포르 → 인천)

- 방문지역 : 해밀턴
- 방문기관 :
 - 현장 - 민간보육교육센터(1), 유치원(1), 가정기반 보육센터(1), 비영리 교육보육센터(1), 유치원연합회(1)
 - 행정 - 교육부 해밀턴 사무소, 교육기관평가국(ERO) 해밀턴 사무소
 - 학계 - 와이카토 대학교
- 면접대상 :
 - 교사, 센터 매니저, 교육서비스 매니저, 유치원협회장, 교육부 공무원, 교육기관평가국(ERO) 공무원, 교수

Ⅱ.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 및 현황

1.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양기관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인식조사 연구, 유보통합 관련 해외 사례 고찰 연구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음

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신은수, 박은혜(2012)는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호가 통합될 때 정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며, 영유아기에 양질의 경험 제공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법, 제도, 교원양성 및 자격·평가 체제 등이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장영인(2014)은 유보통합 논의의 중심축이 보육보다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을 살펴보고 아동 및 보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추진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 지성애, 홍혜경, 이정옥, 장명림(2015)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효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육아정책연구소(2017)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완화라는 표현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 질의 균등화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나.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

- 이일주(1991)는 영유아교육체계의 일원화 모형을 탐색하기 위한 교육학적, 행정, 재정적 지원, 법적, 정치적 관점을 유아교육 체제의 재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방향을 모색하였고, 0~5세의 모든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 체제의 통합모형을 제안하였음. 또한, 이일주(2008)는 통합의 기본 전제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홍인혜(2006)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정책으로 발전되어 온 과정을 정부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의 주요 관점과 법령, 국가 개입의 형태 등을 시기

별로 분석하여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음

-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과 통합을 위한 추진 세부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유아교육·보육의 역사, 법·제도적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공무원·교사·원장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통합과정의 5개의 모형을 제시하여 유보통합에 이르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권건일, 김재환, 최순자(2007)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을 위한 원리를 바탕으로 양법의 통합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광노의(2007)는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검토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의 쟁점과 전망을 토대로 유보통합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송기창(2011)은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자율화를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선결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재정 통합 방안으로 단계별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재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 조부경(2013)은 유보통합을 위한 3단계 교원통합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통합기관 통합교사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였음
- 류민정(2014)은 재정 절감에 초점을 두고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된 행정전달체 계의 재원조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유보통합으로 안전한 행정·재정 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 지성애, 홍혜경, 이정옥, 장명림(2015)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아교육 보육의 한국형 통합 모델로 대상연령, 기관형태, 기관운영시간 및 서비스 이용시간,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등 통합의 요소들을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 기관의 운영방식에 근거한 특징과 장점을 반영하여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음

다. 양 기관 원장,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보통합 인식조사 연구

- 양정옥(2015)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인식차이 연구에서 유보통합의 의미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모두 관리행정부처의 통합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기능의 통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그러나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보육교사에 비해 어린이집 원장이 더 높게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음
- 박지현(2017)은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연구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두 기관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밝혔음.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원장의 긍정적 인식은 연령통합에 따른 원아모집의 용이성 확보,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학부모의 편리성 증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로 나타났음. 즉, 서비스 개선과 정책의 효율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였음. 반면, 부정적 인식은 교사 양성 체제의 일원화를 통해 유아교육 기관 전체의 교사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질 저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 유보

통합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긍정적 인식은 학부모의 서비스 개선, 행정부처의 일원화, 어린이집과 교사의 이미지의 변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 등이었음. 어린이집 원장의 부정적 인식은 유보통합 과정에 대한 어려움, 교사 자격통합 과정에 대한 걱정, 연령통합에 따른 영아와 유아의 발달 및 원아수급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음

- 지경애(2018)는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부모의 인식연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되어 있어 불편한 점으로 부모들은 동일한 연령(만 3~5세) 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및 비용에 차이가 있어 불공평하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부모들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향후 공교육화를 위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으며, 유보통합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가 필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유보통합 추진현황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유아학비와 보육료 결제카드 통일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을 다음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다수의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보통합의 운영방식에 대한 부모의 인식 중 유보통합에 참여하는 유아 연령 범위에 대하여서는 부모들은 만 3~5세, 정규적인 교육 및 보육시간으로는 부모들은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종일제로 응답하였음
- 교육 및 보육비용 부담에 대하여 기본과정은 국가가 부담, 방과후 과정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우선적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비 지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유보통합 시 통합교사 자격 구분 방법으로는 부모들은 연령(영아, 유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은 영아와 유아의 교사자격 구분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행정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부모들은 교육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라. 유보통합 관련 해외 사례 고찰 연구

- 정선아(2007)는 스웨덴의 유보통합의 경우 서비스 준비의 과정을 통해 취학 전 영유아교육, 보육의 재정지원 체계가 정립되어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제고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유아의 교육, 보육 및 육아지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동의 발달과 권리증진 향상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였음
- 한유미(2013)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보육 제도를 연구하여 보육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 박은혜, 장민영(2014)은 8개국(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의 유보통합의 행정체계, 재정, 접근성, 교육과정, 법, 교원, 기관의 유형 등을 사례를 비교하였음. 이 연구에서 영유아기 교육과 보육 관련 행정부처가 교육부로 점차 이동하고 있고, 유

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법, 행정, 재정 체계가 일원화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교사자격 강화의 필요성과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과정이 강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

- 김혜진, 손유진, 전운숙(2015)과 최은영(2015)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유보통합의 사례를 연구하고,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와 비슷해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발전적인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음
- 최윤경, 김윤환, 이혜민(2016)은 스웨덴이 유보통합을 통하여 공보육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아동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영유아 중심의 정책 진행을 통해 저출산 극복과 교육과정을 강화해 온 내용을 고찰하였음
- 최미미(2018)의 연구에서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Starting Strong I (2001)과 II (2006)에서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에 관한 제도 마련을 권고하였다면, Starting StrongIII(2013)에서는 ‘영유아보육·교육의 질 제고(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위하여 다각적(정책, 문헌, 실제 등)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동 프로젝트에 따르면, 질 제고를 위한 목적은 국가 및 시대, 구성원들이 처한 위치, 즉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르지만, 목적 수립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힘. OECD 보고서(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 수단(policy levers)을 살펴보면, 질 제고를 위한 목적 및 규제 설정(정책수단 1), 교육과정 및 기준의 설계와 실행(정책수단 2), 자격, 훈련, 근무조건 향상(정책수단 3),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정책수단 4), 데이터 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 향상(정책수단 5)임
 -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의 사례(실제적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제도적, 역사적,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 옵션 메뉴(policy option menu)를 활용함으로써 정책 계획자들의 사고 확장 및 다양한 해외 사례(모범 사례와 교훈)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음
- 이전의 보고서(OECD, 2006; Kaga, Bennett and Moss, 2010)에서는 이원화 된 ECEC 체계를 둔 국가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났음을 밝힘. 이는 질 제고의 목적 달성 뿐 아니라 ECEC에 관한 목표, 재정지원, 운영과정, 규제체제, 교직원 교육 및 자격취득 등에 혼란을 주며, 일관된 ECEC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음
- OECD의 최근 보고서(OECD, 2017)에 의하면 교육과정 및 관리부처가 이원화된 ECEC 체제에서 통합된 ECEC 체제로 전환해 가는 국가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통합된 ECEC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힘. 그리고 하나의 관리부처로 통합된 ECEC 체계 아래에서의 관리는 양질의 ECEC와 결부되며, 보편적인 재정 지원, 보다 나은 접근성, 양질의 교직원과 원만한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시함

마. 선행연구 종합

- 유보통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면,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의 개념으로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으로 이원화체제로 발전되어 왔음.

-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다양한 연구와 방안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현재까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가와 교사와 원장, 학부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현실적인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셋째,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유보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외국의 유보통합의 성공 사례를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우리나라 유보통합에 모방할 수는 없음. 유보통합은 해외 사례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제기되었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모형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그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 나라마다 역사적 경험과 정책지향성이 다르고, 보육 및 유아교육 이념도 다르지만 외국과 우리나라 현실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모델의 개발이 절실함
- 넷째, 영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제는 개인 및 가정의 영역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적 통합을 통해 균등한, 그리고 질 높은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점차 확대 지속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를 위해 유보통합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유사성 등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합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아동에 중심을 두고 아동의 보호, 권리와 안전, 가정의 지지,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두 기관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통합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이라는 이원화된 사고가 존재해왔으나 지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으로 변화되었으며, 보육(돌봄)에 대한 개념적 정의 또한 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광범위해졌음.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여전히 두 기관과 학계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은 ‘서비스 질 향상 기반 구축’과 ‘규제 및 운영환경’ 부분은 상당 부분 통합이 진행되었으나 ‘관리부처 및 재원·교사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남겨져 있음. 향후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보육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 즉,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을 공통의 가치로 두고, 이해관계자(보호자, 교육교직원,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등)간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됨

바. 유사 연구사례(최근 5년 이내)

- 국가별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합 요소별 현황 비교·분석(교육과학연구)은 있으나 각 통합요

- 소 지표별 세부내용에 대한 심층조사는 없으며, 통합으로 인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의 유보통합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 전반적인 우리나라 유보통합 현황조사와 필요성을 다루는 연구는 있으나, 유보통합의 구체적 절차 및 시스템 구축 전반에 참조하기 어려움

2. 국내 유보통합 관계자 인터뷰 조사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의견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모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관리행정 부처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였음. 하지만 유치원 원장의 경우, 현 체제 그대로의 통합은 교사의 질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전반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기능의 통합은 필요하지만 교사 자격통합 과정에 대한 우려, 원아 수급에 대한 우려 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설치 근거의 차이(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채 비율의 차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였음
-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라는 단일 부처로 통합하더라도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자신들의 장점이 되는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을 제안함
- 한편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간 정보 연계 및 통합에 있어 미스매치 문제도 발생함,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원아가 유치원에 등록하여 통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아 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나. 교사 의견

- 유보통합 후 어린이집 교사들은 자격증과 관련하여 통합 후 유효성에 대한 걱정이 많았음. 즉, 현재의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유치원과의 통합 시 인정받게 될 자격의 범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그로 인해 방통대 유아교육과로의 편입 등을 하였거나 고민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었음
- 한편 보육교사와 원장의 의무교육이 지나치게 많으며, 보수 승급 교육 또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며, 40-80시간 이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정해진 내용이 이루어지므로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이 어렵고 동기유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을 지적함. 현장을 떠나 이론으로 진행되는 집합식 승급교육보다 현장에서 동료나 선배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의 고려도 필요함을 제안함

다. 학부모 의견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두 기관의 명칭은 다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 부처가 달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켜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즉, 어린이집은 0~5세 취원이 가능하나 유치원은 3~5세만 취원할 수 있어 영아와 유아의 자녀를 둔 경우는 각각 보내야 하는 등 불편을 유발함. 행정부처는 교육부로의 통합 인식이 높았음
- 한편 무조건적인 기관 통합이 아니라 부모에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기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들 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바라고 있음. 이는 곧 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바람직한 운영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을 없애고, 연령과 부모의 희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희망하였음. 또한 통합이 되더라도 정부지원은 많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

라. 교수 등 전문가 의견

- 우리나라 현행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전달체계와 교육청 중심의 유아교육전달체계로 되어 있음. 유보통합 시 중앙정부(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는 중앙담당부처와 지방담당부처를 신설하여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고 통합법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 하지만 현재 이원화 체계로 인해 분리되어 각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행정 및 서포트 체제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합의 방향성이 정립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음
- 우리나라는 충분치는 않으나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보육료의 일부분을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변화시켜 부모의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부로의 통합을 전제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인상 등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교사 양성에 있어 명확한 방침 설정이 필요함. 향후 보육교사에 대한 3년제 양성으로의 통일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나 누리과정의 개편 등 향후 현장 직무를 염두에 둔 양성과정 커리큘럼 개혁도 시급함. 그 경우, 현장연수 등의 시간을 보다 많이 배려하고 횡수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함

3. 우리나라 유보통합 과정 및 현황

가.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발자취·현황

-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지난 정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화두였던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는 그다지 쓰이지 않게 되었음. 그 대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해소’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음. 그 이유는 통합의 기본의미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등을 하나로 모아 합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추진해 온 유보통합의 성과가 재원 확보 등 난제로 인하여 그 본래적 의미의 통합 가능성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유보통합이 추구하던 바가 곧 양 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간의 격차해소의 차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면 격차해소는 유보통합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성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지금까지 결실 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화두임.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문제는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잘못되었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논의는 바로 격차해소의 해법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에서 유보통합의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된 것은 2013년 5월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 모델 도출 및 시범사업 실시 주요사항 점검 등 결정기구), 유보통합실무조정위원회(유보통합모델개발팀이 마련한 통합안 및 시범사업 계획안 등 실무조정기구), 유보통합모델 개발팀(유보통합 필요성 논리 및 추진 배경 제시, 유보통합 관련 외국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비교,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견 수렴을 통한 유보통합모델안 개발 등)이 설치되어 다방면으로 통합을 위한 개선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에 기인함. 위 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3년 말,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2014년 2월에 유보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세부통합방안 마련 및 조정,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등의 실무 작업 총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킴. 동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급으로 3개 팀(과)으로 구성(기획조정팀, 운영개선팀, 평가기준개선팀)하였으며, 18명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음(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당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4.02.14.)에는 동 추진단 출범과 관련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하였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이 단순한 관리부처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시설 다양성 등을 추구하여 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음. 이에 따라 2013년 6-7월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교사 간 격차 축소, 시설 다양성 유지, 접근성 좋은 시설, 0~2세 유치원 이용 허용 등을 유보통합의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후 유보통합추진단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만족도 제고

를 위해 원비와 교육프로그램, 교사, 급식, 통학 차량 등 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통합정보포털에서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회계 규칙 활용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등을 주된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처럼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음

○ 이러한 정부의 당시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유아교육·보육에서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 균등 제공
- 수요자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 적정 비용 및 선택권 보장
- 이해집단 간의 갈등 최소화 및 사회적 통합 유도
- 정부 재정 투자 확대에 상응하는 민간 운영 주체의 책무성 강화
- 정부의 재정 투입 적정화 및 효율화 -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단계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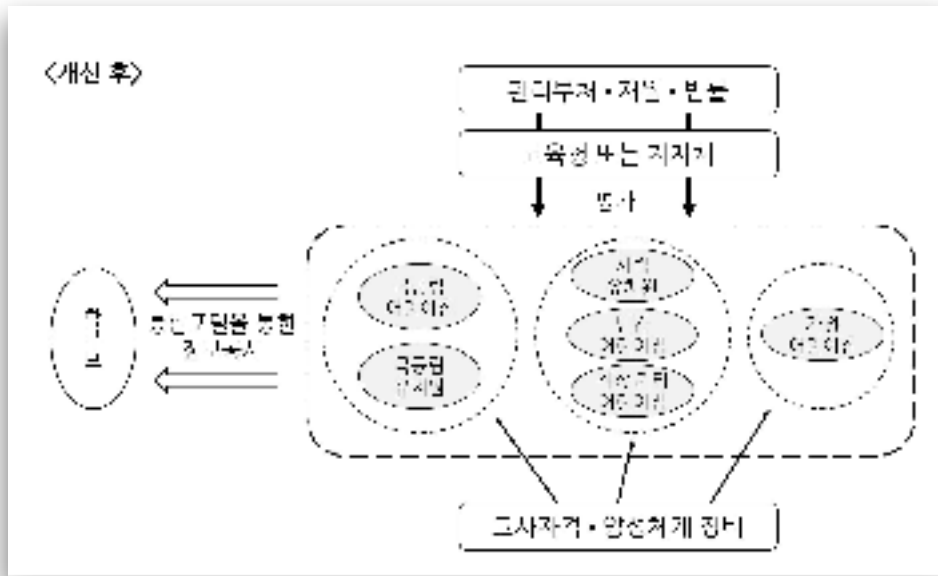
<표Ⅱ-1> 당시 유보통합 모델 개발 및 검토 범위

구분	주요 요소	내용
대상	대상 연령	모든 기관에 대상 연령 확대(0~5세)
운영	운영 기준 (일수, 시간 등)	맞벌이 등 실 수요층 불편 없게 운영기준 제시
과정	교육과 보육 과정	교육과 보육서비스 기능 통합 제공
교사	자격 및 처우	교사 자격 및 처우 일원화로 교사 전문성 제고
시설	시설 설비 기준 적용	최소한의 질적 수준 담보 가능한 시설 설비 기준 적용
비용	표준교육·보육비 및 원비 상한제	표준교육·보육비 적용 및 원비 상한제를 통한 부모 부담 완화

참조: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 자료, 2013.05.22.

단계 및 검토 범위
1단계(2014): 즉시 할 수 있는 것 우선 추진 -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연계 및 통합 -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2단계(2015):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추진 -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 교사 당 아동비율 등) 정비 및 통합 -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 추진
3단계(2016): 관리부처와 재원 등 마무리 -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해소 단계적 지원 -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 및 재원 통합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02.14.



<그림 II -1> 당시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 계획(3개년 통합 로드맵: 2014-2016)과 개선 후

- 현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문제와 적폐를 해소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대선공약을 제안하며 2017년 1월 23일,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약칭 유보혁신연대)가 출범되었음. 이는 새 시대·새 정부가 출범하는 19대 대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이를 채택하고 집권 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자 결성된 연대모임이었음. 유보혁신연대는 2017년 4월 24일 현재 50개 참여단체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혁신을 위해 뜻을 함께 하고 있음

4. 우리나라 향후 유보통합의 쟁점 및 과제

가. 향후 유보통합의 과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제를 통합하기 위한 포석은 일찍이 진행되어 왔었음
- 연구기능은 2005년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당시 명칭은 육아정책개발센터)로 통합되어 있고,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어 있음. 이처럼 교육과정의 통합, 정보 공시의 통합, 비용 결재카드의 통합, 평가 통합지표까지 개발, 실시되었음
- 유보통합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제로 현 시점에 남아있는 것은 행정체제 일원화를 비롯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과 진행 과정을 모색하는 것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장부서의 일원화, 재정확보 및 행·재정지원 관리시스템 일원화 등이 이루어지고,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와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일원화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교사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일원화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오던 보육교사 자격 연한 및 자격 취득 과목 이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자격취득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지고 있음. 이는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에도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자격과정은 학과제 방식으로 개선하며 적정 처우 보장과 함께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해소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 아직 모색의 단계이지만 연구진의 의견은 3년제, 개방형 학점제에서 학과 단위의 폐쇄형 목적제로, 학과도 관련 커리큘럼 편성률 80% 이상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방안이 실현(2022년까지 법제화, 2023년 실시 전망)되면 실제로 유치원교사 양성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되므로 교사자격 및 양성과정 일원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장부서의 일원화, 재정확보 및 행·재정지원 관리시스템 일원화의 과제는 이미 국책연구소 등의 연구 및 여러 전문가 및 관련자 포럼 등에서 일관되게 교육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복지’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4조에 규정한 ‘영유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삶의 보장권’과 더불어 같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의 하위 정책 개념이라는 시각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이미 3~5세 보육재정도 교육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으므로 향후 행정업무만 통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 조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보육정책업무 이관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사실, 그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미미하였던 것은 행정부처의 일원화가 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할 수 있음. 향후 교사 양성 및 자격 통합,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의 추진을 위해 관장부서의 일원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간의 추진 과정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유보통합의 목적과 의미 명료화 및 인식 공유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유보통합과 관련한 사정은 각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행·재정의 합리화나 초등교육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모든 아동들의 차별 없는 발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한 의견의 일치, 이른바 개념 일원화는 이루어졌다고 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국형 유보통합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사료됨. 이러한 원칙과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안을 가급적 조속하게 실행하여야 함. 그동안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감 있는 비전제시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임
- 특히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 아래 13개의 분과과제를 수년에 걸쳐 논의해온 정부가 최근 새 정부에서 소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사업을 관리하려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보육계에서는 매우 혼돈을 겪고 있음.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에 대해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시된 정책이며 향후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향후 유보통합은 정부부처가 실적위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조율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원화 방안 논의가 필요함을 재인식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미 일원화가 추진된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자발적 놀이 중심으로 개편되어 곧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평가제 지표도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호보완적으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 하는 정책적 구상이 일정부분 반영된 것임. 다만, 현재는 재원만 일원화되었을 뿐, 소관부처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유아교육·보육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소관부처나 운영기관의 물리적 통합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누리과정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그것을 위해 일찍이 일원화 시스템으로 바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함
 ○ 유보통합의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 교직원, 관련인사, 관련 환경 등 복합적인 광범위한 일원화의 문제임. 그리고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호의존 존중을 통해서 접근해야지. 전략적 또는 정부위주의 통합방식은 많은 혼란을 가져 줄 것임. 이러한 사항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일원화의 로드맵을 확정해야 할 것임. 우선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임. 즉,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기존 영유아교육기관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빠른 일원화가 능사가 아니라 '바른 일원화'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향후 핵심 연구 쟁점

- 부처 통합(행·재정) 문제

어느 한 부처로 통합이 되면, 현재 두 부처의 관련 산하기관들의 통합도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임

→ 스웨덴과 뉴질랜드에서 부처 통합 또는 이관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행정(기관)통합과정의 어려웠던 점, 재정통합 또는 확보 과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역할 분담, 법체제 정비 과정, 통합의 사회적 합의 도출(여론 형성) 과정, 민간시설의 통합과정에서의 퇴로 문제 등)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문제

교사 양성 체제 개편 과정(뉴질랜드는 86년 부처통합 후 87년 양성과정 통합), 우리나라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에는 양성을 위한 제도를 유치원교사양성과 같은 폐쇄적 목적형으로 양성한다는 계획 발표되어 있음. 기취득자의 자격증 취득 양성 과정 문제. 연수(교육) 통합, 유아교육(학)과와 보육(학)과 등 대학교 내

학과 통합 문제 등

- 교육·보육과정 문제

통합 전후의 교육·보육과정 개편(통합) 관련 내용,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

- 평가 관련(평가제도, 질 관리) 문제

평가제도, 질 관리 시스템

<표Ⅱ-2>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달 및 지원체계 현황

구분		유아교육	보육
전달 체계	중앙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 시·도 ↓ 시·군·구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시·도청(광역자치단체) ↓ 시·군·구청(기초자치단체)
의결 체제	중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도	광역(시·도)의회	광역(시·도)의회
	시·군·구	-	기초(시·군·구)의회
심의 (자문) 체제	국무총리실 정책 조정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이상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 각 2명) 계 11명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및 이상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계 12명 이내
	정부 부처	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시·도	시·도유아교육위원회	시·도보육정책위원회
	시·군·구	-	시·군·구보육정책위원회
	단위 기관	유치원운영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연구 및 지원 체제	연수·평가, 교육활동지원 등	중앙유아교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 · 시·도유아교육진흥원 · 시·도유아체험교육원 · 시·군·구유아체험교육원	(중앙) 보육개발원(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관할 기관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법인, 개인 설립) 9,029개원, 원아수: 694,631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공공형, 일반형), 가정어린이집(공공형, 일반형),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41,084개소, 원아수: 1,451,215

출처: 이일주 (2017).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발표

<표 II -3> 유보통합 분야별 통합 추진 현황

	통합 분야	종·전		현행	
		유아교육	보육	유아교육	보육
1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변동 없음	변동 없음
2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변동 없음	변동 없음
3	유아교육과 보육 대상 연령 통합	만3~5세	만0~5세	변동 없음	변동 없음
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의 통합	3~5세: 유치원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 0~5세: 보육과정		0~2세: 변동 없음 3~5세: 누리과정(통합)
5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및 양성과정, 신분 및 처우 관련 제도 통합	·자격: 유치원교사 ·신분: 교원 ·양성: 폐쇄형(학과제)	·자격: 보육교사 ·신분: 근로자 ·양성: 개방형(학점제)	변동 없음	변동 없음
6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0~5세: 국고 및 지방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0~2세: 국고 및 지방비 ·3~5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3~5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통합
7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전달체제 통합	·유아교육위원회(중앙,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중앙, 시도)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수원	·보육정책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	변동 없음	변동 없음
8	연구기관 통합	교육개발원	보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로 통합	
9	법령의 통합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변동 없음	변동 없음
10	포털시스템 통합	e유치원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공시시스템 통합	
11	유아교육비·보육료 결제카드	아이즐거운카드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12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유치원평가	어린이집평가인증	만3~5세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 통합	

고덕 진한 글씨: 유보통합 추진 완료 0

출처: 이일주 (2017).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발표

Ⅲ. 스웨덴의 유보통합

1. 스웨덴 유보통합 과정

가. 1930년 이전 : 프리스쿨의 두 가지 전신

-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스웨덴의 프리스쿨(Förskola, 1~5세)은 다음과 같이 3개월~7세 아동을 위한 종일제 시설인 탁아소(Barnkrubban)와 3~7세 아동을 위한 반일제 시설인 유치원(Barnträdgården)이라는 각기 다른 뿌리에서 출발함(Korpi, 2016)

- 탁아소(Crèches: barnkrubban)
 -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필요 시 야간에도 돌봄을 제공하였으나 실내 환경이 열악했고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교사도 많았음
 - 운영주체는 재단과 교회였으며, 모금이나 자선활동, 기부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음
- 유치원(Kindergarten: barnträdgården)
 - 교육적 목적으로 하루 3-4시간 운영되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탁아소보다 교육비가 비싸 고학력의 부유한 전업주부 자녀가 주로 이용함(Nilsson, 2003)
 - 1904년 모베르그 자매(Ellen & Maria Moberg)가 처음 공립 유치원을 설립하여 노동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감면 또는 무료로 했음
 - 스웨덴 유아교사교육 역시 유치원에 근원을 두고 있음. 1909년 프리벨 연구소가 설립되어 유아교사들을 교육했고, 1918년 프리벨연합회가 이익단체로 설립되어 훗날 유아교사 노조가 됨

- 이와 같이 데이케어센터의 전신인 탁아소는 빈곤 완화 그리고 놀이학교(Play school)의 전신인 유치원은 교육적 철학을 표방했음
 - 상이한 두 전통은 1968년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질 좋은 보육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위원회에 의해 통합됨
 -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75년 프리스쿨 법에 에듀케어라는 동일한 업무를 위해 종일제로나 반일제로 운영될 수 있는 프리스쿨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도입됨(Engdahl, 2004)

나. 1930-1960년 :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

- 1930년대에 들어와 탁아소의 사립 또는 자선적 특성이 변화하기 시작함
 - 예를 들어, “대형 보육원(The bigger nursery: storbarnkammare)”이라는 용어를 만든 알바 미르달(Alva Myrdal)은 탁아소에서 빈곤의 이미지를 제거하고자 했는데,

- 이를 위해서는 높은 질과 교육받은 교사가 필요하게 됨
- 그는 지자체는 대형 보육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교직원을 훈련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었음
- 미르달의 영향으로 스톡홀름에 국민주택조합(National Housing Co-operative: HSB)이 취업모 자녀를 위한 보육원(Nursery)을 개설함
- 또한 이들은 사회교육자 양성소(Socialpedagogiska seminariet)를 만들어 스톡홀름의 13개 HSB 설립예정인 보육원의 훈련된 교직원 수요를 충당함
 - 그러나 모든 주거지역에서 대형 보육원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음 (Korpi, 2016)
- 이와 같이 1930년대 중반 보육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1938년 인구위원회(Population Commission)가 최초의 국가위원회로 발족됨(Korpi, 2016)
- 이들은 데이케어센터보다는 운영시간이 짧은 놀이학교와 가정양육을 결합한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고함
 -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동안 여성의 노동자 역할이 중요해졌고, 1930년대 초반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가족정책의 개혁이 요구됨
 - 1944년 최초로 정부 지원금이 도입되어 교사를 훈련하는 대학도 지원을 받고 정원도 증가함
 - 국립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 보육 및 보육의 확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부여됨
- 전쟁이 끝나자 여성 취업과 데이케어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짐
-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고, 가정은 여성이 돌아가야만 하는 곳으로 인식됨
 - 데이케어센터는 너무 비싸고, 교직원이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이들에게 이로운가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음(Korpi, 2016)
-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립보건복지위원회도 데이케어센터를 문제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로 여김
- 위원회는 데이케어센터를 고아원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가정보육(Family Day Care Homes)을 권장함. 가정보육은 좋은 엄마가 있는 가정 같은 분위기로 여겨졌기 때문임 (Korpi, 2016)
 - 그 결과 1960년 데이케어센터 정원은 10년 전보다 불과 500개가 늘어난 10,000명으로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었음(Pestoff & Strandbrink, 2002)
- 데이케어센터와 달리, 놀이학교(Play School: leskola)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었음
- 반일제 교육적 활동이 아동발달과 양육에 좋은 것으로 여겨졌고, 지자체도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놀이학교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음
 - 그 결과 데이케어센터 이용 아동보다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동이 더 많았음(Korpi, 2016)
- 이와 같이 놀이학교는 학교교육을 준비하는 교육 체제로 인식되었고, 탁아소는 빈곤의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해 데이케어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음(Nilsson, 2003)

다. 1960년대 : 경제 부양과 보육의 출발

-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양성평등 한 조건으로 직업 및 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음(Korpi, 2016)
 - 이에 스웨덴 경영자단체 총연맹(SAF)과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LO)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시장위원회(Women's Commission of the Labor Market)가 결성되어 1961년 보육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함(Pestoff & Strandbrink, 2002)
 - 그 결과 여성이 자기부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고, 비로소 진정한 보육의 확대가 시작됨
 - 데이케어센터와 가정보육의 정원은 10년간 20,000명에서 60,000명으로 증가하고, 두 유형은 동일한 비율을 차지했음(Korpi, 2016)

1) 현대적 아동기를 위한 보육설치위원회

- 1960년대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데이케어센터 확충이 요구되자 1968년 정부는 보육설치위원회(Barnstugeutredningen)라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보육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함(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 2015)
 - 사정(Assessment)을 통해 싱글맘 자녀들이 데이케어센터에 다녔고, 5~6세 아동을 위한 놀이학교에는 바느질과 같은 전통적 수공예 등 프리벨의 낭만주의적 정신이 남아 있었음
 - 데이케어센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악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었음
-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활동에 민주화를 가져오고 동등한 성장 조건을 만드는 진보적인 교육을 도입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음
 - 이들의 제안 중 하나는 교직원은 팀으로 일하면서 아동에게 민주주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의도는 가정보육사(Childminder)가 종종 유아교사에 종속된 보조자로서 일하던 과거의 업무 분배를 타파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음
 - 작업팀(Work Team)은 데이케어센터에는 원장이 있어야 하는가?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와 같이 리더십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Korpi, 2016)

2) 프리스쿨

- 위원회는 빈곤구제와 같은 보호나 고소득 부모의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한 형태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음
 - 이에 따라 데이케어센터와 놀이학교를 프리스쿨로 통합하고자 함
 - 프리스쿨은 종일제나 시간제로 운영될 수 있었고, 장애아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음
- 위원회는 가정보육의 역할도 점검하였는데, 프리스쿨이 확장되는 동안 프리스쿨을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했음

- 사립 보육모(Day Care Mother)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가정보육을 운영하기 시작함
- 위원회는 또한 자신들의 행동강령에 따라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프리스쿨 입소 필요성의 사정 방법, 지자체 계획과 보편적 프리스쿨을 결정함
- 프리스쿨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개혁하기로 함
 - 1962년 유아교사교육대학(Pre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에서 담당해온 교사교육은 고등교육부분(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4학기에서 5학기로 늘어남
 - 1970년대에는 교사양성 정원이 약 2,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함(Korpi, 2016)

라. 1970년대 : 보육의 확대

1) 보육의 확대 노력과 부족

- 취업모의 숫자가 데이케어센터 정원보다 훨씬 빨리 증가함에 따라 1976년 정부와 지자체 연합은 향후 5년 안에 데이케어센터 정원을 100,000명 확대한다는 협약을 체결함
 - 지자체가 끊임없이 데이케어센터를 설립했지만 이에 비례해 대기 아동도 많아졌음
 - 설립 부지가 부족하자 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로 사용되고, 공립 데이케어센터가 충분치 않아 부모들이 부모협동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었음
 - 10년 간 데이케어센터 이용 아동이 33,000명에서 135,000명으로, 가정보육 이용 아동이 32,000명에서 125,000명으로 증가함
- 보육시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이 권리로 여겨지기는 요원했음
 - 지자체는 다양한 대기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순서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배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함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법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지고, 한부모 가족과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도 우선권을 부여받음
 - 그 외에는 대기자 순으로 배치했고, 대기 기간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함
- 데이케어센터에 입소하지 못한 아동은 비공식적인 보육 부문 즉, 사립 가정보육모(Private Day Care Mothers)의 돌봄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자체에 고용되어 훈련을 받고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가정보육사(Child Minder)라는 합법적인 직업으로 바뀐(Korpi, 2016)

2) 발전의 유인책으로서의 정부 보조금

- 초기 단계에서 공립 보육 확대의 강력한 추진 동력은 지자체의 성장 및 세수 증가였음
 - 이제 지자체는 인구와 기업을 유입하려면 생활조건이나 학교 뿐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했음
 -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부지 없이는 택지개발을 못했음
- 처음에는 프리스쿨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보육의 확대를 확정한 1970년대에는 정부 보조금이 운영비의 45%로 엄청난 증가를 보임. 지자체의 부담 비율도 비슷했고, 부모의 부담 비율은 10% 정도였음

- 1976년 중도 우파 정부가 40년 만에 집권했지만 정부 보조금에 일부 변화가 있었을 뿐 보육은 계속 확대됨
 - 6세 아동을 위한 법적으로 보편적인 프리스쿨이 도입되고, 정부와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이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함
 - 운영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은 5시간 운영하던 과거와 달리 최소 7시간 이상 운영해야 했음
- 보육의 발전과 갱신에 막대한 금액이 할당됨
 - 연간 3천만 SEK의 기금이 기존의 정부 보조금에 합산되고,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정부가 보조금을 분배함
 - 효율성 및 합리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우선권이 부여되어 신속한 입소 규칙과 배정, 심지어 전산화된 시스템의 사용, 새롭고 저렴한 운영 모델,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운영 시간, 프리스쿨 예산에 관한 책임의 분산, 지자체 성과 단위가 확립됨 (Korpi, 2016)

마. 1980년대 : 공보육과 민영화

1) 지자체화

- 보육은 다양한 질을 가진 개인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됨. 정부와 지자체는 점점 더 많은 재정을 제공하였고, 데이케어센터와 놀이학교는 점차 지자체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됨
- 탁아소의 공립화(지자체화)는 지자체 자체와 노동조합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음
 - 교직원들은 더 안전한 근무 조건을 얻기 위해 공립화(지자체화)를 원했음
 - 1941년 지자체들은 그 당시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기관의 약 7%를 운영했고, 10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몇 안 되는 기관의 36%를 운영했음
 - 1960년대 말 지자체 산하의 데이케어센터 확대가 시작되어 1970년에는 거의 모든 취학 전 서비스(프리스쿨링)(96%)가 지자체에 의해 운영됨(Korpi, 2016)

2) 사립 대안

- 1980년대에 비사회주의 정당들은 보육비용의 증가로 사립 대안들이 더 저렴하고 더 나올 수 있음을 부각시킴
 - 보육은 전국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분야였고, 민간 부문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음
 -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모협동조합의 형태로 직원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시작함
- 사회민주당 정부는 보육 확대에 관한 이윤 추구하고 민영화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보임. '설립의 자유' 문제는 의회에서 정부와 야당 간의 논쟁으로 이어짐
- 재정부 내부에는 공급자 범주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1990년 정부는 지자체 외의 다른(Other non-municipal) 공급자와 조건이 같다면, 교직원들이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에도 정부 보조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받아들임.

1991년 중도우파 4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립 대안이 주요 쟁점이 됨(Korpi, 2016)

3) 보편적 프리스쿨 - 그러나 언제?

- 취업이나 학업 중인 부모의 자녀에게 보육을 완전히 보장해주기 위해 보육을 확대하는 것도 1980년대 주요 이슈였음
 -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고 1985년 ‘모든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이라는 역사적인 법안을 제출함
 - 이는 취업이나 학업 중인 부모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아동 권리의 입장에서 모든 아동이 가족 상황에 상관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제안임
- 이 권리는 데이케어센터, 부모협동 및 가정보육을 포함하며, 오픈 프리스쿨(Open Preschool)에도 적용됨
 - 4세 이상의 아동은 보편적인 프리스쿨의 6세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시간제 그룹에 참여할 수 있음
 - 1991년까지 프리스쿨 제도로 보육을 완전히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였고, 이를 위한 입법이 발표됨
 - 그 후 지자체들은 보육확대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데 5년이 걸렸고, 대기 기간은 매년 5분의 1씩 감소함
- 보육의 급속한 확대로 교직원의 증가가 필요해짐
 - 80년대 중반 특히 대도시에서, 훈련된 직원의 부족 현상이 초래됨
 - 이는 직업의 지위가 약간 변화했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기 때문임
 - 보육수요를 완전히 충족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프리스쿨이 일하기에 매력적인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들이 발견되어야만 했음
 -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을 모집하는 캠페인이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포스터, 영화, TV 및 직업안정국(Employment Exchange)에서도 프리스쿨 교사의 필요성이 강조됨
- 1991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한 지자체가 많았고, 부모들은 조금 해 했음
 - 1990년 봄, 아동보육대책회의의 형태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지자체와 함께 보육의 신속한 확대·개선 방안을 목록화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음
 - 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4개월 이내에 보육 제공 보증을 도입한 지자체인 보츠키르카(Botkyrka)의 의원이 됨
- 실행 집단은 가장 열악한 지자체를 방문해 지자체 위원들과 언제 대기 아동이 없어질지, 어디에 장애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 등에 대해 토론함
 - 보육 확대에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는 지자체는 소수에 불과하여 스웨덴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고, 취업 여성의 숫자가 취업 남성의 숫자와 거의 비슷해짐
- 그러나 법제화를 통한 해결책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보육의 완전한 제공이라는 목표가 아직 요원했음. 모든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에 관한 결정의 첫 단계를 시행한 것은 사회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중도우파(Centre Right) 후계자들임

바. 1990년대 : 교육부 이관 배경

1) 정권의 변화(1991, 1995)

- 1991년 집권한 4당 중도우파 정권은 규제완화, 사유화, 선택의 자유 등 제도적 변화를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사립 보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양육수당을 약속함. 처음으로 보육의 자유로운 설립 권리를 제기하고, 유아교사교육을 20학점으로 3학년까지 연장하였음
- 공립이 아닌 프리스쿨도 상업적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지만 민영화는 서서히 진행되었고, 사립 프리스쿨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립 프리스쿨이 폐쇄되는 결과가 나타나
 -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정리해고와 실업률이 증가하자 중도우파 정부는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함
 - 그 결과 지자체는 모든 사립 프리스쿨에 공립과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할 의무가 생김
 - 사립 시설의 인가 여부를 결정 시 설립자와 시설의 적합성만 고려하였고, 이용료는 지자체 시설 이용료에서 불합리하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었음
- 1995년 재집권한 사회민주당 정부는 바로 자유로운 설립 권리의 취소를 제안함. 중도우파 4당 정부가 도입했던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권리도 철회됨. 사회민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음

미래에 사립 보육은 지자체 보육의 중요한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자원을 계획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보육의 과잉 설립, 공적 자금으로 조달된 사립 보육에 대한 세금 감면, 지자체에게 공립 데이케어센터 폐쇄를 강요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자원을 오용하지 말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2) 가족정책에서 교육정책으로(1996-1998)

- 1996년 3월 국무총리 페르손(Göran Persson)은 다음과 같이 ‘프리스쿨에서 향상된 학교로(Preschool to Improved School)’라는 정부 정책을 국회에 제출함

평생교육은 실업 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스웨덴은 높은 역량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하며, 프리스쿨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학교의 높은 질을 통해 그 전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프리스쿨은 의무학교의 중요한 초기 학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 프리스쿨이 가족정책이나 교육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가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임
 - 관련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행집단은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6세 취학 문제를 논의 중이었음

- 취학연령 하향화가 비용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했음
- 새로운 지방자치법(Municipal Act), 새로운 정부 보조금 제도 및 규제완화 결과로, 머지않아 모든 지자체에 학교와 보육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도입될 전망이었음. 그리고 이때가 취학 전 및 학령기 보육이 정부 차원에서 학교와 통합되어 교육부의 관할 하에 들어갈 적기였음. 핵심 아이디어는 통합이었고, 이로 인해 스웨덴 프리스쿨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
- 이러한 배경에서 1998년 보육 업무를 관할하던 행정부처가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되고, 프리스쿨 클래스가 도입되고, 프리스쿨 교육과정(Lpfö 98)이 만들어짐. 이후 보육은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진 프리스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실시됨
- 취학 전 및 학령기 보육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된 학교부 장관(Minister for School)은 이제 보육이 가족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동의 발전과 학습에 초점을 맞춘 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프리스쿨로 나아가고자 했음

3) 프리스쿨 클래스

- 장관의 일차적 관심은 6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리스쿨과 프리스쿨에서 학교 및 레저타임센터로의 전이였음. 그는 이 모든 형태들이 학교의 틀 안에서 통합되고, 함께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 6세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리스쿨과 레저타임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됨. 놀이, 탐구, 그림, 문장, 모델의 사용을 통한 창의성 등 프리스쿨과 레저타임센터의 문화에서 유래한 새로운 용어들이 교육과정에 도입됨. 프리스쿨과 레저타임센터의 모델에 기초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작업팀 모델이 학교 발전의 중요한 발판으로 간주됨
- 1975년 최초의 프리스쿨법(Preschool Act) 이후 6세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은 이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별도의 학교 형태가 되고, 프리스쿨 클래스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그 이전에 어떤 위원회에서도 제기하지 않았던 근본적으로 새로운 제안이었음. 그러나 프리스쿨 클래스는 의무화 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의 일부가 되었음¹⁾
- 프리스쿨 클래스는 프리스쿨, 학교, 레저타임센터가 만나는 곳으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뤄 작업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제공해야 했음. 유아교사들과 레저타임 교육자들(Leisure-time Pedagogues)은 초등교사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육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가정보육사도 작업팀의 일원이었음
- 처음부터 교직원들은 프리스쿨, 학교 및 레저타임센터 각각의 전통의 장점을 활용하고 상당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이 세 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헌신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사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쉽게 달성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됨

1)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6세 아동이 참여했던 프리스쿨 클래스는 올해 무상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음.

4) 프리스쿨 교육과정(Curriculum for Preschool)

- 장관의 두 번째 관심은 1~5세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에 관한 것으로 이것 또한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음
 -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1998년 3월 프리스쿨 교육과정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됨
 - 같은 해 6월 프리스쿨은 조례에 교육내용을 명시하는 법적 조항과 함께 처음으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갖게 됨
- 프리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은 교육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 의해 마련됨
 - 학교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목표들을 반영하여, 아동이 프리스쿨을 떠날 때 달성해야 하는 목표의 성격뿐만 아니라, 프리스쿨의 교육적 활동에서 주력해야 할 목표가 설정됨
 - 교육과정은 유아교사뿐만 아니라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루었음
-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본 본질적인 수정을 가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 첫째, 프리스쿨 교육과정이 개인의 학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스웨덴 프리스쿨의 기존의 교육학적 전통이나 문화와는 거의 맞지 않았음
 - 이에 프리스쿨 교육과정은 추구(도달이 아니라)해야 할 목표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됨. 학교부 장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쉬운 결정이었음
 - 더 어려운 것은 유아교사와 작업팀에 관한 문제로, 많은 논의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교육과정은 유아교사뿐 아니라 가정보육사 등을 포함한 작업팀의 모든 교직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짐
- ‘데이케어센터’와 ‘시간제 집단(Part-time group)’이라는 용어는 이제 교육법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프리스쿨’이라는 용어로 대체됨
 - 가정보육과 오픈 프리스쿨은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은 가정보육이나 오픈 프리스쿨에게도 지침들을 제공할 것임
- 드디어 프리스쿨은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교육’의 지위를 획득했고, 교육과정은 교직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
 - 교육과정이 유아교사 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다면, 유아교사들과 이들의 노조가 더 좋아했을 것임
 - 가정보육사들은 자신들이 작업팀의 일원이 되고, 교육과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할 정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했음
 -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부 장관은 자신은 유아교사를 프리스쿨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을 모든 프리스쿨에 보냄

사. 스웨덴의 유보통합에 대한 평가

1) 유보통합의 의미 및 결과

- 일찍이 1944년 스웨덴에서는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복지체계에 통합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해 왔음
 - 일원화된 행정 체계를 통해 관련 법규, 기금, 교사교육,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운영 시

간 등을 일관성 있게 조직하고, 보육의 질과 이용가능성의 차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교육과 보육에 대해 공통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었음(OECD, 2002)

- 유보통합을 이룬 국가들 중에서도 주무 부처의 이관을 넘어 가장 넓고 깊은 통합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즉, 행정 수준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인력의 통합, 재정의 통합, 규제의 통합, 지역 수준에서의 조직 및 구조의 통합, 국가와 지자체 감사의 통합으로 발전함
- 교육과정이 연계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연대, 양성평등, 관용을 강조하는 '규범과 가치'를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Bennett & Kaga, 2010 재인용; Dahlberg & Lenz Taguchi, 1994)
- 1990년대 유아를 위한 기관에서 교육이 강조되고 학교에서의 보호적 측면이 강화됨에 따라 1996년 주무 부서를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음(한유미, 2015, 2010 재인용)
 - ECEC에서 대학까지 통합적인 교육체제를 통한 지식 국가로의 전환
 - 의무교육제도의 개혁
 - ECEC의 총체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평생교육 체제로의 전환
 - 프리스쿨 클래스(6세) 제공을 통한 9년간의 의무교육과 10년간의 무상교육
 - 경제적인 원리
- 교육과학부 이관은 부모와 프리스쿨 종사자는 물론이고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음
 -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함
 - 교육부 이관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단지 유아기의 보육이나 교육은 가정생활과 한 인간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이므로 교육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동아일보, 2002.9.23.)
- 유보통합의 영향으로 프리스쿨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했음
 - 지역이나 부모의 취업이 프리스쿨의 이용 여부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됨
 - 그 결과 가족의 재정(특히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 가족의)이 향상되고,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Cottell, 2018)

2) 교육부 이관의 성공 요인

- 행정적 측면
 - 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교육부와 보건사회부로 이원화 되었던 시기가 없었음
 -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이관 과정은 보건사회부에서 옮겨온 직원들과 기존의 교육부 직원들로 통합 집단을 형성하는 등 행정기관간의 임무 교대였기 때문에 국민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음
 - 한국인으로 스웨덴 국립교육위원회 국장을 역임한 황 박사 역시 교육부 이관 과정에서 전혀 마찰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보건사회부 직원들이 교육부로 오면서 갈등이 조금 있는 정도였다고 회고함(황 전 국가교육청 공무원)
 - 현재 교육부 국장인 T는 다소 다른 입장으로, 당시 교육부에서는 반대가 없었으나 보건

사회부에서는 이관을 원치 않았다고 함(T 교육부 공무원)

○ 교사 통합 측면

- 스웨덴에서는 보건사회부에서 1차 통합하기 전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공존하던 시기에도 두 기관 간에 교사는 차이가 없었음(T 교육부 공무원)
-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장관,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두 기관의 교사 양성이나 지원이 이원화되지 않았음. 즉, 유치원도 교육부 이관 전에는 탁아소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아닌 보건사회부의 관리를 받았음

○ 지방분권화

- 1980년대 중반 이후 규제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정책에서 목표 지향적인 지방분권화의 정책 기조로 변화하면서 1990년에는 대학 교수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사의 소속이 국가에서 지자체로 바뀌었음(Bill 1989/90:41)
- 처음에는 지자체에 고용되는 것을 지위의 하락으로 느끼는 교사도 있었으나 이러한 저항은 대부분 사라졌고,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서 급여가 상당히 오른 교사도 많았고, 지자체들 간에는 교직원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증가했음
-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분권화로 인해 교사의 급여를 결정하고 재정적 우선권을 설정하는 자율권과 교사관리 및 교육 실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재량권도 갖게 되었음(Taguchi & Munkammar, 2003)
- 지자체에는 프리스쿨과 학교를 위한 연합의회(Joint Council)라는 통합된 행정 구조가 있었고, 따라서 분권화된 289개 지자체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 이관은 지방 수준에서 별다른 여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음(한유미, 2010a 재인용; UNESCO, 2002)

○ 개혁의 방향

- 교육부 이관은 정부의 결정이고, 국가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개혁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했지만, 상향적 개혁의 성격도 띠고 있음
- 데이케어센터와 유치원이 교육 기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었음
- 노조나 기관들도 교육부 이관을 강력히 원했음(T 교육부 공무원)
- 1990년대부터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교, 유아교육, 취학 전 보육 서비스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보호 및 여가활동에 대한 책임을 통합해야 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교육부로 이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음(한유미 외, 2010 재인용; Moss, 2000)

○ 평생교육에 대한 공감대

- 1996년 사회민주당 총수 예란 페르손(Hans Göran Persson)이 유아기 인적자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이케어센터와 프리스쿨도 평생교육에 동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총리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었음
- 페르손이 평생교육을 강조하게 된 데에는 팔메(Olof Palme) 수상의 영향이 큰데, 가장 강력한 정부를 이끌었던 총리로서 교육부 장관도 역임했던 팔메는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서민층의 고등교육 활성화에 공헌했음
- 또한 그는 아동심리학자였던 부인과 주변 여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양성평등주의자

이기도 함(T 교육부 공무원)

○ 역사 깊은 정책의 우선권

- 1996-1998년 영국도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보호 및 교육과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책임을 복지에서 교육으로 이관했지만 스웨덴만큼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스웨덴에서는 영국 등에 비해 훨씬 오래 전부터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음
- 보육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에 통합한 것은 재정 및 종사자의 전문성 이슈의 해결과 더불어, 주된 공급자 즉,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졌음
- 영국의 경우에는 유보통합으로 보육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아직도 격차가 남아 있으며, 부모의 취업이 보육의 이용 여부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Cottell, 2018)

3) 교육부 이관에 대한 관점

○ 여전히 보육은 중요

- 교육부 이관은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 초기 보육 체제가 교육을 중시하는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이일주, 200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육부 이관을 유아기에 보육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교육부 이관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리스쿨 교육과정은 부모가 취업이나 학업을 자녀양육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해서 복지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교육부 이관과 더불어 통합된 명칭으로 불리게 된 프리스쿨이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음. 프리스쿨에서는 읽고 쓰기나 셈하기가 강조되지 않으며, 프리스쿨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아동이 사회적·신체적·심리적 탐색을 위해 제공 받아야 할 공간과 시간으로 간주되었음. 즉, 수업보다는 자기인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정서적 능력을 촉진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있었음. 이와 같이 프리스쿨의 목표는 보육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등학교의 목표와 차이가 있었음(한유미 외, 2005)

○ 학교화 현상

- 이와 반대로 교육부 이관은 ‘유아교육화(Preschoolification)’가 아니라 ‘학교화(Schoolification)’를 초래했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음
- 프리스쿨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지만, 프리스쿨이 통합적 접근법을 희생하면서 한 가지 교육과정 영역을 강조하거나 아동에게 취학 준비를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생겨났다는 것임
- 또한 이는 프리스쿨이라는 기관의 명칭에도 반영됨. ‘교과중심이 아닌’이나 ‘학교 같지 않은’을 의미하는 킨더카르텐(kindergarten)이나 데이케어(day care)라는 과거의 명칭에서 ‘학교 이전’(before school)이라는 포괄적 용어인 프리스쿨(pre-school)를 사용

하는 것은 보육정책의 목적에 관한 철학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한유미, 권정윤, 신미자 역, 2011)

- 즉, 교육부로 통합이 되었다고 ‘학교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스웨덴은 평가의 도입, 개별 교사의 주도권, 프리스쿨과 프리스쿨 클래스에서 읽기와 쓰기 및 수학 수준 평가, 모든 목표를 똑같이 중요시하기보다는 읽기와 쓰기, 수학 과학 및 기술에 관한 목표를 강조하는 것 등의 학교화 징후를 나타냈다는 것임(Bennett & Kaga, 2010; Miller, Cameron, Dalli, & Barbour, 2017)

전에는 왕따 금지, 성평등, 책임감 등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것을 주로 했는데, 요즘은 프리스쿨에서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못 읽게 하느냐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학교교육이나 유아교육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1940년대 교육개혁 못지 않는 변화지요. (황 전 국가교육청 국장)

어릴 때는 재미와 즐거움이 제일 중요하고 프리스쿨에서는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나 글자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프리스쿨을 안 다니고 컸고 공부도 별로 열심히 안했지만 지금 좋은 직장(볼보)에 다닙니다. 프리스쿨이 좀 교육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재미있어 한다면 디지털도 반대는 안 하지만 사회적 게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F 보육아동 부모)

○ 협력과 조화

- 교육부로 이관되었지만 각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됨. ECEC 정책은 단순히 아동에게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유급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 등 가족지원정책, 건강, 사회, 고용정책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스웨덴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부처 간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조언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함. 이와 같이 각 부처는 부처 간에 관련된 일부 중요한 정책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유보통합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음
- 부처 간의 권한에 관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처들 간에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및 자문위원회가 개입하여 문제를 재검토하여 결정을 내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외부의 조사기관을 설정하거나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문제를 검토하도록 함. 외부조사기관이나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지침서를 제공하는 토대가 됨(한유미 외, 2005)

스웨덴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전통이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룹니다. 정부는 작고, 전문가 기구가 많습니다. 1970년대에는 400개까지 있었습시다. 예를 들어, 국가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국립교육감사원 등의 전문기관이 작은 정부를 보완해줍니다. (황 전 국가교육청 국장)

- 육아휴직이나 아동수당 등의 보건사회부의 업무기능과 프리스쿨 및 교육에 관한 교육부

의 재정 업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 때문에 두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은 별로 없음. 특히 보육과 관련된 아동복지 혹은 가족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험청에 의하여 급부가 지급되고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단일 부처에서 관장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주관 부처가 교육부나 혹은 보건사회부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OECD, 2002)

2. 스웨덴 유보통합 시스템

가. 행·재정

1) 법규

- 스웨덴에서는 1975년 프리스쿨법(Preschool Act)이 제정됨
 - 보육의 목적을 “가정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의 전인적 인성 발달과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모든 6세 아동에게 연간 최소 525시간 무상보육을 제공할 것을 명시함
 - 연간 525시간은 곧 하루 3시간으로, 무상보육의 출발점이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 기준이었음
 - 프리스쿨법은 1977년 아동법(Child Act)으로 대체되고, 다시 1982년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 Act)으로 통합되었는데, 1998년 보육의 주무부서가 교육과학부로 이관되면서 교육법(School Act)으로 바뀌었음(한유미 외, 2005)
- 교육법에 따라 2003년 이후 모든 4~5세 아동에게 연간 525시간(1일 3시간) 무상보육 권리가 생겼고, 2010년에는 모든 3세 아동에게 확대됨
 - 이와 같이 아동최우선의 원리가 보육제공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도입하는 대의명분이 되어 보육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음(한유미, 2015; DICE Database, 2005)
 - 무상보육은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하루 3시간) 기준이며, 고연령에서 시작하여 차츰 저연령으로 대상을 확대함
- 프리스쿨은 학교와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음
 - 이는 교육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사와 교사가 이끄는 목표지향적인 과정이라고 명시한 교육법과 프리스쿨 교육과정에서도 확인됨
 - 대부분의 가정은 보육을 이용하며, “모두를 위한 학교”라는 표현은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가치와 기회를 부여하는 인본주의 관점과 철학에 기초한 것임
 - 이에 따라 아동은 12~15개월에 프리스쿨에 다니기 시작하여 4~5세 아동의 90%가량이 프리스쿨을 다님
 - 프리스쿨은 모든 아동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사회적, 인지적,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Broströma, Sandbergb, Johanssonc, Margettsd, Nylande, Frøkjærff, Kieferleg, Seiferth, Rothi, Ugastej, &

Vriniotik, 2015)

- 프리스쿨은 평생교육에 통합되어 있으며,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무라고도 볼 수 있음(Markströ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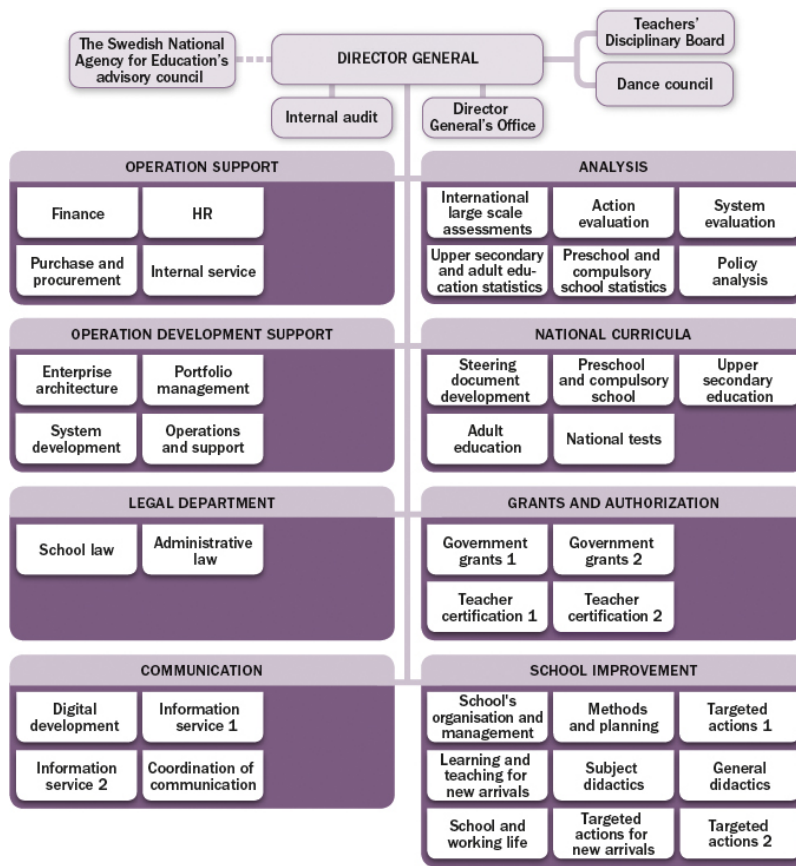
<표Ⅲ-1> 교육법(Skollagen) 법 8장 : 프리스쿨의 제공

3절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아동 중 초등학교에 설치된 6세 프리스쿨 클래스 (preschool class)를 시작하지 않은 아동은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프리스쿨은 저녁이나 밤,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4절	가을 학기부터 3살 이상의 아동은 연간 최소 525시간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단 아래 5-7절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5절	1세 아동 이상 아동 중 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우 또는 가정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 프리스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절	부모가 실업 상태에 있거나 다른 형제를 돌보아야 하는 육아휴직인 경우 1세 때부터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또는 최소 주당 15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절	위의 5절과 6절의 경우 외에 아동의 성장에 프리스쿨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다.

2) 전달체계

① 국가

- ECEC는 1~19세를 위한 학교 체계의 일부로서 교육부가 주무부처임
 - 의회와 정부가 국가 수준의 프리스쿨 목표와 지침을 설정함
 - 스웨덴에서 장관은 산하 행정기구들의 일상적인 운영이나 개별 사례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들 행정기구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 역시 ECEC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을 뿐 ECEC 서비스의 지원과 질 모니터링은 ‘국가교육청’과 ‘국립학교감사원’이 담당함
- 국가교육청(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고 동일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담당함. 즉,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고, 아동의 학습 성과를 향상하도록 돕는 것이 임무
 - 발달 및 서비스 연수, 교사 국가자격증, 직업 교육을 위한 참고 센터 등 학생과 교육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 학교에 대한 지식 요건뿐 아니라 규제, 일반 권고사항 및 국가시험도 준비
 - 교육 분야의 공식 통계를 담당하며, 전국 평가와 후속 조치를 수행하고, 국제 교육 참여를 관리
- 국가교육청이 정부의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활동하며, 교육부는 순수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이를 통제함



<그림Ⅲ-1> 국립교육청 조직도

- 국립감사원(Swedish School Inspectorate)
 - 2006년 선거 이후 집권한 중도 우파 정권은 광범위한 교육개혁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구조를 세분화하고 외부 평가와 통제를 강화함
 - 2008년 10월 평가와 통제를 하는 조직으로부터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국립교육감사원(Swedish Schools Inspectorate)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여 감사 업무를 담당케 함
 - 국립교육감사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본 장의 5) 질 관리 및 평가 ③ 국가 수준의 평가를 참조
- ② 지자체
 - 기본적으로 프리스쿨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지만 프리스쿨의 설치, 운영,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 특히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보육 목적과 지침을 수립하고 재정의 틀을 설정하며, 지자체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 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한유미 외, 2005 재인용)
 - 보육 제공
 - 지자체의 일차적 임무는 보육을 제공하는 것임
 - 보육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법은 지자체는 부모가 취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만큼의 보육을

1~12세 아동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지자체는 아동이 프리스쿨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예) 스톡홀름 지자체는 신청 후 늦어도 3개월 내에는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예) 예테보리 지자체는 신청 후 4개월 안에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만약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7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첫 4개월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후 석 달간은 다른 프리스쿨에 보내면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함

프리스쿨 신청해도 운이 좋으면 2달 안, 보통 주변에서는 3개월은 걸리더라고요...특히 인기 있는 프리스쿨은 대기자 많아요. 만약 프리스쿨에 들어가도 아이가 적응 못하면 다음 순위의 프리스쿨로 바꾸게 됩니다. (조 보육아동 부모)

<표Ⅲ-2> 연령별 프리스쿨 등록 아동 비율

연령	공립	사립	계
1세	39.1	9.6	48.6
2세	71.3	18.0	89.2
3세	74.1	18.7	92.7
4세	75.6	18.8	94.3
5세	76.1	18.4	94.5
계	67.2	16.7	83.8

출처: Statistics from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7)

○ 보육 유형 결정

- 지자체는 보육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이는 주로 해당 지자체가 어느 당이 집권하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음
- 사회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립 프리스쿨의 보급에 초점을 둬
-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립 프리스쿨 비율이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사립 프리스쿨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함. 보수당은 아동을 프리스쿨에 보내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면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는 원하는 프리스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임
- <표Ⅲ-3>와 같이 총 290개 지자체 중 보조금을 받는 사립 프리스쿨이 있는 지자체는 245개이며, 45개 지자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립 프리스쿨만 운영되고 있음

<표Ⅲ-3> 공립과 사립 시설 수(2017)

	공립	사립	계
프리스쿨	7,120	2,693	9,813
교육적 보육	1,075	719	1,794
오픈 프리스쿨	443	42	485
프리스쿨 클래스	3,061	582	3,643

출처 :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early-child>

hood-education-and-care-80_en 를 토대로 작성함

○ 입소순위 결정

- 부모가 입소를 원하는 날짜로부터 4개월 이전에 프리스쿨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지역 내의 모든 프리스쿨을 비교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입소신청 시 3개 또는 5개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신청을 하는데, 입소 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임

예) 예테보리 지자체는 특수 아동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쌍둥이에게는 우선권을 주지 않음

예) 나카 지자체는 프리스쿨에 빈자리가 생기면 다음 <표Ⅲ-4>와 같은 입소규칙에 따라 자리를 제공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와의 합의하에 입소 규칙으로부터 예외를 두며, 기록을 남겨야 함

<표Ⅲ-4> 나카 지자체의 입소 우선 기준

입소 우선기준		내용
교육법 8장	5절	1세 아동 이상 아동 중 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 중인 경우 또는 가정 형편상 필요한 경우 프리스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절	5절과 6절의 경우 외에 아동의 성장에 프리스쿨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프리스쿨을 이용 할 수 있다.
육아휴직에 따른 형제 우선권		부모의 육아휴직 동안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어린 형제는 우선적으로 그 프리스쿨에 자리를 받는다. 우선권은 윗 형제가 다니고 있는 프리스쿨에 해당된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윗 형제가 집에 있었던 경우 윗 형제랑 동생이 둘 다 육아휴직 전에 윗 형제가 다니던 공급자의 자리에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연장자 우선권		여러 아동이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입소 날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즉 나이가 더 많은 아동이 나이가 적은 아동보다 먼저 들어 갈 수 있다.

출처: 나카(Naka) 지자체 홈페이지

○ 재정 지원

- 재정의 큰 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결정 권한임
- 지자체는 보육 재정을 자체 조달과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그리고 정부 보조금으로 마련한 후 스스로 결정한 원리에 따라 프리스쿨에 지원함
- 사립 프리스쿨에 대해서도 공립 프리스쿨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함
-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시설별로 재정 지원을 했으나 바우처 시스템 도입 이후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함

스웨덴 프리스쿨 중에서 현재 공립이 7,051개, 사립이 2,597개인데, 사립 중 231개가 부모협동이고, 314개는 직원협동이고, 회사형도 있습니다. 완전히 개인

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대개 지자체로부터 그걸 샀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사는 추세는 적고 회사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 프리스쿨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은 부모협동조합이나 회사가 사거나 빌릴 수 있는데, 그때 지자체에서 받은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공립 프리스쿨에 주는 돈과 동일합니다. (T 교육부 공무원)

○ 사립 프리스쿨 인가

- 개인이 사립 프리스쿨의 설치를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인가를 내주는 것 역시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임
- 예테보리 지자체의 경우, 사립 프리스쿨 신청 자격 심사는 면담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교육적 마인드, 보육 대상 아동의 연령 및 수, 교사의 교육정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사립 프리스쿨 설립 시 대출금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이지만 지자체 시스템 안에 있어서 지원은 동일합니다. (송 예비보조교사)

지자체는 사립이나 공립 프리스쿨 모두에게 같은 비용을 대줍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즉, 임대료가 높아서 프리스쿨이 망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형평성을 위하여 지자체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P 지자체 공무원)

○ 부모의 보육료 결정

-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 체계를 설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자체마다 보육료는 차이가 있음
- 보육료 상한제(Maximum Fee)의 실행 여부 역시 지자체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보육료 상한제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상한선 이하에서 보육료를 책정할 수 있음

○ 교직원의 고용 및 감독

- 1991년 이후 지자체는 과거 국가가 담당했던 프리스쿨에서 종사할 교사를 훈련하는 책임을 이양 받음
- 공립 프리스쿨의 원장을 임명하고, 교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도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임
- 심지어 교육적 보육도 공립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가정보육사를 고용, 급여를 지불하고 관리 감독함
- 프리스쿨의 교직원에게 현직 연수를 제공하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며, 지자체마다 연수의 기회나 구체적인 연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²⁾

○ 프리스쿨의 평가 및 감독

- 지자체는 어떻게 프리스쿨의 질을 평가 또는 진단할 것인지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2) Salzburger Bildungsnetz 참조.

- 프리스쿨의 질 평가는 주로 일반적인 보고 내용과 교육과정, 리더십 등이며, 프리스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음
- 구체적 내용은 뒤의 5) 질 관리 및 평가 ② 지자체 수준의 평가를 참조

3) 보육비용의 분담

- 스웨덴에서는 프리스쿨에 들어가는 비용 중 공적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5% 정도인 반면 부모분담률은 15%에 불과함
 - 이는 프리스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조세율에서 비롯된 것임(한유미, 2010b)
- 이러한 배경에서 2002년부터 고정금액과 가정소득의 비례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보육료로 책정하는 보육료 상한제 도입함
 - 이에 부모분담률은 감소했지만 프리스쿨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됨
 - 부모가 납부한 보육료와 실제 보육비용간의 격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보육료 인상으로 경영 개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해결됨 (한유미, 2009, 2010c)
- 교육법에 제시된 부모 부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Ⅲ-5> 교육법 8장 부모 부담 관련 조항

16절 아동에게 프리스쿨을 제공한 지자체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을학기부터 3살이 되는 아동은 1년에 52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보육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담한다. 7절에 의하여 프리스쿨을 배정받은 아동의 경우(특별한 필요에 의해 프리스쿨에 입소한 경우임) 일주일에 15시간을 이상 초과한 부분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담한다.

4) 보육료 상한제

- 이와 같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높지 않지만 지역 간에 큰 차이 존재
 - 연간 보육료가 SEK 8,000인 지자체가 있는 반면, SEK 20,000이 넘는 곳도 있었고, 부모 부담률이 31%인 곳이 있는가 하면 8%에 불과한 곳도 있었음
 - 많은 지자체들도 보육료 인상에 긍정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였음(Korpi, 2016)
 - 1990년대 경기침체와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부모분담 비율이 증가하자 2002년 보육료 상한제가 도입됨
- 현재 모든 지자체가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음
 - 보육료 상한제 도입 여부는 자유지만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정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지원으로 인해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프리스쿨과 레저타임센터에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였다면 교육적 보육(구, 가정보육)에도 적용해야 함
 - 공립이나 사립 모두 다 적용됨(출처: Allmänna Råd För Pedagogisk Omsorg)

- 보육료 상한제는 2002년 최초 실시 이후 금액의 변동을 겪다가 2019년 1월부터 다음 <표Ⅲ-6>와 같은 기준 사용

<표Ⅲ-6> 보육료 상한제(Maxtaxa)

	비율	상한액
첫째 자녀	3%	1,425 SEK
둘째 자녀	2%	950 SEK
셋째 자녀	1%	475 SEK

출처: <https://www.skolverket.se/skolutveckling/statsbidrag/statsbidrag-for-maxtaxa-2019#h-Hurstortarstatsbidraget>

-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 이하에서 보육료를 책정함
- 아래 스톡홀름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표와 나카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표를 보면, 모두 정부가 정한 상한선 1,425 SEK와 소득의 3%를 넘지 않고 넷째 이하 자녀는 무료이지만, 세부적인 수치나 적용 방식은 차이가 있음

<표Ⅲ-7> 스톡홀름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종일제 : 주당 30시간 이상 이용하는 1-2세 아동 그해 8월에 아동이 3세가 되면 이용시간에 무관하게 시간제로 적용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3%	1,425 SEK	2%	950 SEK	1%	475 SEK
시간제 : 주당 30시간 미만 이용하는 1-2세 아동 그해 8월에 3세가 되는 아동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2%	950 SEK	1%	475 SEK	1%	475 SEK

출처: <https://forskola.stockholm/avgifter/>

<표Ⅲ-8> 나카 지자체의 보육료 상한제

시간/주	1-2세 아동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1-25	3%	1,288 SEK	2%	863 SEK	1%	425 SEK
26-39	3%	1,351 SEK	2%	892 SEK	1%	445 SEK
40-	3%	1,425 SEK	2%	950 SEK	1%	475 SEK

3-5세 아동 ***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시간/주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1-15	0	0	0	0	0	0
16-25	3%	1,088 SEK	2%	663 SEK	1%	225 SEK
26-39	3%	1,151 SEK	2%	692 SEK	1%	245 SEK
40-	3%	1,225 SEK	2%	750 SEK	1%	275 SEK
6세 아동						
시간에 관계없이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비율	상한액
	3	1,182 SEK	2	922	1	461 SEK

*세금 전 가계 수입 비율, **월 상한액 SEK ***모든 아동은 해당 아동이 3세가 되는 해 8월 1일부터 지자체 프리스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일주일에 15시간씩 무료(연간 525시간)

출처: <https://www.nacka.se/forskola-skola/forskola-och-pedagogisk-omsorg/avgifter/>

○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평가

- 보육료 상한제는 논란이 많은 개혁이었음. 프리스쿨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많았음. 대기 아동이 증가하고, 집단 크기의 증가하며, 가장 나쁜 점은 보육 시간이 보육료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프리스쿨에 너무 오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음
- 중산층과 고소득 가정에 유리한 개혁으로 간주되었음. 보육료 상한제의 도입은 지자체의 자발적 선택이었고, 국가기금에서 충분히 보상되었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함
- 보육료 상한제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재정을 향상시켰음. 오늘날의 보육료는 1990년대 초와 동일한데, 당시보다 급여는 30%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는 소득 대비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함. 개혁 이후 평균 가족은 매년 지불하던 보육료에서 12,000 SEK을 감면 받았음
- 보육료 상한제가 중산층과 고소득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사실이 아님.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 보육료도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소득 비율로 따지면 이 집단이 보육료 상한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음(Korpi, 2016)

부모는 소득 비례 금액과 고정액(상한선) 두 가지 중 자기에겐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으므로 결국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똑같이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막스탁사가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막스탁사가 몇 년 동안 인상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G 원장)

5) 프리스쿨 지원 방식

- 스웨덴에서는 지자체가 공립 프리스쿨을 설치, 운영하지만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공립

프리스쿨의 질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 나까(Naka) 등 일부 보수당 집권 지자체에서 보육바우처를 도입함

- 바우처는 공립과 사립에 똑같이 적용
 - 단 ‘아동 보육 및 교육 위원회’의 승인과 환경 및 경력교사 채용 등의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건비는 지자체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급식비나 운영비 등 나머지 비용을 기준으로 바우처 금액이 결정됨
 - 주당 보육시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며 초과분은 부모가 납부해야 함
-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았음
 - 2006년 우파정권 집권으로 비로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정책개혁의 중요 요소로 논의되기 시작함
 - 2009년 바우처 도입 법안이 제정됨(한유미, 2009, 2010c)

6) 양육수당

- 부르주아 연합정권이 1994년 양육수당을 도입했으나 사민당의 재집권으로 6개월 만에 폐지됨(Sipilä & Korpinen, 1998). 양육수당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여성의 가정 내 노동에 대한 가치보상이라기보다는 손실된 임금의 소액 비율 보상으로서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게 함
 - 아동에게는 또래와의 집단생활을 통한 교육기회의 상실과 귀속지위에 의한 차별적 양육을 초래함
 -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위배되는 정책임(Taskinen, 2003; 송다영, 2005)
 - 이에 스웨덴은 양육수당 대신 공립 프리스쿨 운영에 주력해 왔음(Skolverket, 2007)
- 양육수당 옹호론자들은 프리스쿨을 이용하던 부모가 양육하던 친인척이나 보모에게 맡기던 국가는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양육방법은 정부가 아니라 개별 가족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가족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함
 - 양육수당은 공립 프리스쿨의 확대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출산장려에 효과적임(윤경애, 2006; Tayler, 2005)
 - 가족의 입장에서는 보육과 경제 모두 향상되며,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맞추어 자녀를 깨우지 않고 집에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Taskinen, 2003;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경, 2011 재인용)
- 우파 연합정권이 집권하면서 2008년 7월 새로운 가족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1~3세 자녀를 집에서 기르는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
 - 가족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공립 프리스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됨(Eydal & Rostgaard, 2009)
- 월 3,000 SEK(325 EURO)씩 비과세로 지급
 - 공립 프리스쿨을 이용할 경우 보육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금액은 줄어들었음

- 연금 수혜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4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연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음
- 자녀가 3세가 되기 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아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음
- 실업수당이나 유급육아휴직, 망명자 보조금, 질병수당 및 노인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각 지자체는 가정양육수당의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
 - 2008년 11월 현재 스톡홀름 등 41개 지자체가 양육수당을 실시했음
 - 스웨덴 지자체 연합의 조사에 참여한 238개 지자체 중에서 가정양육수당 도입 계획이 있는 곳이 99개, 계획이 없는 곳이 91개, 미정인 곳이 48개였음
(<http://www.skl.se>)(유해미 외, 2011)
- 양육수당 도입 결과는 다음과 같음
 - Statistics Sweden(SCB)에 의하면, 수혜자격자 중 약 2%만이 2009년 상반기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음
 - 취업을 지속할 수는 있었으나 전통적인 육아휴직급여나 실업수당, 또는 기타 경제적인 지원과 중복되어 양육수당을 받을 수는 없었음
 - 주요 교사 노조인 Lärarförbundet에 의하면, 이미 양육수당은 실업 이민자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를 스웨덴 사회에 통합시키기보다 가정 내에 고립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격리를 증가시켰음(유해미 외, 2011)
 - 부모들은 양육수당보다 압도적으로 프리스쿨 서비스를 선호, 선택했음
 - 사회민주당의 재집권으로 2016년 1월 31일 전 지역에서 양육수당이 폐지됨

나. 교사

1) 교직원 유형

- 일반적으로 프리스쿨에는 원장 외에도 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사(Childminder) 등 다양한 자격 유형을 갖춘 종사자들이 존재함
- ① 원장
 - 원장의 임명은 지자체의 소관이며, 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선정
 - 지원 요건 자체가 엄격한 것은 아니어서 현직 교사는 누구나 지원 가능함
 -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경력교사들이 지원함. 그러나 '일정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자격요건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 종신계약으로 채용됨(최윤경 외, 2015; EURYDICE, 2018)
 - 원장은 교육과정의 실행, 교육활동의 계획 및 교육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김혜순 외 역, 2018). 프리스쿨에서 원장은 전반적인 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 줌
 - 교사들은 원장과 함께 교육방침 및 교육과정의 구성에 참여함

- 교직원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 흔히 원장 1인이 2개 이상의 프리스쿨을 관리함
 - 프리스쿨 규모가 작고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능
 - 원장과 교사 간 관계가 비교적 평등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
 - 원장 부재 시 교사들 중 한 명이 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운영 책임을 분담함(한유미 외, 2005 재인용)
- 원장은 연봉 협상으로 교사들을 통제 가능함
 - 지자체가 교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월급 명세서도 지자체가 발행하지만, 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원장이기 때문임(조 전직교사 인터뷰)

스웨덴에서 어떤 기관의 '장'이란 대단한 겁니다. 장이란 사업 책임뿐 아니라 직원들 급여도 책정합니다. 학교 교장은 교사의 급여를 책정하고, 프리스쿨 원장도 지자체에서 책정한 예산을 인건비로 안배합니다. 급여를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거죠. 요즘은 유아교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교사를 공개모집해서 급여를 많이 주고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급여는 협상으로 정해져서 유아교사가 부족할 때에는 초등교사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생겨나지요. 노조의 임금협상은 직업군 별로 하지, 개인의 급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황 전 국가교육청 공무원)

- 최근 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
 - 2011년 새로운 교육법에 '프리스쿨 원장(Preschool Head)'라는 새로운 지위가 학교 교장과 동일한 자격 요건으로 도입됨
 - 원장은 프리스쿨 활동을 개발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프리스쿨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을 이끌고 조정함
 - 2018년 새로운 교육과정에도 원장의 책임이 명시됨: 원장은 교육적 리더이자 직원의 우두머리로서, 교육법과 교육과정에 따라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프리스쿨의 질에 대한 책임도 있음(Korpi, 2016)
- 2019년 7월 1일부터는 프리스쿨 원장을 교장(Lektor)으로 호명
 - 교육법(Skollagen SFS 2010:800)의 개정을 통해, 프리스쿨에 새로 채용된 모든 교장들은 5년 이내에 교장 교육(Rektors Programmet) 이수가 의무로 됨
 - 정부는 학교 교장과 프리스쿨 원장간의 유사점(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 동일한 목표와 규정, 운영 책임)을 강조해서 호칭을 통일함

② 유아교사(Förskollärare)

- 유아교사는 종합대학(Universitet)이나 단과대학(Höskolan)에서 3년 반 동안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210학점(한국식 학제로 환산하면 140여 학점) 이상 이수한 자임
 - 보조교사보다 이론 교과목을 많이 이수함
 - 3년 반 양성과정 이수 후 무시험 검정으로 교사자격을 취득(최윤경 외, 2015)
- 프리스쿨 뿐 아니라 초등학교 0학년으로 불리는 프리스쿨 클래스에서도 근무
 - 프리스쿨에서 가정통신문 등 문서작업을 많이 하고, 계획 또는 기획자 역할을 함

- 2011년 새로운 교육법에 따라 프리스쿨은 유자격 유아교사를 고용해야만 함

유아교사는 초등1학년 이상은 못 가르치고 프리스쿨 클래스(0학년)만 가르칠 수 있고, 초등교사는 프리스쿨 클래스는 가르치지만 프리스쿨에서는 일할 수는 없습니다. 프리스쿨보다는 프리스쿨 클래스를 선호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프리스쿨 클래스에서 일하다가 프리스쿨로 돌아간 교사도 있습니다. (N 교장)

- 2012년 교사양성교육 개혁으로 단일한 교사자격증이 프리스쿨 교사 자격증으로 바뀌고, 공인된 유아교사만이 프리스쿨 교사로 종신 고용될 수 있게 됨(김혜순, 공병호, 한유미, 장혜진, 이완정, 김연하 역, 2018)

교육법에서는 유아교사가 프리스쿨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 유아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프리스쿨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법에 따르면 이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교육적 책임을 지닌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매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W 교수)

- 2012년 등록교사(Lärolegitimation) 제도 시행

- 학교나 프리스쿨에서 가르치려면, 교사가 특정 과목이나 학년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Registration)이 되어야 함
- 등록교사가 되어야 성적을 부여하고, 신입교사에게 멘토가 될 수 있음
- 등록교사만이 종신 고용 자격이 있음
- 교사양성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를 심각하게 소홀히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국가교육청의 특별위원회(교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함

③ 보조교사(Barnskötare)

- 보조교사는 고등학교나 성인교육기관(Komvux)에서 유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공통과목 750시간, 선택과목 300시간, 전공과목 1,450시간 등 3년간 총 2,500 시간을 이수함

<표 III -9> 보조교사 교육과정

과정	평가 (Betyg)	해결해야 하는 것 (Ska läsa)	논평 (Kommentar)
의사소통(100p)	X		
학습과 발달(100p)	X		
창의적인 활동(100p)	X		
인간 환경(100p)		VT19	

스웨덴어(Svenska 1/SAS 1, 100P)	X		
아동의 학습과 성장(100p)		VT19	
특수교육(100p)		HT19	v. 33-39 to fm+fr em med 3:3
건강교육(100p)	X		
교육적 리더십(100p)		HT19	v. 39-45 ti heldag med Deltid 5
다이어트와 건강(100p)		VT19	
교육 이론과 실습(100p)	X		
교육 업무(100p)		HT19	v.33-51 on fm med komp
종합지식(50p)	X		
과학(50p)	X		
자연 투어		VT19	
고등학교 일		HT19	v. 47-51 on em, fr em med 3:3

○ 프리스쿨에서 유아교사와 팀을 이뤄 활동

- 공립 프리스쿨과 사립 프리스쿨이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재정 지원을 받지만, 사립의 경우 유아교사보다 보조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음

○ 요즘 유아교사 부족으로 보조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움직임

- 대학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선택한 코스/과목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무료로 이수할 수 있음
- 유아교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모든 사람을 유아교사로 만들자는 추세임

저는 한국에서 유아교육과를 1년 다니다 말고 보건학을 전공했어요. 남편 따라 스웨덴에 오게 되었는데 Eskilstuna 지자체에 있는 B Preschool에서 근무했어요. 이 프리스쿨은 사립이고 급식도 외식업체에서 케이터링 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는데, 30명의 교사 중에서 유아교사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보조교사나 그나마 보조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조교사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고 월급은 2만 크로나 정도로 유아교사와 급여의 차이가 좀 있죠. 현재 저는 보조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한 2년 다니면 되는데, 교육학 이론을 많이 공부하고 교수들이 설명을 길게 해주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합니다. 토론 발표가 주이고, 실습도 많이 하지요. 교육비가 무료일 뿐 아니라 교통비 지원도 나와요. 단 주민등록번호(Personal Number)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여야 해요. (송 예비보조교사)

○ 3년간의 풀타임 또는 5년간의 파트타임 현장 경력이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후 유아교사 될 수 있음

- 예테보리대학교는 4년간 180학점을 요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함
- 지자체가 대체교사 비용을 부담하고 교육비용도 보조교사와 분담함.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비도 지급함. 보조교사는 1주일에 하루 결근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며, 급여가 삭감됨.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으로 학습함(Lohmander, 2017)

○ 최근 이민자의 증가로 5개 대학에서 이들을 위한 유아교사 속성과정을 개설함.

- 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활용함으로써 정규과정보다 빨리 운영.
- 교사의 공백 및 부족을 줄이기 위한 방편(Lohmander, 2017)

③ 가정보육사(Dagbarnvårdare)

○ 가정보육사는 취업모 증가에 따라 자기 집에서 이들의 자녀를 돌보아줌으로써 시설보육의 부족을 해결하면서 생겨난 직종

- 유아교사나 보조교사 외에도 아동의 보호, 발달, 학습을 돕는 기술이 있는 가정보육사 등 기타 교직원들도 프리스쿨에서 일할 수 있음
- 유아교사나 보조교사와 같이 공식적인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훈련을 받음

○ 가정보육사의 세 가지 유형

- 지자체가 채용하여 보수를 주는 제도화된 공립 가정보육사와 지자체의 인가를 받지만 관리 감독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일하는 사립 가정보육사가 있음
- 공립 가정보육사는 지자체에 고용되고 보수를 받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프리스쿨과 마찬가지로 공보육의 일종으로 간주됨(한유미 외, 2005 재인용: 한유미, 2013)
- 가정보육사는 주로 자기 집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과거 가정보육으로 불렸는데, 현재 교육적 보육으로 명칭이 바뀜

원래 사립으로 했는데 신문광고를 보고 공립을 신청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프리스쿨 처럼 요구는 많이 하지만 개인차가 워낙 심한데도 평가나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11월에 앙케이트(부모용, 가정보육사용) 조사가 나올 건데, 외부평가자가 와서 직접 관찰하거나 회계감사를 하지는 않아요. 가정보육에서 교육적 보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3년 일한 후 중급과정(1년 코스, 매 주 1일) 연수를 받았는데, 실습은 안 받았습시다(현직에 있으므로). 교육은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 하는데, 사진 강좌도 들었고 2018년 개정 교육과정 세미나도 했습니다. 원장이 재량껏 보내주고 비용은 지자체가 제공합니다. (유 가정보육사)

④ 대체교사(Vikarie)

○ 대체교사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

-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일하는 임시직임
- 지자체에 따라 요구 조건이 다름

○ 프리스쿨에서는 대체교사를 많이 쓰고, 대체교사의 풀이 폭넓게 준비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교사의 병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교사를 이용하고 있음
- 대체교사로 다수의 성인이 존재하므로 개별아동의 욕구 충족이 가능함
- 아이들을 좋아하면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음

<표Ⅲ-10> 지자체별 대체교사 요구 조건

지자체	요구조건
룰레오 Luleå	- 상호작용적인 입문(Interactive Introductory) 프로그램 이수 - 1일간 프리스쿨에서 훈련 받음
노르취핑 Norrköping	- 프리스쿨에서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20-25세 또는 고등학교에서 아동 및 레크레이션을 공부한 사람 -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소유 - 젊은이들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프리스쿨에 풀타임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 - 프리스쿨 교직원의 선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첫 단계로 삼음
예테보리 Goteborg	- 고등학교에서 아동 및 레크레이션 졸업장을 갖고 있거나 아동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Karlsson, Bigsten, & Garvis(2018)

- 고졸도 가능하며 나이 제한도 없으며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됨

저는 한국에서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스웨덴으로 결혼이주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았는지, 2009년 자격증은 물론이고 스웨덴어도 안 될 때였는데, 파트타임으로 대체교사로 일했어요. 그러다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만 두고 교육학과에 입학했어요. (조 전직 교사)

3) 교사양성과정

① 교사양성과정의 역사

- 스웨덴에서 유아교사 양성교육은 19세기말 유럽 부르주아 여성운동의 일부이자 독일 프뢰벨 운동에서 시작됨
 - 20세기 중반까지 유아교사들이 유아교사 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지배함
 - 1970년 이후 유아교사와 유아교사 교육자들의 영향력이 감소함
- 정부와 지자체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확대함
 - 1962년 보육설치위원회가 유아교사 양성과정 개혁을 결정함에 따라 유아교사교육대학(Pre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에서 담당해온 교사교육이 고등교육부분(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양성기간이 2년에서 2년 반으로 바뀜(Korpi, 2016)
- 1993년에는 유아교사 양성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
 - 초등교사 양성기간보다 6개월 짧은 것으로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다른 과정으로 교육을 받았음(Moss, 2000)
- ② 통합적 교사양성과정
 - 1997년 정부가 교사교육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통합적 교사교육 제안
 - 2001년 7월부터 스웨덴 전역에서 시행됨
 - 유아교사, 초등교사, 레크레이션 교사 등 모든 교사의 양성과정이 3년 반으로 통합됨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2000a)

- 모든 유형의 교사는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교육학과에 입학 후 1년 반 동안 공
통과목을 듣다가 고학년에서 전공과목을 선택·수강하여 졸업 시 교사자격 종류가 결정
 - 유아교사를 위한 별도의 양성과정은 사라짐
 - 1~12세 아동을 위한 초기(early-years) 교사와 12~19세 중고등학생을 위한 후기
(later-years) 교사라는 두 가지 자격 경로로 구분된 통합 모형임
- 공통과정은 60학점이 요구되며, 이 중 현장실습이 10학점 이상 포함
 - 교사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분야의 지식으로 교수법, 특수교육, 유아와
청소년 발달로 구성
- 선택과정은 최소 40학점인데, 10학점은 현장실습
 - 되고자 하는 교사유형을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상 아동 연령에 적합한 과목들
로 구성
 예) 당시 스톡홀름 교원대학교(Stockholm Institute of Education)³⁾의 교육과정
은 유아교사와 초등저학년교사는 선택과목도 상당 수 공유함
- 전문과정은 최소 20학점 요구
 - 학생들이 이전에 취득한 지식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과목.
 예) 초등저학년을 위한 수학과 자연, 미디어 교육, 특수교육, 창의적인 미술과 조형, 학
습/읽기장애아를 위한 읽고 쓰기(한유미 외, 2005 재인용)

<표Ⅲ-11> 2001년 스톡홀름 교원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의 선택과목

	선택과정	프 리 스 쿨	프 리 스 쿨 클 래 스	초 등 1	초 등 2	초 등 3	초 등 4	초 등 5	초 등 6	중 1, 2, 3	고 1, 2, 3
				레저타임센터							
디자인, 창작활 동 및 수공예	어린 아동을 위한 실용미술 학습과정. s30	○	○	○	○	○					
	아동, 기술과 창작. s29	○	○	○	○	○	○	○	○		
	미학과정: 그림. s29		○	○	○	○	○	○	○		
	그림(예술, 그림과 미디어, 디자인) s29								○	○	○
	기술개발과 디자인. s30								○	○	○
목공예 및 금속공예와 디자인교육. s30								○	○	○	
건강, 라이프 스타일 과 형성	놀이, 운동과 움직임. s33	○	○	○	○	○					
	올동교육. s32	○	○	○	○	○	○	○	○	○	○
	운동, 여가문화와 건강. s32		○	○	○	○	○	○	○	○	
	드라마. s32								○	○	○
	운동과 건강교육. s33								○	○	○

3) 현재 스톡홀름 대학교에 통합되었지만, 당시 스웨덴 교사의 20%를 배출함.

자연, 인간과 환경	아동과 자연과학. s34		○	○	○	○	○						
	초등학교를 위한 일반 자연 과목. s35							○	○	○	○		
	생물학/생물교육.s34*									○	○	○	
	물리학/물리교육. s35*									○	○	○	
	화학/화학교육. s35*									○	○	○	
교육학, 윤리와 심리학	1~9세 아동의 교육연구.s36		○	○	○	○	○						
	조사교육학- Reggio Emilia dialog. s37		○	○	○	○	○	○	○	○			
	레저타임 교육학. s36			○	○	○	○	○	○	○	○		
	특수교육학 커뮤니케이션. s22 **		○	○	○	○	○	○	○	○	○		
	심리교육. s37*												○
	40/160 학점과 연관된 선택과정	Waldorf 교육학 0~7세. s38	○	○									
Waldorf 교육학 7세 이후. s39					○	○	○						
사회, 문화와 정치	아동과 사회. s41		○	○	○	○	○						
	일반사회교육. s43			○	○	○	○	○	○	○			
	종교교육. s42									○	○	○	
	사회교육. s42									○	○	○	
	지리/ 지리교육. s41									○	○	○	
	역사교육. s41									○	○	○	
	F다/경영학교육. s41												○
언어, 미디어, 커뮤니 케이션	아동세계 수학의 발견. s45		○	○	○	○	○						
	실용미학(음악)-창작표현.s46		○	○	○	○	○						
	언어와 언어발달. s46		○	○	○	○	○	○	○	○			
	스웨덴어 공동작업(팀워크)을 통한 수학. s45			○	○	○	○	○	○	○			
	제2언어로서 스웨덴어 s47		○	○	○	○	○	○	○	○	○	○	○
	MoK/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학.s46*										○	○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습.s46			○	○	○	○	○	○	○	○	○	○
	영어교육. s45										○	○	○
	불어/불어교육. s45*										○	○	○
	수학교육. s45										○	○	○
	스페인어. s45										○	○	○
	스웨덴어. s47										○	○	○
	독어/독어교육										○	○	○

<표Ⅲ-12> 2002년 예테보리 대학교의 초기교사 양성과정

과정(기간)	특징	예
공통과정 (1년 6개월)	- 모든 단계의 예비교사에게 필수과정 - 교육학과와 여러 다른 학과들이 합쳐진 과정	- 모든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 지식과 다학제적 지식
심화과정 (1년)	- 한과목만 선택하거나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 대학 자체로 교육과정 설계 가능 - 교생으로 부딪힐 직업적 문제에 중점을 둔 심화과정은 개설되지 않았음	- 아동의 사회적 환경, 학습, 발달 - 초기(1~12세) 아동의 눈으로 본 문화와 언어 - 학습과 정보 기술 초기 아동의 눈으로 본 인간, 자연, 사회 - 아동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자연과 수학 - 초기 아동을 위한 창조 예술
전문과정 (6개월)	- 공통과정의 토대와 심화과정에서 선택한 학문 분야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함	- 어떠한 종류의 실습도 요구하지 않음 - 프리스쿨에서 일할 때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기술 습득에 중점

- 통합적 교사양성과정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예: 예테보리대학교)
 - 과거에는 교생들이 한 학급에 배정되면 교사 1인이 교생을 감독하고, 지도교수가 학급을 방문 지도함
 - 통합적 교사양성과정이 실시 이후에는 기관 전체, 심지어 학군 전체가 교생 1인의 실습 장소가 됨
 - 여러 교사들이 교생 1명을 감독함으로써 교생들은 감독교사가 1인이었을 때보다 좀 더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경험. 즉, 프리스쿨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사들과 학급을 경험함
- 실습 기간 동안 교사양성과정 지도교수들의 순회지도가 없어짐
 - 이는 교생에게 유연한 틀을 제공하며, 감독교사가 1인일 때보다 좀 더 교직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임
 - 교생들은 지도교수와 실습 경험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상실함(한유미 외 역, 2011)
- 통합양성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유아교사, 초등교사, 레크레이션 교사의 양성과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통합함으로써 기관간의 긴밀성을 높이고, 유아교사의 질과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함
- 연구와의 연계 강화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증가시키기보다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무 경험을 향상시킴
-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함으로써 예비교사의 능력이 개발되고 그 결과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됨
- 교사교육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고등학교 교사도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서 흔히 사용하는 효과적인 교수매체나 교육방법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한유미 재인용, 2005; 한유미 외 역, 2011)

○ 통합양성과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 학생들의 '선택의 자유' 즉, 과정과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지나친 선택의 자유,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 지식의 중요한 분야의 부재 등을 낳음
- 광범위한 연령대(1~12세와 12~19세)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Korpi, 2016)
- 프리스쿨의 인력 구성과 부합하지 않음. 다양한 유형의 교사들이 함께 일할 기회를 증가시키고자 했으나 보조교사들은 통합적 교사양성과정의 대상이 아님
- 유아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과거에는 교과목 이수와 교생실습 등 교사양성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유아교사들은 양성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 그러나 통합적 교사양성과정 도입 이후 현직 유아교사 중에 교사교육자로 활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심화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미래에 프리스쿨에서 일하면서 부닥칠 실제 상황과 거리가 멀었음(예: 3세 미만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소홀히 함). 또한 예테보리대학의 경우 5~10세 아동에 주목하게 되면서, 3세 미만 유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감소(Korpi, 2016)
- 유아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 함. 유아교사의 처우나 보수는 여전히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보다 떨어지는 현실로 인해 졸업 시 유아교사보다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직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임

③ 다시 분리된 유아교사 양성과정

○ 통합적 교사교육은 2011년 다시 프리스쿨, 초등교육, 각과교육, 직업교육 등 4가지 학위제도로 바뀜

- 교사교육과정의 구성내용을 명확히 하고 질 높은 교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함
- 프리스쿨에서의 특화된 전문성과 명확한 직업적 정체성을 제공함

○ 3개의 전문 과정을 제공

- 프리스쿨 클래스와 1-3학년 교사양성과정은 3년 반 동안 210학점
- 초등교사 양성과정은 6개월이 추가된 4년과 240학점
- 레크레이션 교사 양성과정은 3년

○ 교사등록시스템

- 2011년 국립고등교육청(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을 대신하여 국

- 가교육청이 교직원자격 수여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됨
- 2012년 교원자격을 위해 교사는 반드시 등록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며, 과목과 학년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을 인증 받도록 됨
 - 교사등록 후에 교사는 학년 선택권과 함께 신입교사의 멘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등록된 교사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음
- 대학마다 교육과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아교사 양성과정은 대개 유아교육 분야 120학점, 교육학 분야 60학점, 현장실습 분야 30학점 등 총 21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논문을 써야 함
- 스톡홀름 대학교의 경우 <표>와 같이 영유아교육전공 : 교육학일반 : 현장실습 : 자유선택(독립연구)의 비율이 8:4:2:1의 비율로 구성

<표Ⅲ-13> 스톡홀름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교과목(2014)

교과(학점)	교과목 명
유아교육(120학점)	-프리스쿨 업무: 탐구, 놀이, 보육 (7.5학점) -교육환경 (8.5학점) -아동훈육, 프리스쿨에서의 윤리 및 생활 이슈 (7.5학점) -영유아교육: 심미 및 윤리 (7.5학점) -영유아교육: 수학 (12학점) -영유아교육: 과학, 기술, 지속가능한 발달 (12학점) -영유아교육: 언어 및 의사소통 (22.5학점) -개별독립과제 (15학점) -모임 전의 놀이와 의미 (8.5학점)
교육학(60학점)	-참가 및 수사학 (3.5학점) -훈련 역사와 사회에서의 위치 (5학점) -학습 및 인간발달 이론 (7.5학점) -특수교육 (7.5학점) -프리스쿨에서 사회관계 (7.5학점)
	-발달평가 (4학점) -프리스쿨I에서 윤리적/법적 이슈 (2.5학점) -지식, 과학, 연구방법론 (7.5학점) -교과이론 및 교육적 기록 (7.5학점) -교과이론, 교육적 기록 및 평가 (7.5학점)
현장실습(30학점)	-현장실습 I: Preschool 교사 교육 (3학점) -현장실습 II: Preschool 교사 교육 (6학점) -현장실습 III: Preschool 교사 교육 (6학점) -현장실습 IV: Preschool 교사 교육 (7.5학점) -현장실습 V: Preschool 교사 교육 (7.5학점)
자유선택(15학점)	-프리스쿨 교육과 관련한 고급과정 15학점을 자유롭게 선택 수강
	210학점 + 자유선택

출처: 최윤경 외(2015)

<표Ⅲ-14> 예테보리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학점 구성

교과(학점)	교과목 명
교육학(60학점)	-학습, 발달과 교수법 -교육과정 이론, 조직, 학습 및 발달의 추적 및 평가 -리더십, 특수교육, 사회적 관계와 갈등해결 -학문이론, 연구방법론, 평가 및 발달 과제
각과교육: 유아교육분야의 과목 관련 교수법 (105학점) + 졸업논문(15학점) =(총 120학점)	-아동의 학습, 의사소통과 문해 -아동의 수학 수업 -놀이, 학습과 발달 및 보호 -보육자, 프리스쿨 클래스, 레저타임센터와의 협력 -미적 학습 과정 -자연, 환경과 테크놀로지 *초급과정과 고급과정으로 개설
현장실습(30학점)	-4개의 모듈로 구성되고 수퍼비전을 받음
자유선택(15학점)	-프리스쿨 교육과 관련한 고급과정 15학점을 자유롭게 선택 수강
	210학점 + 자유선택

출처: Lohmander(2017)

○ 예테보리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에는 학기별로 다음과 같은 교과목 이수를 요구

<표Ⅲ-15> 예테보리대학교의 유아교사 양성과정 학기별 교과목(2019)

학기	교과목 명
1 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학습, 개발 및 교수법 1 -유아교사를 위한 게임, 학습 및 관리 1 -유아교사를 위한 성과교육 1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 언어 및 의사소통 1
2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2 -유아교사를 위한 수학 수업 1 -유아교사를 위한 사회적 관계, 갈등 관리 및 리더십 -유아교사를 위한 통제 시스템, 조직 및 평가
3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성과교육 2 -유아교사를 위한 협력 -유아교사를 위한 학습, 개발 및 교수법 2 -유아교사를 위한 교사 전문성 및 과학적 접근
4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3 -유아교사를 위한 예술, 미학 및 학습 1 -유아교사를 위한 서류작성, 후속 조치 및 분석

	-유아교사를 위한 성과교육 3
5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놀이, 학습 및 돌봄 2 -유아교사를 위한 자연, 환경 및 기술 -유아교사를 위한 수학 수업 2 -유아교사를 위한 사회적 관계 및 특수교육 관점
6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교사 전문성 및 과학적 작업 -유아교사를 위한 성과교육 4 -유아교사를 위한 독립적 작업(학위 프로젝트)
7학기	-유아교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글로벌 관점 1 -선택 과목 (1) -유아교사를 위한 아동 언어 및 의사소통 4 -유아교사를 위한 수학 수업 3 -유아교사를 위한 게임, 학습 및 관리 3 -유아교사를 위한 문화 간 관점 1 -유아교사를 위한 예술, 미학 및 학습 2

출처: https://lararutbildning.gu.se/digitalAssets/1719/1719267_11f-r-190122.pdf

○ 현장실습은 7학기(3년 반) 중에서 4-5학기에 걸쳐 각기 4주씩

- 모두 합치면 한 학기 정도에 해당
- 1, 3, 4, 6학기에 프리스쿨에서 종일 현장실습을 하고, 교수가 잠깐 지도를 나오며, 다른 전공과목에서도 프리스쿨을 방문 관찰 또는 참여함

이전의 교사교육은 모든 교사들에게 동일한 과정이 적용되었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통합해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2011년 이후 교사교육은 학생들의 선택 여지가 많지 않은 고정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교사교육이 과거에 비해 프리스쿨에서 일하기에 좀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유아교사를 배출할 것 같습니다. (M 교수)

○ 새로운 교사양성과정에 대한 평가

- 좀 더 명확하고 구조화되고 전문화됨
- 보다 많은 신청자를 유인함
- 입학 경쟁력 상승으로 학생들의 사전 지식수준이 향상됨(Korpi, 2016)

저는 현재 말뫼(Malmö)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기에 재학 중이에요. 스웨덴에서 산지는 8년 되었어요...중략...현장실습은 일곱 학기 중 두 학기를 제외한 다섯 학기에 4주씩 있어요. 대학이 지역 프리스쿨과 교류를 맺어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교육방식의 차이는 우선 한국은 강의식 수업이 많은데

스웨덴에선 강의 20%, 토론 80%로 수업이 진행되어요. 두 번째는 스웨덴은 교수와 학생이 동등하게 토론에 임하고, 학생이 교수에게 “왜?”라고 묻는 등의 비판적 질문이 자유로워요. 시험을 볼 때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 “~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대학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공부하며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스웨덴 대학은 교양과목이 없어요. 모두 전공과목으로 짜여있고 한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은 (중고등학교처럼) 일주일에 여러 과목의 수업을 듣지만 스웨덴은 한 과목을 1-2달 듣고 다 마치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식이에요. (출처: <https://brunch.co.kr/@education/15>)

3) 전문성 개발

- 국가 수준에서 프리스쿨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규제 부재
 - 교사가 전문성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승진과도 직접적 관련은 없음
 - 정부나 교육부, 국가교육청은 교사가 특정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음
 - 그러나 정부는 국가교육청에 추가자금을 할당함으로써 지자체에게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함
- ‘Boost for Preschool’(Läraryftet) 프로그램
 - 2007-2011년 교사의 1/4가 참여하였고, 300,000명의 자격교사가 현재 급여의 80%를 받으면서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받음. 유아교사나 원장보다 보조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이 짧았음
 - 이와 동시에 정부는 경력은 있지만 자격이 부족한 교사의 보수교육(관련된 분야의 교사 자격을 취득),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교장의 연수 등에 10억 SEK를 제공함(EURYDICE, 2018)
- 전문성 개발이 의무는 아니지만, 지자체는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함
 - 교직원의 기술 개발의 공식적 책임은 고용주 즉,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자체 마다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현황은 다양함
 - 교사 노조는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연합(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과 함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할당된 시간을 포함하여 근로 조건을 협상함
 - 정규 근무시간 동안 1년에 104시간을 할당하기로 합의함
- 전문성 개발은 주로 연구일, 저녁, 휴일에 이루어짐
 - 교육적 기록, 어려운 대화, 전문가 역할 등과 같은 현행 이슈에 초점이 있으며, 레지오 에밀리아에 강력하게 초점을 두는 지자체도 있음
 - 연구일 수에 대한 규제는 없음
 - 대개 프리스쿨은 학기당 2일 문을 닫으며, 전문성 개발 및 업무 계획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함
 - 개별 교직원의 역량 개발의 필요성은 연간 평가회의에서 논의되며, 역량 개발 계획으로

공식화됨

- 원장은 전문성 개발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 모든 교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음
 - 원장이 추천한 교직원은 개별 프리스쿨, 지자체, 정부가 구성하고 재정(전체 비용 또는 부분 비용)을 마련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원장이 승인하지 않는 전문성 개발 비용은 개인이 충당해야 하며,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함

- 다양한 지식 영역을 다루는 질 높은 강연, 협의회, 세미나, 코스 등 전문성 개발 활동의 폭은 넓음
 - 최근 전문성 개발 활동을 최근 공급하는 곳이 상당히 증가함
 - 국가교육청, 대학, 지자체, 지역개발센터 외에도 교사노조나 사립 컨설턴트 등과 같은 고비용의 독립적 공급자가 다수 존재함
 - 지자체/프리스쿨은 자신에게 적합한 공급자와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전문성 개발 기회와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경제와 관련 있음
 - 1인당 전문성 개발 비용은 매우 작음
 - 다양한 유형의 전문성 개발에 참가하려면 비용이 매우 높아서 참여가 어려워짐
 - 또 다른 문제는 교직원 부족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어도 대체교사 없이는 참여가 불가능
- 전문성 개발 과정에 많이 참여하면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도움이 됨
 - 얼마나 자격을 잘 갖추었고 지식이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보여줌

- 원장이 되기 위해 유아교사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 목표의 실행과 관련한 교육적 지원 필요
 - 많은 지자체가 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교육적 리더와 계약
 - 2010년 전에는 추가 교육을 받긴 했어도 원장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었음
 - 전문적인 리더십 교육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원장에게 자신의 역량과 관리 업무를 보증하기 위해 학교 리더 프로그램을 따를 것을 강력히 권장함

- 석사나 박사 과정
 -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개 정부나 고용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함

- 유아교사와 레크레이션 지도자를 위한 연구학교
 - 5개 대학이 콘소시엄으로 설립
 -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 영역에 초점을 두며, 가장 최근에는 아동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으로서 의사소통과 관계에 초점이 있었음
 -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음
 - 지자체와 정부가 재정을 부담
 - 수료 후 석사학위를 받음(Lohmander, 2017)

4) 경력 개발

① 대학의 겸임교수

- 경력교사의 소중한 경험을 교사양성과정에 포함시키고, 기관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겸임교수를 임명함
 - 대개 프리스쿨에 근무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고용됨
- 자격요건
 - 유아교사 학위자
 - ‘고등교육에서 교수와 학습(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과정 7.5학점
 - ‘프리스쿨 학교 레저타임센터의 수퍼비전’(Supervision in Preschool, School and Leisure-time centre) 과정 7.5학점

② 지역 교사 교육자

- 현장기반 학습 교사/현장 멘토로 일할 수 있음
 -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6시간 멘토링을 함
- 특별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봉협상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함
- 자격요건
 - 자격을 갖춘 인증된 유아교사
 - 대학에서 멘토링 자격 부여 과정 이수(7.5학점)
 - 캠퍼스에서 파트타임(25%)으로 실시되거나 인터넷으로 2학기에 걸쳐 진행됨

③ 원장

- 교사보다 높은 급여
- 유아교사, 레크레이션 교육자, 초등교사 모두 신청 가능
 - ECEC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음
 - 리더십 회계 등의 역량과 기술을 가질 수 있음
- 원장 1인당 평균 관리 기관 수는 2개임
 - 공립 프리스쿨 원장(2.8개)이 사립 프리스쿨 원장(1.2개)보다 2배 이상 많은 기관을 맡고 있음 (Skolverket, 2017)

④ 페다고지칼 리더

- 급여가 높음
 - 재정 문제 때문에 모든 프리스쿨에서 페다고지스타를 두지는 못함
- 자격요건
 - 유아교사
 - 레지오 에밀리아 단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페다고지타 양성과정(30학점) 이수
- 질 보증, 멘토링, 전문성 발달 등의 업무
 - 수퍼바이저, 튜터, 과정 리더로서 중간 관리자(Mellanledare) 역할

- 교수 방법, 프로젝트의 분석과 기록 방법 등을 반성적으로 하도록 멘토링을 함(Giardiello, Häikiö, & Mårtensson, 2019).

*페다고지컬 리더는 연구를 수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배운 다음에 유아/보조교사와 공유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저도 경력이 쌓이면 페다고지컬 리더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에 양성과정이 있어서 3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R 교사)*

⑤ 선임교사

- 2011년 실행된 새로운 교육법(Govt. Bill 2009/10:165)에 따라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재도입
 - 프리스쿨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유아교사에게도 도입함
 - 목적은 경력이 풍부한 교사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석사나 박사학위가 필요하며, 최소 4년간 현장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여야 함 (EURYDICE, 2018)

5) 근무 여건

① 업무의 일반적 특성

○ 직급 체계

- 원감이나 주임 없이 원장과 평교사 두 단계로 구분되며, 별도의 공식 직급 체계는 없음
- 평교사 내에서는 특별한 위계나 연차/호봉과 같은 개념이 없음

○ 수습기간

- 2014년 이후 등록교사가 되기 위해 1년간 수습기간(Induction Year)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님
- 그러나 자격을 갖춘 초임교사는 고용주에게 1년간의 수습기간 동안 멘토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자격을 갖춘 초임교사의 절반만이 수습기간을 가짐
- 초임교사는 멘토로부터 전문성 발달을 지원받는데, 멘토는 교사 경력이 풍부한 등록된 교사여야 함
- 지원 내용은 다양한 교수법 사용, 수업 계획 및 실행, 아동의 발달계획, 평가 및 기록, 리더십 개발, 아동을 대하는 능력,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EURYDICE, 2018)

○ 작업팀(Work Team)

- 한 반에 3명의 교직원이 작업팀을 이루어 근무함
- 과거 데이케어센터 시절에는 교직원간의 위계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했음
- 작업팀은 1968년 “교직원은 팀으로 일하면서 아동에게 민주주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보육위원회의 권고 이래 지속되어 온 전통임

- 위원회의 의도는 가정보육사가 종종 유아교사에 종속된 보조자로서 일하던 과거의 업무 분배 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이었음
- 작업팀은 리더십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던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음.
 - 데이케어센터에 원장이 있어야 하는가?
 -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 원장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없었지만, 작업팀은 현재까지 지속됨 (Korpi, 2016)
- 작업팀 구성 방식은 다양함
 - 유아교사 2명과 보육사 1명이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 그러나 3명 다 유아교사이거나 유아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인 경우도 있음
 - 유아교사가 보조교사보다 급여가 높긴 하지만 작업팀은 상하 개념보다는 평등하게 일한다는 개념이 강했음
 - 최근에는 유아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음

지자체에서는 프리스쿨에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프리스쿨에는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아이들이 놀이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받은 교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프리스쿨의 경우에도 40%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60%가 보조교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입니다. (L 원장)

- 한번 만들어진 작업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감
 - 결원이 생기면 신입교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식으로 작업팀이 재구성됨
 - 교사들은 대체로 만족하지만 팀이 잘 맞지 않거나 왕따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작업팀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팀이 잘 맞는 것이 중요함(조 전직 교사 인터뷰; 송 예비보조교사 인터뷰)
- 작업팀의 장점
 - 프리스쿨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춤
 - 학급에 교사가 여러 명이어서 개개인의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고, 서로 다른 인성을 통해 교육 활동과 인간관계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음
 - 한 교사가 대집단 활동을 지도하는 동안 다른 교사는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어 한 활동에서 다음 활동으로의 전이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됨(한유미 외, 2005)

<표Ⅲ-16> 공립과 사립 프리스쿨의 풀타임 교직원의 수와 1인당 아동 수

	공립	사립	계
풀타임 교직원 수	79,841	20,316	100,156
풀타임 교직원 vs 아동	5.1	5.0	5.1

출처: Statistics from the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7/18)

② 근무시간

- 프리스쿨은 종일제 기관이지만, 대체교사, 교대근무나 시간차 근무를 통해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함
- 프리스쿨 종사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임(의무교육의 경우 45.5시간)
 - 40시간 중 31시간은 규제를 받으며, 9시간은 행정 업무 등을 위해 종사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음
 - 종사자를 유인하기 위해 1주일에 35시간만 풀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 5시간은 건강이나 여가활동(명상, 걷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들도 있음(Gravis, 2018)
 - 유아교사는 원하는 경우(특히 자녀가 어릴 때) 파트타임 근무가 교육법에 의해 보장됨
- 지자체의 다른 고용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25-32일의 휴가를 가짐
 -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방학임(EURYDICE, 2018)
 - 1일 근무시간 중 오전, 오후 각각 15분간의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을 보장(최윤경 외, 2015)

③ 근무환경

- 일찍이 직업안전 및 건강위원회(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프리스쿨 근무자들에게도 작업자 안전 규정(AFS 1986:19)을 적용
 - 예) 성인에게 적절한 작업대 높이, 교사의 책상과 의자는 성인의 신체에 맞추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지 않도록 가까운 곳에 놀이감 보관 장소를 두는 규정
 - 기저귀 갈이대 계단, 전동용 기저귀 갈이대와 같이 교사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기구 설치
 -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한 사람이 기저귀 다 갈면 안 된다는 지침 마련함
 - 교사 휴게실, 장애인용 성인 화장실, 심지어 교사 흡연 공간까지 있을 정도로 교사 전용 공간 확보함(스톡홀름 및 예테보리 ECEC 기관 관찰)
 - 교사의 권리 존중과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는 한편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함
-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프리스쿨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교사가 늘어남

교사들은 스웨덴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닌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줄이려고 하고, 아동 수가 많아져서 힘들어 합니다. 이유는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거나 인기 있는 프리스쿨이라 아동들이 몰렸거나 교사가 부족해서지요. 또 요즘 디지털 기록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조 전직 교사)

④ 신분

- 교사를 어렵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없음
 - 사회 구조가 평등하므로 교사를 대할 때에도 수평적인 방식으로 대함
- 지자체나 기관이 교사를 채용하며, 채용 절차는 완전히 개방
 - 성범죄, 폭력 또는 아동 포르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점검
 - 이러한 점검은 교사 교육을 받는 자, 성인교육 참여자에게도 적용
 - 주방 직원, 청소 직원, 임시직원 공급 회사의 임시 직원에게도 적용(EURYDICE,

2018)

○ 안정된 신분

- 스웨덴에서는 모든 일자리가 고용보장이 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음
- 유아교사도 휴가나 근무시간, 정년보장(65세) 등에서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 복수 노조가 있고, 노조가 실업연금을 관리하므로 모두 노조에 가입
- 교사가 해고될 일도 거의 없어서 오래 근무한 교사의 경우 타성에 젖은 느낌이 들 정도임(조 전직 교사)

⑤ 급여

○ 지방자치단체 연합(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은 급여 및 일반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교사노조와 협상

- 급여는 개별적이며, 차등이 있으며, 지역에서 결정함
-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 있어서 실제로 큰 차이는 없지만 지자체별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차이가 있음
- 대도시인 스톡홀름이 급여가 높고,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도 일이 힘들고 다문화 지원금 등으로 급여가 높음(조 전직 교사)

○ 교사의 급여는 매년 원장과의 임금협상으로 결정

- 교사평가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원장과 정기적으로 개인발달 면담을 하고 급여는 노동시장 원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됨
- 일반적으로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연차보다는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급여가 더 크게 좌우됨(최윤경 외, 2015)
- 임금협상은 처음 채용이 될 때에는 자격증, 경력 등이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이후에는 업무 성과에 따라 결정됨

○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유아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 점점 급여가 오르는 추세

- 최근 프리스쿨 교사 인력난이 일어나 2018년 교사의 급여를 인상함
- 과거 중간 이하였던 급여가 중간 수준으로 상승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해 유아교사의 초임(4만 SEK)이 초등교사(2만 8천 SEK)나 고등교사(3만 6천 SEK)보다 높은 기현상이 일어남(김 교수; 이 전 문통역가 교포)

3. 교육과정

가. 프리스쿨 교육과정의 특징

- 1998년 이전에 스웨덴에서는 국가 수준이 아닌 개별 프리스쿨이나 지자체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계획, 실행

- 네트워크 회의와 작업팀 회의, 강연 참석, 강좌 및 방문 학습, 작업 방법의 변화, 새로운 교육학적 환경의 준비 방법, 활동을 계획된 활동이 아니라 아동의 관심을 출발점으로 삼은 결과 등을 통해 작업팀 및 일과 조직 방식을 변화시킴
- 원장의 지원이 중요했지만, 새로운 변화가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일개 프리스쿨의 프로젝트로 끝날 것인지는 지자체의 지원에 달려 있음(Aronsson, 2019)
- 1998년 스웨덴 최초의 국가수준 교육과정(Lpfö, 1998) 출간(총 12쪽)
 - 프리스쿨에서 아동에게 가르쳐야 하는 기본 가치와 활동의 과제, 전반적인 목표 및 방향은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 각 발달영역별 구체적 교육목표나 학습 내용을 명시한 규범적이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동이 프리스쿨에서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배우고 발달하도록 하는 목표지향적인 특성이 있음
 - 강제 규정을 두기보다 교사나 아동이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남겨두고 있음
 - 개별 프리스쿨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원칙으로부터 자체 계획을 세우고, 교육내용, 조직 및 방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었음(한유미, 2013 재인용; OECD, 2006; Pramling Samuelsson, 2006)
- 2010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총 16쪽)
 - 아동의 언어, 수학, 과학 및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위한 목표가 좀 더 명료해짐
 - 도달(be reached)에 초점을 두는 초중등교육의 목표와 달리,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접하도록 자극과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strive for)하는 목표를 통해 프리스쿨의 교육 활동에 방향성을 제공함⁴⁾
 - 더 학업적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스쿨 교실에서는 사회성 발달, 돌봄, 복지 등을 여전히 권장, 육성함(Korpi, 2016; Taylor, 2018)
 - 교사 개인과 팀 차원에서의 책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지침이 제시됨

우리는 2018년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사 및 종사자들에 관한 규율에 대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과 소관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에 있던 변화들은, 수학이나 자연과학 또는 언어와 같이 과목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학교들도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두 교육과정은 수학, 언어, 과학, 테크놀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보다 집중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아카데미해졌습니다. 이전과 같이 돌봄과 놀이는 같은 역할을 할 것이나 이제는 특정 영역의 학습도 더 강화된 것입니다. 유아교사의 책임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팀으로 일하면서 공동책임을 나뉘가졌는데, 이제는 유아 교사가 보다

4) 프리스쿨과 프리스쿨 클래스에는 래러플랜만 있고, 개별 과목에 관한 쿠시플랜은 없다는 것도 초등교육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T 교육부 공무원 인터뷰)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강조되었습니다. (S 교수)

- 기록화, 평가, 질 발달에 관해 새로운 조항과 원장의 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됨

○ 전통적으로 스웨덴 프리스쿨 교육과정은 ‘교수’(teaching)를 강조하지 않았음

- 2010년 스웨덴 교육법(SFS 2010: 800)은 교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초등교사와 유아교사 모두 학습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식과 가치를 습득, 개발하는 목표 지향적 과정으로 정의함
- 개정된 교육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에 대한 이중적인 강조가 있음. 교사는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학문적, 발달적 엄격성을 준비시키면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보육 및 양육의 토대를 유지해야 함(Bennett, 2005)

“프리스쿨은 교수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프리스쿨의 과제나 활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지속해 온 교수 및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아니다”(Prop. 2009/10: 165, p. 217)

- 2018년 개정된 교육과정(총 21쪽)에 비로소 교수라는 용어가 등장함

나. 2018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및 특성

○ 교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프리스쿨의 질과 내용에 편차가 있음

-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질의 중요성과 프리스쿨의 균질성이 더욱 강조됨
- 취업 또는 학업중인 부모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서, 돌봄이 우선시 되었던 프리스쿨의 원래의 목적을 고려하면 어떻게 프리스쿨의 풍토와 교실에서 교수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Taylor, 2018)

가장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는 1998년도와 2018년도 교육과정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에 있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의 자극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단어의 변화가 있는 이유는 단어와 그에 대한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개념들도 추가 되었는데, 가령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에 새로운 개념들을 추가합니다. 교수(티칭)도 2018년 교육과정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변화다. 이것이 바로 학교화(schoolification)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했는데, 내 생각에 이것은 프리스쿨 교수에 대한 전세계적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W 교수)

- 입법적 변화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프리스쿨마다 질이 너무 차이가 났다는 국립학교감사

원의 평가 결과도 교육과정의 개정을 이끌었음

- 프리스쿨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정과도 연관
 - 핀란드에 비해 스웨덴은 PISA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고, 프리스쿨에서의 지식 습득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됨
 - 프리스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프리스쿨과 학교가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 언어, 수학,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강조는 이미 2010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고, 2018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사회, 경제, 환경), 웰빙, 놀이가 근본이 된다는 점이 추가되고, 유아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
 - 교육부가 만든 것이지만, 국가교육청이 위탁을 받아 개정 작업을 함
 - 시범 운영은 안했지만, 사회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감사관의 현장 조사, 수업참관, 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 연구결과 반영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정함(T 교육부 공무원 인터뷰; Aronsson, 2019)

요즘은 애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못 읽게 하느냐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0여 년전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학교교육과 유아교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940년대 교육개혁 못지않은 변화이지요. 최근 교육과정 변화는 PISA 점수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도 신문을 보면, 우파에서는 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고, 외워야 한다는 식의 기사를 올리고, 반대로 좌파에서는 탐구 능력 키워주고 스스로 공부하게 해야 하며, 30-40분 수업을 아이들은 집중 못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 전 국가교육청 공무원)

다. 현장의 반응 및 평가

- 2018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다양함.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이들 있음.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변화를 감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음

좀 더 깊고 많이 배우도록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하던 건데 좀 더 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M 교사)

실제 교육과정 간의 차이점이 많은데도 교사들이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2018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역량과 인식을 많이 요구한다. (R 지자체 공무원)

○ 관련 분야 교수와 공무원들의 평가

지난 30년간 프리스쿨 교육과정의 큰 변화는 기록화가 많아졌다는 것과 아동이 교육활동에서 권리를 많이 행사(예,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고, 프로젝트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레러플랜(국가 교육과정)이 없었고 기관 자체가 계획했지만 지금은 프리스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L 교사)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 정부가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글들이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변화를 겪으면서,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등 조금씩 더 명료해져갔습니다.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프리스쿨에서 자신의 언어 또는 수화(사인랭귀지)로든 읽기를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리스쿨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적힌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S 교수)

제가 보기엔 좋은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질 향상을 원했고, 스웨덴 전반의 프리스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길 원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질적 수준 향상의 일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평등과도 관련이 있고요. 모든 아동들은 어느 프리스쿨에 가든지 동일한 질적 기준을 누려야 합니다. (P 지자체 공무원)

4. 평가 및 질 관리

가. 평가의 배경 및 역사

-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가 중앙집권적인 규칙과 규제를 통해 보육의 질을 통제
 - 프리스쿨의 확장으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학급 크기, 목적에 맞게 건축된 건물 등에 관해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
 - 이러한 보육의 구조적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규제가 스웨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됨
 - 이후 프리스쿨의 질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자 보육의 구조적 질은 더 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됨(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 2005; Alock, 1996)
-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정부는 직접적 규제를 하지 않고, 지자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보육의 질을 통제
 - 그러나 지역마다 인구 구성이 다르므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음
 - 또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학급크기나 특수아동을 위한 활동에 관해 지자체가 아닌 기관 단위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개별 프리스쿨 마다 국가교육과정 취지의 실행 가능성과 조건이 상이하야 지자체간의 차이뿐 아니라 지자체 내의 차이가 증가했음

- 1995년 보육관련 법규에 보육의 질에 관한 단락이 특별히 삽입되고, 국가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감사(Inspection) 시작
 - 그러나 당시 국가교육청의 감사는 기관은 제외하고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했음
 - 개별 기관이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대화중심의 유연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음(Lindgren, Hult, Segerholm & Rönnberg, 2012)
- 2003년 국가수준의 감사가 의무화
 - 모든 아동이 가장 적합한 보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프리스쿨의 질 평가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함
 - 고도의 지방분권화로 분산된 관리 구조를 가진 체제 하에서 국가적 평가나 회계 감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임(Skolinspektionen, 2009)
 - 국가교육청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학교진흥원(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⁵⁾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개별 기관의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Lindgren, et al., 2012)
- 2006년 집권한 중도 우파 정권은 광범위한 교육개혁을 단행
 - 각급 학교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구조가 보다 세분화되고, 외부 평가와 통제가 보다 강화되고 엄격해짐
 - 중앙정부의 학교에 대한 관리 구조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자체가 향유하던 자율적인 교육 권한에도 영향을 미침
- 2008년 국가교육청 산하에 신설된 국립교육감사원(Swedish Schools Inspectorate)이 감사 업무를 담당
 - 평가와 통제를 하는 조직으로부터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함
 - 중앙정부의 감사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더욱 더 강력하고 엄격한 감사가 빈번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Skolinspektionen, 2009)
 - 지자체가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탄생한 일종의 재중앙집권화임
 - 규범이나 가치와 같이 유연한(soft) 부문에서 지식이나 성취와 같이 경직된(hard) 부문으로 감사의 초점이 변화함
 -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 수집한 객관적 데이터나 증거 등의 비중이 증가함

나. 기관 수준의 평가

- 프리스쿨은 일차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
 - 기관의 자체 평가는 국가의 규제를 받지는 않음
 - 원장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준비하는 책임뿐 아니라 연간 계획을 실행하고, 보육의 질을 보증해야 하는 책임을 가짐

5) 국립학교진흥원은 2003~2008년까지 존재하고 다시 국가교육청으로 통합되었는데 (Lindgren, et al., 2012),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인한 것임

- 아동과 부모도 질 평가에 참여함
- 기관 수준의 평가는 공식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성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질 향상에 초점 (Schreyer & Oberhuemer, 2017)
- 아동들 간의 비교를 하지 않고 항상 개별 아동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초점을 둠 (Taguma, Litjens, & Makowiecki, 2013)
- 새로운 교육법(Ds 2009:25)은 교육적 기록(Pedagogical Documentation) 강조
 - 교육적 기록은 다양한 기법과 초점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함
 - 개별 아동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비디오, 녹화, 디지털 카메라, 종이와 연필 등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음
 - 교사들에게는 상호 반성적 성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2018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프리스쿨에서 교육적 기록을 더욱 강조
 - 국가교육청의 2004년과 2008년 전국 평가에서 교육적 기록을 사용하는 프리스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Aronsson, 2019)
 - 지난 수십 년간 프리스쿨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되기도 함(L 교사; P 원장)
- 특히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을 이용한 교육적 기록을 일상적으로 이용
 - 아동의 관점을 시각화하는 민주적 도구이자 교사라는 직업을 전문화하는 도구
 - 사진을 찍어서 손으로 쓰고 파일에 모았던 과거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지만, 예테보리 시스템이 느려서 시간 많이 걸리므로 페이스 북처럼 쉬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음(M 교사)
 - 매일 기록은 못하고 1주에 1번 정도 그리고 돌봄을 제외한 티칭의 경우에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조 전직 교사)
 - 개별 아동별로는 기록을 잘 안하고, 주로 학급 전체의 활동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인터넷(온라인시스템)에 올려서 부모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세(R 교사)

나는 지난 30년 간 유아교사로 일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씩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들은 그저 아이를 어떻게 돕고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면 됩니다. 기록의 유일한 이유는 교사 스스로 배우고 아동 또한 어떤 것을 더 이해해야 할지 알기 위함입니다. 만일 기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동과 교사 모두 돕는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록하는 일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S 교수)

- 교육적 기록에 대한 현장의 반응
 - 일부 교사들은 개별 아동을 지원하고 도전을 제공하기 위해 기록하는 방법을 잘 모르며, 기록에서 나온 지식을 평가의 기초로 그리고 프리스쿨의 질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함(Sonja, Pia, & Anette, 2013)
 - 교육적 기록이 시간이 많이 걸리며 아동과 지낼 시간을 빼앗는다고 느끼며 (Vallberg-Roth, 2013b), 기록에 대한 부담으로 프리스쿨을 그만두는 교사도 있음
 - 교육적 기록이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종의 평가 기법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Aronsson, 2019) 교육적 기록을 기피하는 프리스쿨들도 있음

- 지자체도 교육적 기록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도 사진도 찍어야 하고 아이들의 성취에 대한 글도 적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인식하고 있음(R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

다. 지자체 수준의 평가

-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교육기관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질 보장의 책임
 - 국가수준 감사가 지역 내의 모든 것을 늘 꼼꼼히 조사할 수는 없으며, 제한된 시점의 상황만을 기술할 수밖에 없고, 운영 상황을 외부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평가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한유미 외, 2005; Gunnarsson et al., 1999)
 - 1997년 이후 지자체는 프리스쿨의 질을 국가교육청에 보고하고, 2000년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질을 평가했는지도 밝히도록 되었음(Kärby, 2002)
- 당시 정부는 프리스쿨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별 질 차이를 줄이고 나아가 프리스쿨과 학교를 대등하게 만들고자 함
 - 이를 위해 프리스쿨의 질을 문서화하고 매년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학교보다 몇 년 먼저) 의무화했음(Munkhammar & Wikgren, 2010)
 - 그러나 지자체는 질 측정 및 평가방법을 재량껏 결정할 수 있음
예) 부트쉬르카(Botkyrka) 지자체에서는 <표Ⅲ-17>과 같이 프리스쿨의 질 평가 시 현재의 상황, 목표 또는 원하는 결과, 개입, 추적, 평가 및 분석 등을 반영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1-2회 부모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부모만족도 설문조사는 국가가 설계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며, 지역 수준에서 교육적 보육을 제외한 프리스쿨과 프리스쿨 클래스 만 실시됨
 - 설문 문항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OECD, 2015)

<표Ⅲ-17> 부트쉬르카 지자체의 보육의 질 평가

단계	내용
1. 현재 상황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2. 목적/ 바람직한 결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3. 개입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추수작업	우리는 무엇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5. 평가 및 분석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가?

<표Ⅲ-18> 외부 평가로서의 부모만족도 설문 조사 문항

부모만족도설문조사 항목	스웨덴(프리스쿨, 프리스쿨 클래스)	한국 (유치원)
서비스의 질, 종사자의 질, 운영의 전반적 만족도	○	○
보육실, 유희실, 건물 등의 질	○	○
교직원의 지도나 가르침, 돌봄의 질	○	○
교직원 또는 원장에 의한 정보의 공유	○	○
가정학습환경과 ECEC 교육과정의 적합성		
교재, 장난감, 책 등의 사용		○
부모개입 가능성	○	○
부모들 간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킹 가능성		
일과표, 계획, 현장학습		○
운영시간	○	○
아동의 경험이나 성과	○	○

출처: OECD(2015)

○ 나까 지자체에서는 다음 6가지 항목의 부모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 평가에 반영

<표Ⅲ-19> 나까 지자체의 부모만족도 조사에 기초한 통계 항목

1. 부모의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프리스쿨의 비율
2. 프리스쿨의 프로그램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
3. 프리스쿨이 자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고 믿는 부모의 비율
4. 프리스쿨이 자녀의 사고력과 흥미를 갖게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
5. 자녀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부모의 비율
6. 프리스쿨에서 자녀가 안전하게 있다고 믿는 부모의 비율

○ 지자체의 질 평가 보고서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취합하여 작성하여 매년 5월 1일 국가교육청에 제출(OECD, 2012)

- 지자체 및 프리스쿨의 자체 질 평가를 위한 국가적 기준은 발달과 학습, 기본 가치 및 영향력, 안전 및 환경, 운영 및 교육 개발, 교육적 리더십 및 교육 개발, 운영 구조 및 교육의 조직, 유아교사와 교육 활동, 교직원의 역량, 교육의 제공,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권리, 집단 구성의 적합성, 물적 자원, 운영 방식 등 13가지 영역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Ⅲ-20>과 같음

<표Ⅲ-20> 지자체와 프리스쿨의 자체 평가를 위한 국가적 기준 (축약판)

발달과 학습	<p>1. 아동의 다양한 상황과 능력, 욕구 등을 고려하고, 모든 지자체 프리스쿨의 질이 동등함을 보장한다.</p> <p>2. 보육업무가 가정과 긴밀하고 신뢰로운 협력 하에 수행된다. 부모에게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했는가? 부모들은 필요한 정보를 받았는가? 부모는 교직원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아동의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가? 모든 부모가 최소 1년에 1회 발달적인 대화를 제공받았는가? 부모는 자신이 참여한 프리스쿨 활동이나 프리스쿨과의 접촉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p> <p>3. 프리스쿨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자극하는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프리스쿨 활동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자극해야 한다. 학교감사관은 프리스쿨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의식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질문한다.</p> <p>4. 프리스쿨 내 모든 아동이 교육 목적에 따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는다.</p> <p>5.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프리스쿨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가? 프리스쿨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특별한 필요에 대해 도움을 받는가? 원장은 아동의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는가? 부모나 보호자는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가?</p>
기본 가치 및 영향력	<p>1. 사회의 가치를 수립하는 일에 프리스쿨이 체계적으로 작업한다.</p> <p>2. 아동의 최선의 관심을 토대로 활동을 하며, 아동은 자신의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p>
안전 및 환경	<p>1. 안전, 아동의 복지에 대한 관심, 좋은 보호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환경인가?</p> <p>2. 프리스쿨에서 아동 학대 행위를 봉쇄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가?</p>
운영 및 교육개발	<p>프리스쿨의 원장은 전체적인 질 작업이 교육의 계획, 점검, 발달을 수행하는지, 체계적인 질 작업을 보장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원장은 요구, 목표 및 지침이 모니터 되고 평가되고, 문서화되도록 하는가? 원장은 자신과 기관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가?</p>
교육적 리더십 및 교육 개발	<p>1. 운영자는 기관이 교육과정과 교육법, 기타 프리스쿨에 관한 규제에 근거하여 운영됨을 보장하는가? 원장은 기관에서 업무가 행해지는 방법에 대해 실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원장은 기관의 발달을 선도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p> <p>2. 원장은 교육의 계획, 점검, 발달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교사와 기타 직원들이 모두 고용되어 있고, 아동과 부모가 모두 참여할 기회가 있는가? 발달 욕구와 운영을 다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p>
운영 구조 및 교육의 조직	<p>1 원장은 프리스쿨의 업무를 이끌고 조정하는가? 원장이 특정한 운영 또는 의사결정 권한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위임할지가 명확한가? 원장은 이러한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행 역량과 경</p>

	힘을 갖고 있고 관련 사안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보증하는가?
유아교사와 교육 활동	1. 교사는 교육과정 목표에 근거한 활동 실행, 2.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 3.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토대로 프리스쿨을 평가하기 위한 추적과 분석, 4. 발달 업무의 수행 방법에 대한 결정 등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는가?
교직원의 역량	1. 원장은 교육적 통찰력이 있을 것임을 보장할만한 교육적 배경과 경험이 있는가?(예: 교육학 학위) 2. 교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교육과 기술을 갖고 있는가? 3. 교직원은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프리스쿨 시스템에 대한 규제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가?
교육의 제공	지자체는 프리스쿨이나 기타 교육활동에 자리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밖에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없는지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기관에 대한 권리	지자체는 기관(또는 교육적 보호)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자체는 일정 기한 즉, 아동의 보호자가 기관에 등록하기 원한다고 한지 4개월 내에 기관을 제공하는가? 지자체는 부모가 실업, 육아휴직 중인 아동이나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관한 기타 요구 사항을 다루는가? 지자체는 만 3세부터 아동을 공립 기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가?
집단 구성의 적합성	아동은 기관에서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운영자와 기관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물리적 환경과 아동에게 안전한 실내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집단 구성을 할 때 아동의 연령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 아동의 상이한 상태와 욕구, 그리고 활용 가능한 전문가와 인력의 관점에서 아동의 출석을 고려하는가?
물적 자원	프리스쿨에는 교육목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설비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적합한가? 아동이 활동들을 전이하고 휴식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가? 기관은 실내외 활동 모두에서 아동 자신의 계획, 상상력, 독창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가? 환경 구성에 아동들이 참여하는가? 교직원은 사려 깊은 접근과 행동 준비 태세를 보여 주며, 아동들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사고에 대한 서면 절차가 있는가? 기관은 부상과 사고를 책임 기구에 보고하는 명확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운영 방식	기관은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직원이 아동 학대를 두려워 할 때 기관에서는 이를 사회복지 부서에 보고하는가? 기관은 위험에 처한 아동들에 관한 다른 지역사회 기관들과 가능한 협력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기관은 교육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 사항이 운영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가?

출처: Vallberg-Roth(2013b)

③ 국가 수준의 평가

- 국가 수준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프리스쿨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문서 작성, 추적, 평가, 개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큰 틀을 결정
 - 2003년 이후 국가교육청에 위임된 국가 수준의 감사 업무가 2008년 10월 국립학교 감사원에게 이양
 - 2003-2009년은 종합감사 형태로 행해졌고, 2010년에는 정기적인 감독과 주제별 질 평가로 나누어짐
 - 국립교육감사원은 프리스쿨부터 성인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가 수준의 행정기구이자 감독기구로 교육감사, 민원조사, 독립적 학교의 승인 등이 주요 업무임
- 국립학교감사원의 역할은 프리스쿨과 원장을 법적 요건에 따라 점검, 조사하는 것임
 - 감사의 초점은 지자체와 기관이 교육법의 각 규정들과 관련된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가를 통제하는 데에 있음
 - 감사는 또한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각 기관들이 국가적 목표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지자체와 기관들이 '자체평가 시스템'과 '자기향상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국립교육감사원의 감사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표Ⅲ-21> 국립교육감사원의 감사 유형

감사 유형	내용
종합감사	- 2003-2009년까지 행해진 감사 유형 - 법적 측면과 질과 관련된 측면을 다룸
정기감독	- 교육법과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 - 법적인 측면에 초점. - 상당한 압박감이 있으나 감사관은 폐원 결정이나 벌금을 내릴 수 없음
주제별 질 평가	- 성취의 기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이나 지자체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 - 중심 영역이나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영역을 교수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으로 고찰
민원조사	- 지자체나 기관이 규제와 관련된 책임을 다했는지, 실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 - 부모의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검토할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한 법적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

출처: Skolinspektionen(2009)

- 이들은 정기 감독, 표적 감독, 질 감사, 인가 등 다양한 감사 활동을 수행(Lindström & Perdahl, 2014)
 - 교육감사 시스템은 정기 감독과 주제별 질 평가를 통해 수행됨

- 정기 감독의 착안점은 합법성 심사이며, 감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개인의 교육법에 준거한 권리 보장임
- 주제별 질 평가의 착안점은 기관의 교육활동 결과치와 관련하여, 교수학습 과정의 정성평가임(Skolinspektionen, 2009)
- 학교감사관은 관할 내의 모든 기관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
 - 원장과 교사 및 기타 종사자, 아동 등을 면접하고, 수업 관찰을 하기도 함
 - 2명의 감사관이 현장 방문을 하며, 대개 1-2일 정도이나 좀 더 길어지기도 함
 - 기관 및 지자체의 예비보고서에 대한 반응과 더불어 원장에게 구두로 피드백 제공
 - 인터넷에 형식적 보고서를 탑재하며, 신문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도 발표함
- 모든 질 평가 감사는 특정 이슈(예: 리더십, 과목)에 초점
 - 연구자나 기타 전문가 등 관련 집단과 더불어 소수의 기관이 무작위로 추출됨
 - 기관 당 2명의 감사관이 방문하며 최종 보고서에 대한 제안사항을 제공함
 - 기관에 대한 피드백도 슈퍼비전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미디어,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해 요약 보고서가 출판됨
 - 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식의 근거를 세우는 것임(Gustafsson, Lander, & Myrberg, 2014)
- 국립교육감사원의 감사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Ⅲ-22> 국립교육감사원의 감사 단계

	종합감사/정기감독	주제별 질 평가
1단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기관에 사전조사 실시 - 통계, 질 관련 보고서, 사전감독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 등 기존 자료 검토 - 지자체나 기관의 활동을 개관하고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예: 아동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징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조사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 - 평가 주제와 관련된 외부전문가와 접촉 - 평가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이고 핵심문제를 포함하며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지 확인
2단계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의 감사가 1-2일 방문하며, 아동이나 부모, 관련 정치인 뿐 아니라 원장, 교사, 양호교사 등과 면담 -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 - 교육활동을 다각적인 관점과 다양한 근거에서 기술하는 것이 목적 - 수업 관찰이나 환경 관찰 시 규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밀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1-2명이 기관을 방문하며, 주제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방문 기간은 차이가 있음 - 특정 측면에서 평가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학교들을 선발한다. 우수 기관과 열등 기관을 모두 선택(우수한 것을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지원하기 위한 목적)한다.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초점이 있으며 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임

3단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정기감독과 주제별 질 평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 - 취합된 자료를 기록하고 대조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 - 문서분석, 통계, 구조화된 면접, 비형식적인 대화와 관찰 등에서 얻은 정보를 단계별로 분석하며, 모든 결과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삼각측정(triangulate)되고 해석은 팀 안에서 연합적으로 수행됨 - 분석·평가·사정을 토대로 각 시찰대상을 평가 	
4단계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에게 구두로 피드백을 직접 전달하며, 몇 주 후 보고서 출판 - 출판 전 지자체와 원장은 감사단의 예비보고서에 대해 의견 제시 기회 제공 - 정부가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사단은 책임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사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따름 - 기관 보고서 외에도 평가대상 기관들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음
5단계 추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받은 지자체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한 작업에 대해 3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감사단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면 감사가 종료되며, 감사단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출처: Skolinspektionen(2009)

국립학교감사원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교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 생각으로는 2018 교육과정만 따라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립학교감사원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내 지시는 없고, 학교감사관이 관찰, 분석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학교감사관이 결론을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국립교육위원회에서 임무를 맡긴 연구원들이 또 그걸 봐야 합니다. 지자체, 학교감사관, 국립교육위원회가 함께 결정합니다. 교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기록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감사관 눈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M 원장)

- 회계감사의 경우 공립 프리스쿨은 국립학교감사원, 사립은 지자체가 감사
 - 국립학교감사원이 전부 다 하려면 엄청난 행정조직과 재정이 필요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지자체는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 있으며, 직접 프리스쿨에 가서 교사나 부모와 인터뷰를 함
 - 학교감사관은 지자체에 가서 지자체가 선발한 학부모 및 교사 대표와 만남
 - 학교감사관 감사보다 지자체 감사가 강도가 썸(T 교육부 공무원)

IV. 뉴질랜드의 유보통합

1. 뉴질랜드 유보통합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⁶⁾

뉴질랜드는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에 있어 통합된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사회복지부 산하에 있던 보육을 1986년에 교육부로 이관하고 1987년부터 1988년 사이에 광범위한 교육행정부의 개혁을 단행하여 교육부, 사회복지부, 마오리 담당부 세 곳에 분산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 책임을 1989년 교육부로 통합함(Meade & Podmore, 2002)

가. 유보통합 이전(1970년대 전) 유아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교육부는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지역사회 기반의 유치원(Kindergarten)과 1940년대에 시작된 뉴질랜드 특유의 놀이센터(일정 수준의 놀이센터 훈련을 통해 1코스 혹은 2코스의 국가 자격증을 받은 부모나 가족에 의해 운영되며 놀이집단과 다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를 맡았는데, 둘 다 시간제 서비스로 반나절만 운영하였음.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급여를 받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유치원 협회들은 관리비, 운영비, 건물 관리 및 교구나 재료비 등을 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원받음
- 사회복지부는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시설(Childcare Services)을 관리하였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들이나 한부모 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하였지만 정부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부모의 수수료는 높았고, 보육 종사자의 교육 수준은 낮았으며, 제공되는 보육의 질은 매우 다양했음. 맛벌이 가족의 출현과 함께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조부모도 직장생활로 손자녀 양육 불가)하며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가 높아짐
- 마오리 담당부는 1982년에 마오리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된 마오리어 유아교육 시설인 코항가 레오(Kōhanga Reo)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 곧 예산이 고갈됨

나. 아동을 위한 질적인 보육과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

- 1970년 초반부터 여성단체나 정치적 집단, 노조, 교육 단체 등 많이 지역사회 로비스트들이 유아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

6) Meade, A., & Podmore, V. N.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Department/Ministry of Education-A Case Study of New Zealand. UNESCO: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 n. 1)와 뉴질랜드 교육부 및 학계 관련자의 인터뷰(2019년 7월)를 기반으로 작성함.

- 1975년 세계여성의 해에 “남녀평등과 교육에 관한 세미나”에 모인 여성들이 보육시설에서도 유치원이나 놀이센터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 주장함. 회의에 참석한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정책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보육시설을 교육부 산하로 옮길 것 요구함
- 1976년 총리가 주관한 “사회경제발전에 있어 여성에 대한 회의”에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동일한 지원과 훈련된 보육시설 종사자의 고용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 유아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 관리를 고안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과 여성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관조직들 간의 협의할 것에 대한 권고가 통과됨

다. 유보통합에 대한 반대와 옹호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으로 당시에 많은 옹호집단과 다수의 반대 집단이 있었음. 일부 유아단체만이 아니라 보육시설과 유치원들도 반대하였으나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기 까지 여성들이 계속 주장을 이어감
- 통합을 지연시킨 다양한 비판들은 다음과 같았음
 - 사립센터나 사립보육시설연합회 등은 공적기관이 자신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통합에 반대하는 통일되고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냄
 - 가정기반센터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이므로 교육 부로의 통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함
 - 놀이센터에서는 통합을 통해 보육시설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면 모든 아기들이 엄마에게서 분리되어 온종일 보육시설에만 있을 것이며 이는 아기에게도 해롭고, 부모의 양육이 폄하될 것이며 부모역할이 최소화될 것을 우려함
- 통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음
 - 돌봄과 교육의 구분은 인위적인 것이며 아동 중심으로 생각해야한다고 주장함
 - 질 높은 보육은 영유아에게 이로우며, 유아교육의 형태이기도 하다는 연구결과 제시
 -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당시 야당이던 중도좌파인 노동당에 영향 미침

라.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과정

- 1984년에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는 신자유주의 원칙을 사용하여 정부 시스템을 개혁하며, 보육을 교육부로 이전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림. 몇몇 동구권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최초로 통합을 이룬 아이슬란드에 이어 1986년 뉴질랜드가 2번째로 통합을 이룸. 노동당의 유보통합과 관련한 선거공약 발표부터 집권 후 행정통합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노동당 선거공약 작성
 - 정권을 잡은 후 주요 정부 장관들은 저항 가운데서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규제 개정
 - 실무 그룹을 소집하고, 국가 포럼 개최

- 내각이 최종 결정함
- 이행 그룹과 공무원이 실행 단계를 개발함
- 유보통합 과정의 연혁
 - 1984년 유보통합을 천명했지만 이는 교과 과정 통합, 재정, 교사 교육 등 모든 통합의 시작일 뿐으로 통합과정의 개략적인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84년 노동선언서 확정

1984년 국가수준 유아보육과 교육의 목표와 목적 설정

1985년 보육시설 규제 개정안

보육서비스: 영향과 기회 보고서

국가수준 유아 보육과 교육에 있어 교사양성의 쟁점

보육행정의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 전환을 위한 합동장관급 실무위원회
보고서

1985년 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장관급 포럼

1986년 보육 관리를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유치원 교사 3년 양성과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보고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보고서

1987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위한 3년의 통합된 교사양성 정책을 수립

1988년 더 나음을 위한 교육(Education to be More): 유아 보육 및 교육 실무

위원회 보고서(그린페이퍼)

5세 이전(Before Five)이라는 뉴질랜드의 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

(화이트페이퍼)을 통해 교육 분야의 다른 부문과 유아교사 간의 동등한

지위와 재정 지원의 확대를 약속함

코헝가 레오 보고서에 대한 정부 평가

1989년 5세 이전 여섯 가지(Six Before Five)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위원회

보고서

1990년 모든 유아서비스(코헝가 레오 포함)에 대한 공통 보조금 지원 공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의 공통 자격요건에 대한 단계별 정책 수립 등 90년대

는 통합 정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정부가 많은 실무집단을

조직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를 개발한 유명한 집단임

○ 보육행정의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 이관 과정

- 1986년 4월 1일 실무위원회에서 보육업무의 이관과 보육시설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훈련, 자문/지원 서비스, 교육부 내의 유아교육 강화 등 권고함. 그러나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책무성에 대한 쟁점이 해결되지 않음
- 1985년 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장관급 포럼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전달 체계, 재정지원, 교사양성, 자문 지원, 관리 및 지역 사회 요구 충족과 같은 주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논의함
- 통합으로 인해 직원고용 및 운영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은 사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

관되었고, 보육시설을 허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공무원들은 교육부 소속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부의 고위 관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

-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 직전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가정기반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부장관을 찾아가 교육부로의 이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함. 가정기반서비스는 예방적이고 지지적인 역할을 함으로 사회복지부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다른 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와 함께 교육부에 속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기반서비스 제공자자의 판단에 따른 요청을 사회복지부에서는 반기지는 않았지만 결국 들어줌
- 보육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서류, 보조금의 교육부 이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보육이 공평하게 대우받기 위해 필요하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으며, 질적인 보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교사양성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황을 조성함
- 1985년 5월 다양한 유아 보육과 교육배경을 가진 대표자들이 일주 내내 토론을 통해 5년 동안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유아 보육과 교육 교사양성과정 통합, 다양한 유형의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 획득 경로, 교사양성과정의 핵심 교과과정, 다양한 교사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동일 자격에 대한 동일 급여 제공)를 제시했으나 지역 집단이 다수 포진된 포럼과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음
- 교육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는 열의도 낮고 의무 교육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종종 지식과 이해도 낮았음. 대부분의 공무원이 유아서비스의 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 했지만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교육국장에 의해서 지지됨

○ 교사양성 과정의 통합

- 1986년 유아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음. 유치원교사와 학교 교사 간의 동등한 급여 보장에 대한 논의가 교사 교육과 자격의 차이로 인해 중단되자 교육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유치원교사의 교육연한을 3년으로 늘리고 보육 근로자와 유치원 교사 간의 교사양성과정 통합을 진행하도록 지시함
- 내각에서 장관의 결정을 지지해 보육과 유치원 교사양성 과정을 3년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보육과 교육 관련 교사양성과정이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고등전문학교에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국제적 선도국가로 나서게 됨
- 1987년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위한 3년의 통합된 교사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1988년 교사교육의 통합을 (당시의 교육대학에서) 시작함.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은 2년, 보육 종사자는 1년의 교육만 필요했으나 모두 3년간의 교사교육으로 통합했으나 매우 천천히 진행됨
- 보육현장에서는 유치원 중심이었던 교육대학이 보육의 특성을 포함하기 위해 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도 있었으나(May, 1997, 재인용) 이런 의심과 유치원 중심 성향은 시간이 흐르고 전문성이 개발되며 사라짐.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돌봄과 교육을 아우르며 영아부터 취학 전 연령까지를 포함하도록 한 것도 매우 중요함
- 통합 초기 이미 2년의 훈련을 마친 기존 유치원교사들은 비록 3년이 아니지만 (모두가

다시 시작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정해 주고, 1년의 훈련만 받은 보육 근로자(worker)⁷⁾ 들은 자격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기존의 훈련과정에 따라 학위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 보육의 경우 초기에는 감독자만 해당됨

- 민간기관들 중에서는 자격을 갖췄지만 나쁜 교사도 있다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은 필수가 아니고 '사랑스럽고' '가정적'이기만 하면 된다면 교사자격제도를 비판하기도 함. 고용주 중에는 지금까지도 보육시설 교사들이 경제적 이유나 더 힘을 키우기 위해 등록교사가 될까봐 높은 자격에 대해 꺼리기도 함
- 그러나 당시 전략적 계획 중에 100% 자격교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정부가 치밀한 계획 하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훈련 받는 교사와 센터들을 위한 지원금 제공 등 상당히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만약 자격을 높이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림

○ 교육 행정의 개혁 과정

- 1987년에서 88년 사이, 내각 사회 형평성위원회가 구성한 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실무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주요 사항은 모든 유아 보육과 교육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함
- 이는 1988년 “5세 이전”이라는 정책으로 발표되었는데, 정부 지원을 바라는 모든 시설은 각자 현장 (목표, 정책 및 실제)을 개발해야 함
- 새로운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에 인가를 해주며, 현장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전달함
- 또 다른 정부 부서인 ERO(Education Review Office)는 매년 정부 규정 및 각 서비스 자체의 현장 목표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함
- 새로운 유아보육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와 가족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이를 수행해야 함
- 1989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 보육도 마침내 상대적으로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받음. 교육부의 모든 서비스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시간당, 아동 당 동일하게 보조금이 제공됨
- 사회복지부는 저소득 가정이나 건강, 장애로 인해 욕구가 있는 가족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조사를 통한 비용 보조금을 계속 지불함

○ 유보통합에 대한 관련자들의 생각

유보통합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통합 실시 합의 이후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과제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기관 평가기관 ERO 관련자 S)

유보통합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통합에 있어 풀뿌리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강력한 옹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육노동자노조와 유치원연합노조 간에 분열되어 제각각 내고 있는 목소리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1984년부터 노력해서

7) 당시 보육교사는 worker라고 불림

1990년 “통합유아노조”를 설립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으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부를지 교사로 부를지 조차 합의가 어려워 노조이름에서도 제외했지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의 협력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원하므로 부모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같은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원하는 여성들에 의해 통합이 이뤄졌어요. 한국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당시 현직 유치원교사였던 L 대학교수)

유보통합은 당연히 아동에게 유익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아동들을 위해 어떤 배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언제나 아동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과 보육 모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제공하는 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시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교육보육센터의 경우 돌봄을 조금 더 제공하고, 보다 더 규칙적이며, 보다 더 구조화되기는 했지만 교사들의 자격도 동일하고 모든 아동들에게 바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행·재정이나 교사자격, 평가시스템 등 모두 통합되었음에도 서로 다른 서비스 유형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선택권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연합회 소속 C 교육서비스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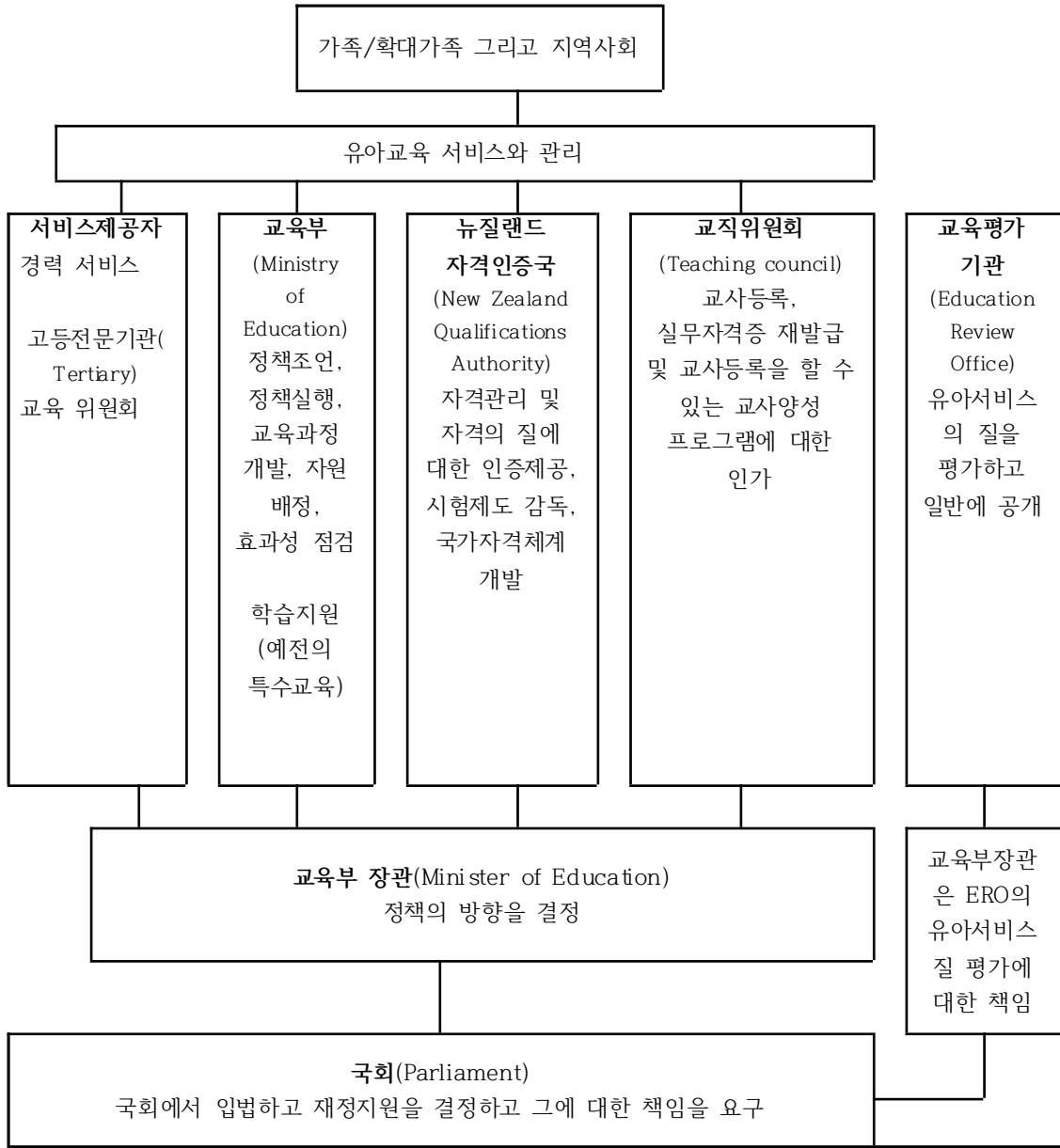
2. 뉴질랜드 유보통합 시스템

가.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

- 뉴질랜드에서는 6~16세까지가 의무교육이며, 5세는 무상교육으로 만 5세가 되는 날부터 취학이 가능함. 3~5세 유아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이용에 대한 법적 권한은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나 3~5세 아동은 주당 20시간까지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OECD, 2015)
- 국회는 유아교육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함. 1986년 교육법에 영유아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련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었음

1986년 당시에는 현재처럼 인가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1991년 개정된 교육법에도 가정기반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단지 2페이지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현재 교육부에 의해 임명된 특별업무부서에서 가정기반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검토 중이에요. (교육부 공무원)

<표IV-1>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체계



출처: 뉴질랜드 교육부 내부자료(20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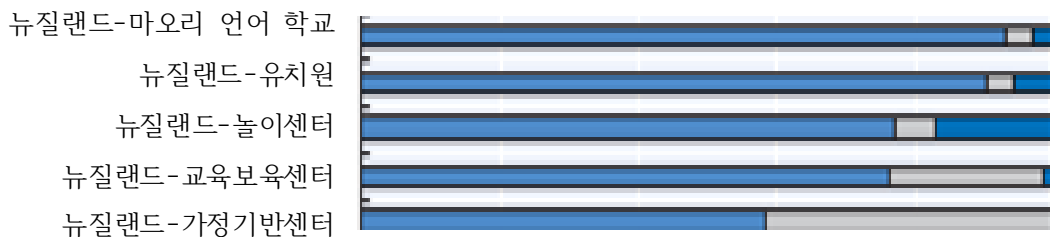
- 교육부는 중앙에서 교육법에 따른 정책 개발과 방향 설정, 정책적 조언 제공, 교육과정 개발, 자원 배정, 효과성 점검을 맡아하고, 교육기관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설정함. 뉴질랜드의 10개 지역에는 교육부 지역 사무소가 있어 정책의 실제적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함.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세금으로 하며, 지역 사무소에서는 인가를 내주고 재정집행이 잘 되나 살펴봄. 정부지원을 원하는 시설은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함. 재정지원에는 교육부와 함께 사회복지부도 특정 보조금 지급을 통해 참여함
- 뉴질랜드 자격인증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에서는 자격을 관리하고 자격의 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며(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의 평가

- 등), 시험제도 감독 및 국가자격체계 개발을 담당함
- 뉴질랜드 교직협의회(Teaching Council)는 교사등록, 실무자격증 재발급, 등록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가를 맡음. 뉴질랜드에서는 학위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을 통해 교사 교육을 받아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교사등록을 하지 않고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며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함. 그러나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적절한 자격을 갖췄으나 등록하지 않은 교사들을 채용하는 기관들도 있음. 교육부에서는 교직협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으나 조언을 하는 절차는 있음
 - ERO 사무소는 가정기반센터를 포함한 유아기관부터 학교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질적 성과를 검증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교육부 장관은 ERO 사무소와 보고서를 통해 개별 유아기관의 교육을 점검하고 운영을 평가함

나. 재정지원 체계

1)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분담

- 뉴질랜드는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국가 수준에서 담당하는데, 예산 집행의 주체는 주정부이며,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정부와 부모 간의 분담은 다음과 같음 (OECD, 2015; 재인용 최윤경 외, 2016)
 -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부담이 높아 부모 부담이 전체 비용의 10% 이하로, 1/4 비중을 넘지 않을 정도지만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을 국가와 부모가 부담하는데 비해,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을 위한 언어학교인 코항가 레오나 놀이센터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3의 주체(사립연맹이나 기금단체 등)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특징임. 아래 <그림 IV-1>에서 왼쪽의 진한 부분이 정부의 부담률이고, 연한 부분이 부모 부담률, 그리고 오른쪽 끝의 진한 부분이 제 3의 주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 그림 IV-1 >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분담

출처: 최윤경 외(2016). 유아학비 지원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연구. p.38 그림 IV-2-1)을 번역함

- 유치원에 비해 놀이센터와 가정기반센터, 교육보육센터는 부모 부담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가정기반센터의 경우 전체 비용의 42%를 부모가 지불함(OECD, 2015). 이는 서

비스유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차이와 함께 서비스이용료를 시설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부유한 지역의 아동들은 높은 비용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부모의 능력을 고려해 (오클랜드의 소득이 낮은 지역 경우)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낮게 책정하기도 하고 이용료 대신 자율적인 기부금을 받는 시설도 있음

2)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재정 지원 방식⁸⁾

○ 차별화된 재정 지원

- 뉴질랜드 교육부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운영비용 결정요인에 따른 조사를 통해 2005년 4월 이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재정 지원체계를 개편하였음. 교육부의 보조금 지급은 영유아교육보육 지원금(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ing Subsidy)과 20시간 유아교육 서비스(20 Hours ECE),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ECE Equity Funding), 고립된 지역의 기관을 위한 연간 추가 지원금(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으로 나눌 수 있음. 하루 6시간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기본적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지만 아동의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특수한 교육적 요구나 지역적 상황에 따른 선별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사주도서비스의 경우 등록교사비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차등화 하여 채용교사의 100%가 등록교사일 경우 보조금 지급액이 최고에 달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등록교사를 100%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1년 보조금 최고 지급 구간을 100%에서 80% 이상으로 변경함
- 종일제 운영기관의 경우 특정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기관에 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교사 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밝혀짐에 따라 2005년 4월 1일부터 종일제 기관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
- 취학 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해서 가능한 많은 가정의 아동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3~4세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을 추진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재정지원 교육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하여 2007년부터 실시함. 현재 3~4세 경우 하루 6시간 이하, 한 주 당 20시간 무상 ECE를 제공받음(초과 10시간에 대해서는 2세와 같은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하므로 총 30시간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됨)
- 교육법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기관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부모들에게 알려야 함

8)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https://education.govt.nz/early-childhood/funding-and-data/funding-handbooks/ece-funding-handbook>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일 년에 세 번 집행됨
 - 네 달에 한 번 각 기관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계획 보냄(2월에 연령별 아동 수와 이용시간을 보고함)
 -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네 달(3-6월) 동안의 지원 필요 금액을 예상한 후 75%를 3월 첫 근무일에 선 지원함
 - 네 달 후인 7월에는 2-5월 사이의 실제 아동 수와 이용시간을 바탕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 선 지급 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지원하고, 7-10월에 대한 선 지급액을 지원함

<표Ⅳ-2> 뉴질랜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지급(월)	선지급분(월)	후정산분(월)
3	3, 4, 5, 6	10, 11, 12, 1
7	7, 8, 9, 10	2, 3, 4, 5
11	11, 12, 1, 2	6, 7, 8, 9

출처: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funding cycle을 재구성함

- 서비스 이용 아동의 수와 이용시간에 연계한 재정 지원의 문제(유치원연합회 소속 C 교육서비스매니저)
 - 입학이 시작되는 1월처럼 갑작스런 등록 유아의 감소는 정부 지원금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6주 전부터 빈 자리를 보충할 계획을 세움
 - 5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므로, 부모를 통해 입학예정일을 파악하고 그 다음 날부터 등원할 수 있는 유아를 찾아서 대체해야 함
 - 유치원은 교육보육센터에 비해 유연한 이용시간으로 인해 충원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함. 예를 들어 주 5일 종일제 이용 유아가 그만 둔 자리는 두 명의 종일반 유아에 의해 채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6명의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에 의해 채워질 수도 있음
 - 만약 인가 유아 숫자만큼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게 되고, 교사 월급 등의 운영비 지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홍보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 교사의 수를 줄이기도 함
 - 같은 유치원협회 소속 유치원 간 교사를 재배치하기도 하고, 유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 교사를 해고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으려고 함
 - 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유보통합 이후에도 재정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사회복지부와 여전히 협조함(교육부 공무원)
 - 교육부가 인가된 기관에 지원하는 하루 6시간, 주 30시간에 해당하는 재정은 운영비로 교직원고용이나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등에 75% 정도가 사용됨. 따라서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부모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하면 이를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복지부에서 차등 지원함

- 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5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3~5세 경우 교육부의 20시간 무료 정책과 연계하여,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사회복지부에서 10시간을 추가 지원함
- 부모가 신청하면 자격심사 후 지원 금액을 매주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직접 지급함. 따라서 기관 퇴원 시 사회복지부에 알려 지급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계속 지급됨
- 방과 후 돌봄도 사회복지부의 책임 하에 있음
- 사회복지부와 재정 측면만이 아니라 유아기관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에 대해 협의함. 기관 운영자와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 사회복지부에서 우려를 제기하면 교육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기관의 신규인가나 인가취소 시 사본을 ERO와 사회복지부에 전달함

3)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재정 지원 유형⁹⁾

○ 영유아교육보육 지원금(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ing Subsidy)

-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인가받은 기관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 대해 하루 6시간, 주(7일) 30시간에 대한 지원금을 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고 있음(하루에 8시간씩 주 3일, 총 24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하루 6시간씩만 인정되므로 18시간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됨)
- 아동 한 명에게 시간당 지원되는 액수는 아동연령(2세 미만과 2세 이상)과 시설유형(유치원, 교육보육센터, 가정기반센터, 코헨가 레오, 놀이센터, 놀이집단), 운영형태(종일제, 반일제), 그리고 실무자격증을 지닌 등록교사의 채용비율에 따라 달라짐. 시간당 지원액은 2세 미만이 2세 이상보다 더 높고, 시설유형 중에서는 유치원이 가장 높고 다음은 교육보육센터와 가정기반센터의 순으로 높음.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종일제가 반일제보다 높고, 등록교사의 채용비율에 따라 시간당 지원액에 차이가 나 80%이상인 구간에서 지원액이 가장 높음

○ 20시간 유아교육 서비스(20 Hours ECE)

- 교육부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교사주도의 서비스인 유치원, 교육보육센터, 가정기반센터, 코헨가 레오를 이용하는 3~5세 유아들에게 하루 6시간 이내, 주당 최고 20시간까지의 무상교육 시간을 지원함
- 무상교육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이용시간 10시간까지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금의 기준에 따라 (2세 이상에 대한 시간당 지원액이) 기관에 지원됨. 20시간 무상교육 이상 초과로 이용할 경우의 부모부담 이용료는 기관에 따라 다르고, 두 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20시간 무상교육 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서도 초과 이용시간에 대한 이용료가 달라짐

우리 유치원에서 20시간의 무상교육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4(뉴질랜드 달러로 \$1는 약 800원)이지만, 다른 기관(예를 들어 교육보육센터)에서 20시간의 무상교육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시간당 \$5.65입니다. 우리 유치원과 다른 기관에서 각각 10시간의 무상교육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9)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https://education.govt.nz/early-childhood/funding-and-data/funding-handbooks/ece-funding-handbook/>

는, 우리 유치원에서 초과로 이용하는 시간당 \$5.25 정도 부과합니다. (유치원 연합회 소속 교육서비스 매니저)

- 일부 유치원에서는 2세 유아에게도 주 20시간의 무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3세 이후에도 계속 재원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어느 유치원 경우는 2세가 20명에 달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기도 함
-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ECE Equity Funding)
 - 뉴질랜드 정부는 여러 집단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유아교육에의 참여 장벽을 제거하며, 아동의 교육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장애유아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아(마오리, 폴리네시아인), 영어 이외의 언어문화권, 고립된 지역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함
 - 유아교육보육서비스에 재원중인 아동들의 등록된 주소지를 기반으로 아동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관에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함
 -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예: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구는 구입할 수 있으니 교사 휴게실을 꾸미는 데는 사용 불가함), 기금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음(예를 들어, 보조교사 고용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당 최대 20시간으로 제한됨)
- 특정대상을 위한 표적 기금(Targeted Funding)
 - 2018년부터 시작된 지원으로 형평성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는 거의 받고 있음. 기관에서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시스템 안에 포함된 가족의 아동들이 재원 하는 기관으로 자격이 되는 경우에 정부에서 기관에 기금을 제공함
 - 기금 사용 기준에서 허락하는 3-4개의 항목 안에서 기관은 자체적으로 기금 사용 계획을 세워 실행함(유아들의 이용료 지원이나 주당 최대 20시간 이내의 보조교사 채용 등)
 - 형평성기금이나 표적 기금을 사용하여 보조교사를 고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로 고용함. 기금의 지속적 지원 여부에 따라 다음 학기 보조교사 채용여부를 결정함
- 고립된 지역의 기관을 위한 연간 추가 지원금(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
 - 고립된 지역에 있는 작은 인가 서비스를 위한 지원금으로 고립된 지역 지수 1.65 이상이고 연간 정부 지원금이 뉴질랜드 \$5,000에서 \$19,999.99에 해당하는 기관
 - 교육부에서는 각 기관의 고립 지역 지수와 6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영유아교육보육 지원금과 20시간 유아교육 서비스,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의 총액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기관에는 7월에 연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함(개별기관에서는 신청할 필요 없음)
 - 정부지원금이 \$5,000에서 \$10,000.99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연 \$15,000를 추가 지원하고, \$10,001에서 \$19,999.99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연 \$20,000를 추가 지원함

4)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한 명에게 시간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아동연령과 시설유형, 운영 형태, 교사의 자격수준에 따라 달라짐
- 교사주도형 기관의 경우 아동 한 명에게 지원되는 시간 당 지원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즉 교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는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 기관의 등록교사 비율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액을 받음. 2011년 2월 1일 이후 최고지원액 구간은 등록교사 비율 80%+임
- 보조금은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지급되며, 한 서비스제공자가 여러 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개별기관에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함(예를 들어, 유치원연합회가 여러 유치원을 운영할 경우)

<표IV-3> 뉴질랜드 교육보육센터 종일반(All day)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관 내 등록교 사비율	2010.10.1이후			2014.7.1이후			2019.1.1이후			2020.1.1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 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 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 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 시간 ECE
100%	13.35	8.08	12.73	N/A	N/A	N/A	N/A	N/A	N/A	N/A	N/A	N/A
80-99%	12.54	7.13	11.78	N/A	N/A	N/A	N/A	N/A	N/A	N/A	N/A	N/A
80%+	N/A	N/A	N/A	12.12	6.70	11.43	12.31	6.81	11.61	2.53	6.93	11.82
50-79%	10.68	5.63	10.14	10.97	5.78	10.41	11.15	5.87	10.58	11.35	5.98	10.77
25-49%	8.62	4.49	8.91	8.86	4.61	9.15	9.00	4.68	9.30	9.16	4.76	9.47
0-24%	7.37	3.73	8.13	7.57	3.83	8.34	7.69	3.89	8.47	7.83	3.96	8.62

자료: 김은설 외(2010).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p29 <표 5>.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All day teacher-led centre based services를 재구성함

<표IV-4> 뉴질랜드 교육보육센터 반일반(Sessional)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관 내 등록교사 비율	2014.7.1. 이후			2019.1.1. 이후			2020.1.1. 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80% +	10.77	4.88	6.29	10.94	4.96	6.39	11.14	5.05	6.51
50-79%	9.79	4.37	5.72	9.95	4.44	5.81	10.13	4.52	5.91
25-49%	7.98	3.75	5.05	8.11	3.81	5.13	8.26	3.88	5.22
0-24%	6.95	3.38	4.67	7.06	3.43	4.74	7.19	3.49	4.83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Sessional teacher-led centre based services

<표IV-5> 뉴질랜드 유치원 종일반/반일반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관 내 등록교사 비율	2017.5.1. 이후			2019.1.1. 이후			2020.1.1. 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80% +	12.83	7.15	12.10	13.04	7.26	12.29	13.27	7.39	12.51
50-79%	11.60	6.15	11.01	11.79	6.25	11.19	12.00	6.36	11.39
25-49%	9.32	4.88	9.63	9.47	4.96	9.78	9.64	5.05	9.96
0-24%	7.93	4.03	8.75	8.06	4.09	8.89	8.21	4.16	9.05
반일반 100%	13.59	6.82	8.16	13.81	6.93	8.29	14.06	7.05	8.44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All day and sessional Kindergartens

<표IV-6> 뉴질랜드 가정기반센터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관 내 교사유형	2014.7.1이후			2019.1.1이후			2020.1.1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우수	8.31	4.45	9.27	8.44	4.52	9.42	8.59	4.60	9.59
보통	7.28	3.94	8.76	7.28	3.94	8.76	7.28	3.94	8.76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Teacher-led home-based ECE services

<표IV-7> 뉴질랜드 코항가 레오(교사주도기관 제외)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관 내 교사유형	2014.7.1이후			2019.1.1이후			2020.1.1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우수	8.84	4.44	8.30	8.98	4.51	8.43	11.15	6.60	10.59
보통	7.74	3.90	7.82	7.86	3.96	7.95	10.51	6.04	10.10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Kōhanga Reo

<표IV-8> 뉴질랜드 부모주도 놀이센터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관 내 교사유형	2014.7.1이후			2019.1.1이후			2020.1.1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우수	8.84	4.44	5.52	8.98	4.51	5.61	9.14	4.59	5.71
보통	7.74	3.90	4.96	7.86	3.96	5.04	8.00	4.03	5.13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Playcentre

<표IV-9> 뉴질랜드 부모주도 인가 놀이집단과 인가면제서비스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2010.10.1이후			2014.7.1이후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2세 미만	2세 이상	20시간 ECE
놀이집단	1.40	1.40	N/A	1.51	1.51	N/A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Certificated playgroups and licence-exempt services

<표IV-10> 뉴질랜드 형평성기금의 한 아동 당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2013.7.1이후	2019.7.1이후	2020.1.1이후
형평성기금 A: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시간 당 지원액)			
EQI 1	0.97	1.01	1.03
EQI 2	0.77	0.79	0.80
EQI 3	0.42	0.44	0.45
EQI 4	0.21	0.22	0.22
형평성기금 B: 특수한 요구를 지니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동(시간 당 지원액)			
EQI 1	0.47	0.47	0.48
EQI 2	0.30	0.30	0.31
EQI 3	0.21	0.21	0.21
EQI 4	0.19	0.19	0.19
형평성기금 C: 영어 이외의 언어나 문화를 지닌 아동: 수화 포함(월 지원액)			
언어			
형평성기금 D: 고립된 지역(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월 지원액)			
1.65-1.83	99.95	99.95	101.75
1.84-2.53	150.52	150.52	153.23
2.54 이상	290.45	290.45	295.68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Equity Funding

<표IV-11> 뉴질랜드 특정대상을 위한 표적 기금의 시간당 한 아동에 대한 지원액

단위: 뉴질랜드 달러

	2018.1.1이후	2020.1.1이후
해당기관	0.34	0.35

자료: EDUCATION.govt.nz ece-funding-handbook의 부록1. funding rates: Targeted Funding

다.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유형

-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는 교사주도형과 부모주도형 그리고 마오리주도형의 코항가 레오로 구분할 수 있음
- 교사주도형은 아동을 교육·보육하는 성인의 50% 이상이 자격교사여야 하고, 교육부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함. 부모주도형과 코항가 레오는 부모, 마오리족 성인이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 유형에서는 부모와 마오리족의 훈련과 참여가 중요함
- 뉴질랜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유아교육보육서비스는 교육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최윤경 외, 2016)

1) 교사주도형 서비스

- 유치원(Kindergarten)
 - 유치원은 3~4세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2~5세 사이의 유아가 이용함. 6세 되기 전날 까지 이용가능하나 많은 경우 5세가 되면 입학함
 - 많은 유치원이 학교일정에 맞춰 운영하며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누기도 하지만 일부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일정한 날만 운영하기도 함
 - 운영시간은 보통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30분이나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면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토요일에도 열 수 있음
 - 등원시간은 자유이며 보통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시간 반 이용함
 - 학교 시간에만 운영하므로 일하는 부모에게 적당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장점은 이용료가 낮으며 이용시간이나 요일을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임. 최소 4시간 이상은 등록해야 하며, 필수는 아니지만 유아의 적응을 위해 최소 하루 이상은 등원할 것을 장려함. 공간적인 측면에서 오래된 유치원은 규정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 지어지는 센터는 규정에 딱 맞게 지어지는 경향이 있음(유치원협회 교육서비스 매니저)
 - 유치원은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법인인 유치원연합회에 속해 관리됨, 유치원연합회는 한 지역 내에 여러 곳이 있으며, 비영리단체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모든 비영리단체는 이사진을 구성해야 하며, 협회 소속의 직원들이 협회 산하 모든 유치원들의 운영을 맡아서 함(Garvis, 2018)
 - 뉴질랜드에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부나 지방정부 소속의 공립유치원은 없음. 가장 신생인

유치원연합회도 40년일 정도인 뉴질랜드에서 지난 40-8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면, 교육부에서도 땅을 사거나 지방정부에 속한 땅을 제공하고 약간의 재정을 지원함. 당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해 유치원을 짓고, 정부로부터 아주 낮은 금액에 임대해 운영해 옴

당시에는 약 \$50,000정도면 유치원을 지었어요. 와이카토유치원연합회도 29개 유치원 중 16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지은 유치원을 정부로부터 일 년에 \$10로 임대해 사용하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치원연합회의 목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을 남기고 그를 투자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연합회장)

○ 교육보육센터(Education and Care Centre)

- 교육보육센터는 출생부터 5세의 취학 전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혼합연령반이나 영아반 또는 2~5세 반으로 운영되기도 함
- 종일제로 운영되거나 오전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특정한 언어와 문화에 중점을 두거나, 슈타이너나 몬테소리 같은 다양한 철학적 기반의 교수학습을 실시하기도 함
-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이지만, 부모의 요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함
- 교육보육센터는 개인이나,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집단, 교직원연합(Organization for Employees with Young Children), 영리 목적의 기업에서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Tyler-Merrick et al., 2018)

○ 유치원과 교육보육센터의 비교

<표IV-12> 뉴질랜드 유치원과 교육보육센터의 비교

	유치원	교육보육센터	비고
연령대	- 2~5세 - 많은 유치원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한 집단에 2~5세가 함께 있기도 함	- 0~5세	- 유치원 혼합연령반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복합적임
운영 형태	- 보다 융통성 있는 운영 - 점심을 먹는 아동 경우 가정에서 준비해 옴	- 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낮잠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교사들의 교대시간 등으로 인해 유치원보다 훨씬 규칙적임	

	유치원	교육보육센터	비고
운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나이든 유아들은 주 5일 오전에 4시간이나 4시간 반 등원하고/ 어린 유아는 화, 수, 목요일 오후에만 등원했음 -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는 교사들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했음 - 취업부모들의 증가와 함께 유아들의 보육센터 취원율이 증가하며 유치원 이용 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도 운영시간을 늘리고 이용시간(종일제, 시간제)이나 요일도 융통성 있게 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종일반 등록을 기본으로 하며, 반일만 이용해도 종일반 이용료를 내야하고 최소 이틀 이상을 등록해야 함 - 공식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5시 30분이지만, 부모의 요청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함(기차역 근처의 센터는 기차로 통근하는 부모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운영시간을 고수하는 유치원도 있으나 그런 협회들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음 - 최근 유치원연합회에서 별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교육보육센터와 가정기반센터를 운영하기도 함 - 유치원과 센터 간에 운영시간 상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교사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채용 시 개인별로 연봉계약을 협상하지만, 정부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자격요건에 따른 최저급여가 정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마다 교사와 개인별 연봉 계약 체결로 완전히 다름. - 자격교사 비율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교사의 최저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센터보다 더 많은 보수를 제 공함
계획과 준비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수석교사 10-12시간, 교사 8-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육센터는 훨씬 적은 시간을 제 공함

출처: 유치원과 센터 교사의 인터뷰를 기초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자격과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누구나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과 다른 유아기관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아주 강력한 정부의 압력이 있음

유치원과 센터 간에 시설 유형에 따른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유치원과의 보수나 업무 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센터 근무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현 상황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 분개한 교사들이 현재 많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교사가 동일한 보수와 동일한 업무 조건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임. 그 이유 중에는 정부에서 전적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센터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있지요. (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육서비스 매니저)

○ 유치원과 교육보육센터에 대한 부모의 기대 차이

- 한 10년 전만 해도 유치원과 보육센터는 아주 상이했음
- 두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치원에서 2세부터 받기 시작함
- 혼합연령반의 나이 차이(2~4세 한 공간)가 많이 나게 됨에 따라 유치원 교사들의 부담이 높아짐
- 유치원에서도 기저귀를 갈아주지만, 여전히 배변훈련은 마쳐야 유치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음

부모들의 요구 수준은 유치원보다 보육센터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시간도 더 길기 때문에 기대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에 대한 기대도 센터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 대한 기대 수준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유치원은 보다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지요. 보육센터와 유치원 간에 보육센터는 돌봄이 보다 더 중심이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어 취업부모의 경우 자녀를 보육센터에 보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유치원연합회 소속 교육서비스 매니저)

○ 가정기반센터(Home-based Centre)

- 가정기반센터는 시간제나 종일제로 운영되며, 출생부터 5세까지 4명 이하의 영유아를 교육자(Educator)의 집에서 돌보는 것을 말함. 기준이 별도로 없어 임대한 주택에서도 서비스 제공 가능함
- 교육자는 교사가 아니며 누구라도 될 수 있음. 다만 보조금 지급에 있어 “우수”(Quality: 직업학교 기준으로 3등급 자격 이수 혹은 4등급 수준에서 15학점 이상 이수 등)와 “보통”(Standard)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지원됨
- 교육자는 단독으로는 서비스제공이 어렵고 가정기반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통은 자신의 집에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교육부가 교육자의 등급과 아동의 이용시간에 기반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면 서비스제공자는 교육자가 맡은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함

본 협회에서 정한 가정기반서비스의 시간당 최소 이용료는 5달러이며, 교육자는 자신의 이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교육자 경우 7달러를 요구하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시간 당 50센트를 행정비용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교육자가 갖지요. (가정기반서비스제공자협회장)

- 가정기반서비스제공자는 코디네이터(유아교사 자격을 갖춘 일종의 방문교사)를 통해 교육자를 지원해야 함. 매달 전화나 직접 방문 등 교육자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아동과 교육자에 대해 파악하고, 교육과정 계획, 규정 준수, 안전 등에 관해 점검하고 지원

을 제공해야 함

- 가정기반센터와 관련해 현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교육부 공무원)
- 교육자는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없지만(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음), 조부모나 친인척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인가된 가정기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른 집에 거주하는 일가의 아동을 돌볼 수 있음. 즉 할머니와 손자녀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가정기반센터를 운영하며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교육자로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가정의 아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다른 집(바로 옆집이라도)에 산다면 손자녀만을 돌보면서도 가정기반센터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가정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보다는 점차 돌봄에 치중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부에서 가정기반서비스의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짐
- ERO보고서에 의하면 가정기반서비스 중에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나 아동관찰을 실시하는 아주 좋은 곳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가정기반서비스에서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
- 가정기반서비스제공자
- 개인이나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집단, 영리 목적의 기업이 가정기반서비스 제공자가 되어 가정기반센터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음(Tyler-Merrick et al., 2018)
- 서비스제공자가 교육 자격을 지닐 필요는 없으나 자격을 가진 코디네이터(방문교사)가 반드시 필요함. 필요하면 교육부가 지원을 제공함
- 서비스제공자는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정기반서비스를 제공할 가정을 확보함. 교육자는 물론 가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아동범죄기록을 점검함(아동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에게 접근 불가함. 방문교사를 통해 가정기반센터가 인가 규정(교사아동 비율, 건물이나 설비, 울타리 등 안전 사항, 교육 제공 등에 관한 인가서류)에 맞도록 확실하게 준비함
- 서비스제공자로서 교육부에 임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동일한 지역사무소 내의)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제공 가정(아직 이용 아동 없음)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두 가정 이상이어야 교육부에서 방문해 인가 여부를 평가하고 사정함)
- 임시면허를 받은 후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네트워크에 보다 많은 가정기반센터를 연계할 수 있음
- 가정기반센터의 수에는 제한 없으며, 한 가정 당 4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아동의 최소 실내 활동 영역과 안전한 수면장소, 기저귀교환 장소 등을 고려한 아동 수)
- 서비스제공자는 (자격이 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아니면) 방문교사를 통해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교육자의 가정기반센터를 방문지원해야 함
- 면허 하나당 150명 아동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아동 50명당 방문교사 1명이 필요함
- 서비스제공자의 가정기반서비스 네트워크 확장이나 교육자 확보 등에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고 재정지원과 규정에 맞는 서비스 운영에만 관여함
- 인가규정 충족 시 최대 12개월 유효한 임시인가를 내준 후 ERO가 방문해 인가규정 충족 여부를 점검. (뉴질랜드 전역은 아니지만, 와이카토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영유아

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임시인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서 방문해 전 반적인 운영 상태를 규정에 따라 점검한 후 정식인가를 내줄지 결정함

- 인가 후에는 방문교사가 가정기반센터의 교육적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자를 지원할 책무를 지님
- 교육부담당자는 언제든지 필요가 있을 경우 가정기반센터에 방문해 인가규정(누구나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나 규정 이상의 수준을 강제할 수는 없음

가정기반서비스의 경우 다른 서비스 유형보다 재정적 지원이 적어 책무성에 대해 강조되지 않아왔고, 신생아들에게는 꼭 필요한 두 번째 집이기도 했으나 교육부 산하에 있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평가를 통해 보다 책무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ERO 담당자)

가정기반센터는 교육적 성과보다는 돌봄이 주가 되므로 사회복지부 산하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공무원)

○ 통신학교(Correspondence School)

-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3~5세 유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통신학교의 유아교사들은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부모, 마오리족, 보육자들과 함께 일함. 또한 책, 퍼즐, 게임, 미술재료 등을 빌려주기도 함 (Tyler-Merrick et al., 2018)

2) 마오리주도형 서비스

○ 코항가 레오(Kōhanga Reo)

- 출생부터 5세에 이르기까지의 마오리족 아동에게 마오리 이중언어 몰입교육과 마오리족의 의사결정, 관리, 책임 등을 교육하며, 책임, 건강과 안녕을 목표로 함
- 마오리족 원로들이 관할하고 마오리족 언어로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보육센터로 교사와 관리자는 모두 영유아들의 부모나 부족 원로들임
- 전국 코항가 레오 기금에 의해 관리하는 지역기반의 비영리협회에 소속되어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을 받음(Tyler-Merrick et al., 2018)

3) 부모주도형 서비스

○ 놀이센터(Playcentre)

- 출생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회원가족에 의해 협동적으로 운영됨
- 놀이센터는 뉴질랜드 놀이센터 연맹이 관리하는 지역기반의 비영리협회에 소속되어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을 받음

○ 놀이집단(Playgroup)

- 부모나 마오리족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기반의 집단으로, 4시간 이하로 구성되고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짐
- 놀이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참석 아동의 반 이상이 한 명의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함. 놀이집단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을 갖추 수는 있지만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
- 놀이집단을 운영하는 부모와 마오리족은 교육부로부터 정보와 지원, 그리고 훈련을 받음
- '마오리족 놀이집단'은 마오리 언어로 학습하는 것을 격려하며, '태평양제도 놀이그룹'은 사모아, 통가, 쿡제도, 피지 등을 포함하는 태평양제도 언어와 문화 내에 있음

라. 유아교육보육서비스 현황

○ 인가 서비스 유형별 기관 수

- 2017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총 5,526개임
- 이 중 인가된 기관은 4,599개로 2000년의 3,401개 (2010년의 4,321개)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정기반센터와 교육보육센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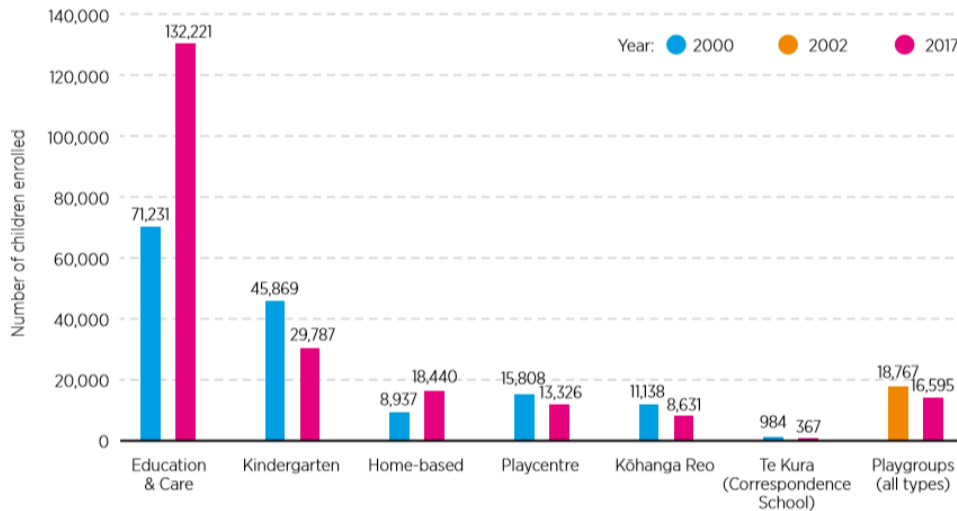
<표IV-13> 뉴질랜드 인가 서비스 유형별 기관 수(2000, 2017)

	2000	2017
Licensed services		
Casual Education & Care	45	10
Education & Care	1,476	2,558
Home-based	180	476
Hospital-based	no data	22
Kindergarten	600	658
Kōhanga Reo	583	454
Playcentre	517	421
Total licensed services	3,401	4,599
Certificated services		
Playgroups	773	927
Total of all service types	4,174	5,526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19). Strategic plan for early learning 2019-29: Draft for consultation. p14. Table 1.

○ 인가 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 수

- 2017년 인가 서비스 이용 총 아동 수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 수를 보면 교육보육센터와 가정기반센터 이용 아동이 급증하고,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 뉴질랜드 인가 서비스 유형별 이용 아동 수(2000년, 2017년)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19). Strategic plan for early learning 2019-29: Draft for consultation. p14. Figure 1: The number of children in early learning services by type in 2000 and 2007

○ 서비스 유형별 현재 상황

- 교육보육센터와 가정기반센터는 늘어나고 유치원과 코항가 레오, 놀이센터는 줄어듦
- 뉴질랜드의 많은 여성이 일함을 고려할 때 유치원의 운영시간이나 대상 아동 연령(3세 이상이나, 2세부터 받는 유치원도 있음)은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유치원 수는 점차 줄어들고 많은 유치원이 존폐 위기에 몰림. 유치원을 새로 짓지 않음
- 이에 대해 비영리법인인 유치원협회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에도 잘못된 운영과 인력관리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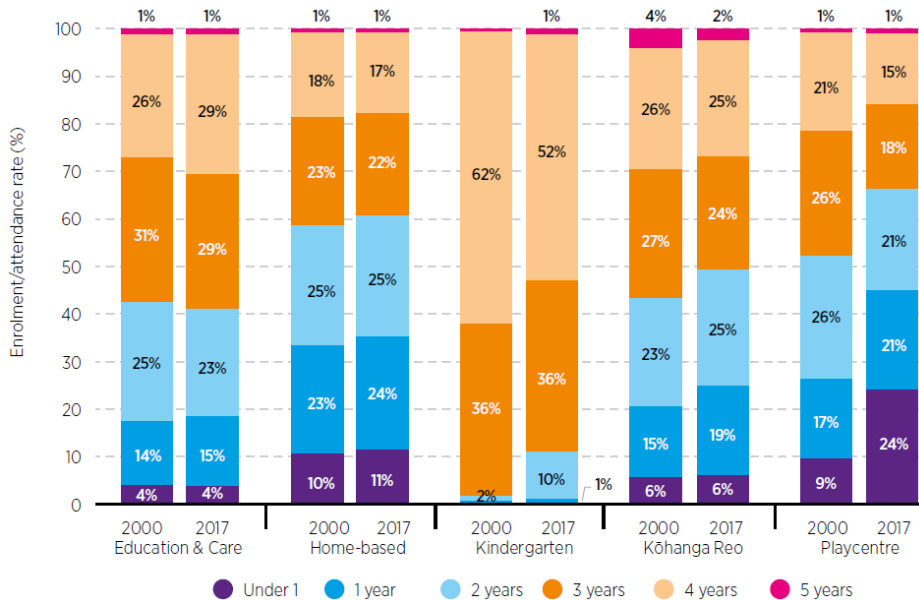
해밀턴에서만 4개의 비영리법인이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유치원연합회장)

- 자유시장경제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비영리단체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데 오클랜드를 포함해서 뉴질랜드의 여러 유치원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하루에 몇 시간만 운영하고, 두 번의 휴식시간 동안 문을 닫으며, 5월과 7월에 2주간 문을 닫고, 10월과 1월에 문을 닫음
- 뉴질랜드에서는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에 비례해 이윤이 발생하므로 문을 닫는 동안은 수익이 없음. 정부에서 3~4세 경우 주 20시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그 이상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시간 당 이용료를 지불함. 부모는 시간 당 이용료를 지불하지만 교사의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되며 아동의 수와 상관 없음
- 교사는 정규직이므로 경쟁의 심화로 아동 수가 15-20명으로 줄더라도 급여는 계약대로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 기관의 개원과 폐원을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아동의 수와 직원 비용임.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전통적인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지만 교사나 협회에서 거부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음

○ 인가 서비스 유형별 등록/이용 아동 연령별 비율

- 2010년과 2017년 모두 아동연령에 따라 이용하는 인가 서비스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세 이하의 경우 교육보육센터의 40%, 가정기반센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데 이는 두 서비스 유형 기관의 증가세에 일조한 것으로 보임
- 유치원의 경우 2010년에는 2%에 불과하였던 2세의 이용비율이 2017년 10%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보육센터와 경쟁하기 위해 2세부터 받는 유치원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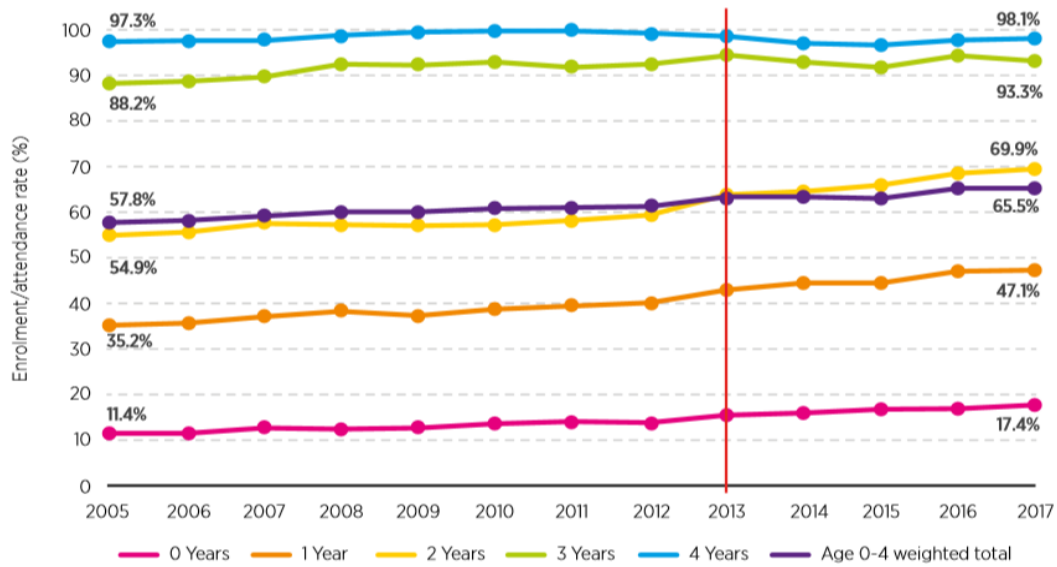


<그림 IV-3> 인가 서비스 유형별 등록/이용 아동 연령별 비율(2000, 2017)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19). Strategic plan for early learning 2019-29: Draft for consultation. p15. Figure 2: Percentage of enrolments/attendances of each year of age in licensed services, by service type, 2000 and 2007

○ 연령별 인가 서비스 등록/이용 비율

- 0세의 인가 서비스 등록/이용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17년 17.4%로 증가하고 1세는 2010년 35.2%에서 2017년 47.1%로 증가하고, 2세는 2010년 54.9%에서 2017년 69.9%로 증가하고, 3세는 2010년 88.2%에서 2017년 93.3%로 증가하고, 4세는 2010년 97.3%에서 2017년 98.1%로 증가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함
- 0~4세의 인가 서비스 등록/이용 비율은 2010년 57.8%에서 2017년 65.5%로 증가함



<그림IV-4> 뉴질랜드 연령별 인가 서비스 등록/이용 비율(2005-2017)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19). Strategic plan for early learning 2019-29: Draft for consultation. p15. Figure 3: Enrolments/ attendances rates by age of child 2005-2017 as a proportion of the age cohort in the population¹⁰⁾

3. 교사자격 및 교사양성¹¹⁾

가. 교사 자격 체계

- 뉴질랜드에서는 교사주도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의 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초기교사교육(Initial Teacher Education: ITE)을 받아야 하며 이는 유아교사는 물론 초중등교사와 마오리 원주민 지역 중고등학교의 교사까지 모두 해당됨
- 1980년대 후반에 교사 자격을 통합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가능하며, 많은 기관에서 교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2001년 입안된 교육기준법에 의해 2002년 설립된 교사위원회(Teachers Council)에서 교사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심사하여 인가하는 관리적 기능은 물론 교사의 자격증 등록 및 발급 등의 교사자격의 질 관리도 수행하고 있음. 뉴질랜드에서는 교사자격증이 영구적이 아니라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음
- 뉴질랜드에서 등록 교사는 교직원위원회(Teaching Council)¹²⁾에서 승인한 초기교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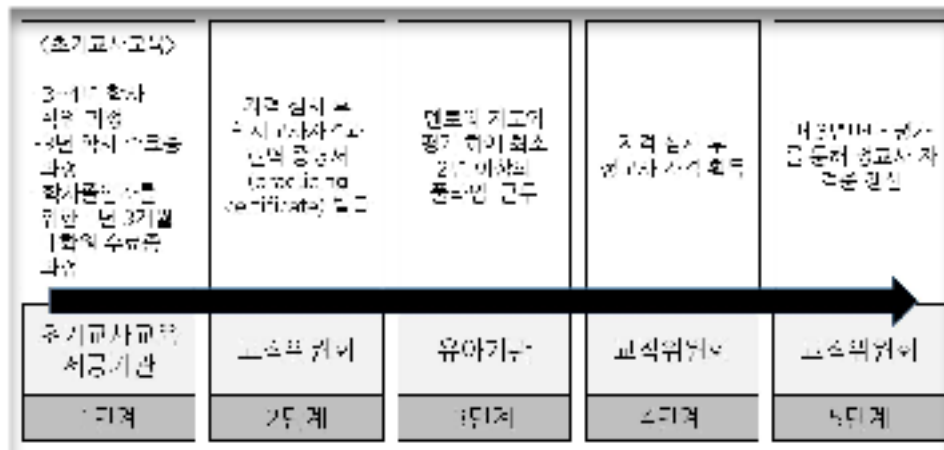
10) 2013년에 자료수집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2013년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직접비교할 수 없음

11) <https://teachingcouncil.nz/>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12) 명칭이 교사위원회(Teachers Council)에서 2015년 2월 12일 교육위원회(Education Council)을 거쳐 2018년 9월 29일 교직원위원회(Teaching Council)로 변경됨

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교직원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유효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의미함

-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졸업자 그리고 이직자는 초기교사교육 제공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교육을 통해 학위(degree)나 수료증(diploma)을 취득한 후 교직원위원회에 신청하면 범죄경력이나 건강, 인성을 점검하여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6년 동안 유효한 임시교사자격증(Provisional practising certificate)을 발급받음
- 임시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교사주도형의 인가된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관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멘토의 지도하에 정해진 평가과정을 거친 후 교직원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3년 동안 유효한 정교사자격증(Full practising certificate)을 발급받음
- 정교사자격증은 매 3년마다 평가과정을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함



<그림 IV-5> 뉴질랜드 정교사자격 체계

출처: <https://teachingcouncil.nz/content/beginning-teachers>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나. 교사양성 단계

1) 초기교사교육 제공기관

○ 초기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 초기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대학(University), 기술대학(Institute of Technology), 과학기술전문학교(Polytechnic), 고등전문학교(Tertiary college/institute) 등 다양함
- 유아교육 학위과정이나 학사 수준 혹은 대학원 수준의 수료증 과정을 통해 초기교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됨
- 풀타임 학업은 물론 파트타임 학업과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함.
- 뉴질랜드에서는 현장에서의 실습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기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초기교사교육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마침 때까지 거의 매 학기 현장실습을 해야 함. 예를 들어, 3년 풀타임 과정의 경우 과정의 처음과 마지막 학기

인 1학년 1학기과 3학년 2학기에는 각 3주간의 교생실습을 하고 그 사이인 1학년 2학기에서 3학년 2학기까지는 각 4주의 교생실습을 해야 함

- Teachnz라는 사이트(<https://www.teachnz.govt.nz>)를 통해 교직원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다양한 교사양성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교사훈련을 받는 동안의 재정적 지원이나 실습교사로 일하는 것과 학업 병행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
- Teachnz에서 다음 그림처럼 뉴질랜드의 지도를 보고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그 지역 안에서 초기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고 관련 기관의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가 제공됨

Do you have a preferred study location?

Yes No

Select a region below:



<그림 IV-6> 뉴질랜드 교사양성기관 검색서비스

○ 대학에서의 초기교사교육의 사례¹³⁾

- 와이카토 대학에서는 3년의 유아교육 학사 학위과정과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1년의 대학원 수료증 과정을 통해 0~6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유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교사자격을 갖추 수 있음

[와이카토 대학(The University of Waikato Faculty of Education)]

- 과정: (유아교육) 학사 학위 (Bachelor of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기간: 3년 동안 360 points 이수 (1 point는 10시간 정도의 과제 등이 요구됨)
- 수업형태: 풀타임으로 출석수업과 온라인수업 병행
- 입학: 2월 시작
- 학비: NZ\$ 6,120/년 (내국인 기준)
- 입학자격: 대학입학자격소지자, 교사적격심사 합격, 영어능력(IELTS 전 영역 7.0이상)
- 교육 목표: 0~6세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 테파리키의 모든 영역에

13) <https://www.waikato.ac.nz/study/>에서 관련된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대한 학습을 통해 이론적, 실제적 경험을 갖추

- 특징: 7개 주요 주제에 대한 통합프로그램 제공(이중문화발달, 문화적 다양성, 형평과 사회정의, 통합, 부모와 확대가족, 학교로 전이, 영아와 유아)
- 학년별 교과목

<표IV-14>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유아교육) 학사 학년별 교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필수	-교수와 학습의 개념 1 -뉴질랜드 교육적 맥락 -생애단계별 학습과 발달 -유아기 문해와 수학 -뉴질랜드에서의 교사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실제	-교수와 학습의 개념 2 -교육의 문화적 측면	-교수와 학습의 개념 2
분반 수업 스트림	-선택과목 100수준	-세계에 대한 이해와 탐색 -테파리키실제: 소속 -테파리키실제: 교수법 100 -테파리키실제: 다양한 아동 -선택과목 100 또는 200 수준	-유아교육의 당면 문제들 -사정과 평가 -테파리키실제: 변화의 주역 -선택과목 1 200 또는 300수준 -선택과목 2 200 또는 300수준
실습	-전문적 경험 1 (실습 15 points)	-전문적 경험 2 (실습 15 points)	-전문적 경험 3 (실습 30 points)

[와이카토 대학 유아교사 대학원 수료증과정 Graduate Diploma of Teaching -Early Childhood]

- 과정: (유아교육) 대학원 수료증과정(Graduate Diploma of Teaching)
- 기간: 1년 집중이수제, 153points
- 수업형태: 2번의 집중이수 출석수업을 포함한 온라인수업 가능
- 입학: 1월초 시작 (2020년)
- 입학자격: 360points 이상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 및 동등자격, 교사적격심사
- 특징: 12개 의무 papers(과목), 3 주류(마오리), 이론과 실습 및 연구, 최소 14주의 현장실습
- 학기별 교과목

<표Ⅳ-15>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유아교육) 대학원 수료증과정 교과목

여름학기	학기A	학기B
전문성과 윤리연구1 8.5p 1/13-3/1	전문적 경험1(실습) 8.5p 10/19-11/8(온라인) 5/18-5/31(온라인)	전문성과 윤리연구3 8.5p 7/13-11/8(온라인)
	전문성과 윤리 연구2 8.5p 2/10-5/17	학습자의 공동체 17p 7/13-11/8(온라인)
	문화 청취 17p 2/10-5/17	다중문해 17p 7/13-11/8(온라인)
	유아기 학습과 발달- 테파리키와 발달이론 17p 2/10-5/17	테파리키의 실제 17p 7/13-11/8(온라인)
	교육과정 내 놀이와 창의성 17p 2/10-5/17	전문적 경험 3(실습) 8.5p 1/20-3/8(온라인) 10/19-12/6(온라인)
	전문적 경험2(실습) 8.5p 10/19- 11/22 (온라인) 6/1-7/5(온라인)	

○ 과학기술전문학교(polytechnic)의 초기교사교육의 사례¹⁴⁾

- 와이카토 기술대학에서는 3년의 풀타임 또는 6년 이내 파트타임의 유아교육 학사 학위 과정을 통해 0~6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유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교사자격을 갖추 수 있음

[와이카토 기술대학(Wintec-Waikato Institute of Technology)]

- 자격: (유아교육) 학사 학위 (Bachelor of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3년의 풀타임 또는 6년 이내 파트타임
- 360 points (1 point=10시간의 과업)
- 출석수업과 온라인수업
- 입학: 2월 (정원이 있을 경우 7월에도 입학 가능)
- 학비: NZ\$ 6,531/연
- 입학자격: 20세 이하는 대학입학 자격(University Entrance)를 갖추어야 하며, 20세 이상으로 대학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그에 준하는 문해와 수학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IELTS 7.0이상 요구됨

14) <https://www.wintec.ac.nz/study-at-wintec>에서 관련된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 현장중심의 실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하루 반 수업과 인가받은 유아교육 기관에서 12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병행
-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인가받은 유아교육기관에서 1주에 최소 12시간을 유급 혹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어야 함.(자격 없이 일하다가 자격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도 많은 듯함)
- 자신이 일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현장실습도 실시해야 함(1년차: 3주, 2년차: 4주, 3년차: 5주)
- 자격과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원칙과 실제/실천 공동체/유아교육 연구 및 연구방법/건강과 웰빙/질 탐색/교사되기
- 교육과정 이수 후 학생들은 아동은 물론 성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며, 아동의 학습과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익히며 무엇을 가르칠지도 알게 됨. 학생들은 또한 리더십과 계획 및 조직 기술도 배우게 됨
- 학년별 교과목

<표IV-16> 뉴질랜드 와이카토 기술대학 (유아교육) 학사 학년별 교과목

학년	과목명 Module title	학점 Credits	수준 Level
1학년	현장-기반 연습 A	7	5
	현장-기반 연습 B	8	5
	실습 1	15	5
	원칙과 실제	15	5
	놀이의 가치	15	5
	정체성과 다양성	15	5
	실천의 공동체	15	5
	학습을 위한 학습	15	5
	유아발달	15	5
2학년	현장-기반 연습 C	7	6
	현장-기반 연습 D	8	6
	실습 2	15	6
	건강과 평안	15	6
	교육과정과 실제	15	6
	동반자 이해	15	6
	유아교육 연구 및 연구방법	15	6
	통합적 실제	15	6
	연구지도(선택)	15	7
	심화 주제(선택)	15	7
	승인된 연관 모듈 15학점	15	5, 6, 7
3학년	현장-기반 연습 E	7	7
	현장-기반 연습 F	8	7
	실습 3	30	7
	질 탐구	15	7
	교사되기	15	7
	성인학습자	15	7
	유아교육의 영향 이해	15	7

학년	과목명 Module title	학점 Credits	수준 Level
3학년	연구지도(선택)	15	7
	심화 주제(선택)	15	7
	승인된 연관 모듈 15학점	15	5, 6, 7
옵 셴	디자인 공장 1	30	7

○ 뉴질랜드 고등전문학교(Tertiary)의 초기교사교육 사례¹⁵⁾

- 뉴질랜드 고등전문학교에서는 3년의 풀타임 교사자격 과정을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뉴질랜드 전역에서 가능), 캠퍼스기반 수업(college-based)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 뉴질랜드의 여러 지역에 걸쳐 45개 정도의 민간 유아교육센터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킨더케어 러닝센터(Kindercare Learning Centres) 운영자가 1982년 자체 교사훈련을 위해 킨더케어 유아교육대학(Kindercare Early Childhood Teachers College)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첫 입학생 12명으로 시작하여 외부 센터의 교사들도 받기 시작함
- 1991년 새로이 설립된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에 의해 승인을 받았고 당시의 교사양성과정의 자격을 심사하던 교사등록위원회(Teachers Registration Board, 오늘의 교직위원회)에 의해 본 과정이 공적 기관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사 수료증 과정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음
- 1995년에는 NZQA와 교사등록위원회에 의해 민간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3년 과정의 유아교육 수료증 과정이 승인을 받음. 이는 민간교육기관에 의한 교사교육을 승인하지 않았던 교육부와 NZQA에 대해 학생들의 선택권과 차별 그리고 인권을 바탕으로 도전한 끝에 얻은 결과임
- 1997년 이름을 뉴질랜드 고등전문학교로 개명하고 NZQA에 의해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승인받음
- 2007년 유아교육 학사학위 과정을 승인받은 최초의 민간교육기관이 됨
- 2009년 NZTC 온라인교육과정을 개설해 종이기반 원격교육에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함

[뉴질랜드 고등전문학교(New Zealand Tertiary College: NZTC)]

- 자격: (유아교육) 학사 학위 (Bachelor of Teac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뉴질랜드 교직위원회(Teaching Council)와 뉴질랜드자격위원회(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NZQA)의 승인을 받은 자격임
- 유아교육 학사과정: 3년 풀타임, 360credits (기존의 학습을 통해 인정받은 학점에 따라 수학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현장실습은 총 20주이며 이중 12주는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가능함
- 학비: NZ\$ 6,021/연 (2019년)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수료증 과정은 1.33년이며 학비는 NZ \$8,071임)

15) <http://www.nztertiarycollege.ac.nz/early-childhood-education> 에서 관련된 내용을 번역 후 정리함

- 장소: 블렌디드 러닝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가능, 캠퍼스기반 수업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 캠퍼스
- 입학: 블렌디드 러닝은 상시 가능함. 캠퍼스기반 수업은 2월과 7월 가능
- 지원: 상시
- 지원 자격:
 - 프로그램 시작 한 달 안에 17세가 되어야 함. 뉴질랜드 대학입학자격 갖추고 교직원위원회에서 규정한 좋은 인성과 교사 적절성에 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 서면추천서, 경찰 조회 통과, 장애 사전 고지, 뉴질랜드 고등직업교육에서 규정한 문해, IT능력, 수학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성인지원자(20세 이상): 공식적인 고등학교 자격을 갖추지 못한 20세 이상의 경우 지원자의 직업이나 생활상의 경험과 함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고려함
- 3가지 수학방법을 통한 자격 취득
 - ① 온라인
 - 출석수업 없이 전 과정이 학교자체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짐
 - 학습자료와 참고문헌은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됨. 일과 가정 및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음
 - 교육과 평가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동료나 교수와는 온라인 토론방을 통해 상호작용함
 - ② 블렌디드 러닝(뉴질랜드 전역에서 가능)
 - 광대역 인터넷 접속을 통한 매일 학습
 - 정해진 기한 내에 과정을 마치고 (주당 15-20시간 정도의) 자기주도학습
 - 인가된 유아기관에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지도하에 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유급 혹은 무급 근무를 해야 함
 - 인가된 유아기관에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지도하에 풀타임으로 20주의 현장실습
 - 학습하는 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20시간의 지역 집중 수업에 참여해야 함. 보통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 각 10시간씩 진행함
 - 프로그램 졸업 전에 정보기술능력이 우수한 수준임을 증명해야 함
 - 뉴질랜드의 폭넓은 학습공동체에 참여해야 함
 - 학습안내서나 학습일지, 이메일이나 인터넷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원을 통합함
 -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토론방이나 이메일 그리고 단체대화방을 활성화시킴
 - ③ 캠퍼스기반 수업(College-based)은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 처치 캠퍼스에서 시행
 - 주당 20시간 이상의 강의참석
 - 정해진 기한 내에 과정을 마치고 (주당 15-20시간 정도의) 자기주도학습
 - 재직 중에 다른 유아기관에서 교직경험을 얻게 됨
 - 인가된 유아기관에서 정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지도하에 20시간의 실습을 함

<표IV-17> 뉴질랜드 고등 전문학교 (유아교육) 학사 학년별 교과목

1단계	전문적인 유아교사 되기
	유아기 통합적 발달
	유아 교수법
	문화적으로 반응적인 유아교육
	평가, 계획 그리고 교수법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
	현장실습 1(4주)
2단계	언어, 문해, 창의적 예술
	영아기와 걸음마기
	수학, 과학, 기술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 성장하는 교사
	와이탕기 조약에 기반한 유아교육
	현장실습 2(4주 + 4주)
3단계	교육과정 접근법
	지도자로서의 교사
	통합적 유아교육
	학습을 위한 의도적 교수법
	탐구 교수법
	윤리적 교사
	현장실습 3(4주 + 4주)

2) 초기교사교육 제공기관 인증 및 관리

○ 교직원위원회(Teaching Council)

- 초기교사교육 제공기관¹⁶⁾은 교직원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를 받음. 기관유형에 따라 뉴질랜드자격증위원회(NZQA) 규정 역시 준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교직원위원회는 “교육 직업 표준(Standards for the Teaching Profession: the Standard 표준)”¹⁷⁾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초기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사들은 누가 교직에 들어오고 남아있을 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협력 하에 개발됨
- 초기교사교육 제공기관은 “표준”에 맞게 자체 교사교육과정을 (지지적인 환경 안에서)

16) 유아교사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교사교육 제공기관은 모두 25개이며 이 곳에서 156개의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80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https://teachingcouncil.nz/content/initial-teacher-education-providers>

17) 기존의 졸업교사표준(Graduating Teacher Standards)이 2019. 7.1일자로 대체됨.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하는 지를 점검받음

- 교직원위원회에서 2019년 4월 10일 새로운 “초기교사교육 프로그램 승인, 점검, 평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표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틀과 예시가 부록으로 제시됨. 모든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뉴질랜드 교육 직업 표준

<표IV-18> 뉴질랜드 교육 직업 표준

전문적 지식	
표준 1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지 안다
표준 2	교사는 학습자와 학습자가 어떻게 배우는지 안다
표준 3	교사는 환경적 요인이 교수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
전문적 실천	
표준 4	교사는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교수와 학습 환경을 계획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을 사용한다
표준 5	교사는 증거에 기반하여 학습을 증진시킨다
전문적 가치와 관계	
표준 6	교사는 학습자와 학습공동체 일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
표준 7	교사는 자신의 직업에 헌신된 일원이다.

출처: <https://teachingcouncil.nz/sites/default/files/gts-poster.pdf>

3) 임시교사에서 정교사가 되기 위한 2년의 과정

○ 임시교사 자격 및 실무자격증 발급

- 초기교사교육을 마친 후 교직원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임시교사 증명과 함께 실무자격증(Practicing Certificate)를 발급해 줌. 이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그리고 인성을 갖추고 있음을 공인해주는 것임

○ 현장에서 일하면서 멘토링 받음

- 임시교사 증명을 획득한 후 정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유아기관에 취직함
- 일반적인 교육체계에 속하며, 반일제 이상의 근무시간이 보장되고, “교사 직업 표준”에 따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함
- 고용조건에 “교사 직업 표준”을 고려한 평가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임시자격교사를 위한 “지도와 멘토링, 멘토에 관한 지침서”에 따른 지도와 멘토링이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지, 이를 통해 “교사 직업 표준”에 따른 성취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함

- 정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이전 여러 기관에서의 멘토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6주 미만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임시자격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학습을 지원해야 함
- 임시자격 획득 후 최장 6년 이내에 정교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교사재교육(Teacher Education Refresh: TER) 이수를 통해 임시자격증을 연장해야 함
- 멘토 교사는 경험이 풍부한 정교사로, 임시자격교사가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의 실재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 2년에 걸쳐 정교사의 자격을 갖춰가는 과정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임시자격교사와 멘토교사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에 의해 수집되며, 이를 기반으로 지도자는 임시자격교사가 “교사 직업 표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
- 뉴질랜드의 교직 역사에서 멘토링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도와 멘토링, 멘토에 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적인 단위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멘토 교사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멘토링 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정교사 자격 신청

- 정교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최소 풀타임교사의 절반 이상의 시간(2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함
 -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함(6주 미만의 교직은 인정되지 않음)
 - 일반적인 교육체계 안에서 교사로 근무해야 함(보조교사나 자원봉사는 해당되지 않음)
 - 정교사자격을 지닌 멘토 교사에 의해 최소 2년 이상 공식적인 지도와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현재 유효한 실무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최근에 만족스러운 교직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함

4) 정교사 자격 관련 규정

○ 교사위원회 시기

- 2015년 이전 교사위원회(Teachers Council) 당시에는 교사 등록은 3가지 유형 중 하나임: 임시교사, 정교사, 혹은 확인부조건교사
- 3년 유효기간의 실무자격증(Practising Certificate)는 교사가 등록을 신청할 때 동시에 발급됨
- 경력교사들 중 더 이상 교직에 근무하지 않아 실무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정교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종종 최근의 교직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확인부조건교사” 자격증을 신청함. 이를 유지하려면 매 3년마다 “확인부조건교사”와 실무자격증을 재신청해야 함

<표IV-19> 뉴질랜드 교사위원회의 등록증 유형, 실무자격증과 유효기간(2015년 이전)

등록증 유형	실무자격증	등록증 유효기간	비고
임시자격 교사	3년 유효	실무자격증 만료 후 2-3년 후	- 최근에 자격을 취득했거나, 멘토링 과정을 진행 중이거나, “등록교사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
정교사	3년 유효	실무자격증 만료 후 5년 후	- 현직에 있으면서 최근 “등록교사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
확인부 조건교사	3년 유효	실무자격증 만료 시	- 경력교사이나 적법한 이유로 인해 최근 “등록교사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

출처: <https://teachingcouncil.nz/registration-policy>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 교육위원회 시기

- 2015년 교사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바뀌면서 한번 등록된 교사는 등록증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평생 등록 교사로 남게 됨
- 등록증의 유형(임시교사, 정교사, 확인부조건교사)에 대한 분류는 이제 실무자격증에 적용됨. 1989년의 교육법(2015년 갱신)에 의하면 실무자격증은 최대 3년까지 유효한데 추후 유형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음(<표IV-20>)
- 확인부조건교사는 실무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 “교육 직업 표준”에 따라 의미 있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직에 근무해야 함
 -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함(6주 미만의 교직은 인정되지 않음)
 - 일반적인 교육체계 안에서 교사로 근무해야 함
 -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도와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 직업 표준”에 따라 멘토를 받아야 함

<표IV-20> 뉴질랜드 교육위원회의 등록증 유형, 실무자격증과 유효기간(2015년 후)

등록 상황		등록증 유효기간
등록		만료되지 않음
실무자격증 유형	임시교사	3년
	정교사	3년
	확인부조건교사	3년

출처: <https://teachingcouncil.nz/registration-policy>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5) 정교사 자격 갱신

○ 교사 등록과 실무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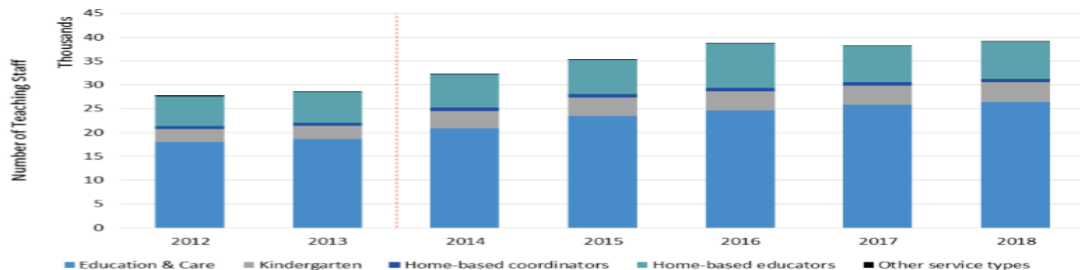
- 교직원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등록을 실시하여, 개별 교사의 등록 여부는 물론 실무자격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정교사로서의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되지만 실무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교사는 인성이나 적절한 자격요건, 경찰에 의한 범죄사실 조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함
- 실무자격증은 특정 상황에서 취소도 가능함. 교사의 역량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이 조사결과 밝혀질 경우 실무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음. 징계재판소의 명령이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위법행위로 인해 취소가 될 경우는 등록도 취소될 수 있음
- 교사의 등록이 취소되면 실무자격증도 같이 취소되거나 등록과 실무자격증 모두 다시 신청이 가능함

4. 교직원

가. 인가 서비스 유형별 교직원

○ 인가 서비스 유형별 교직원 수

-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는 39,118명으로 2017년의 38,186에 비해 증가하였음. 다음의 표는 2012년에서 2018년 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른 교직원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아교육보육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전반적으로 시설의 수가 감소하는 중에도 유아교육보육센터의 꾸준한 증가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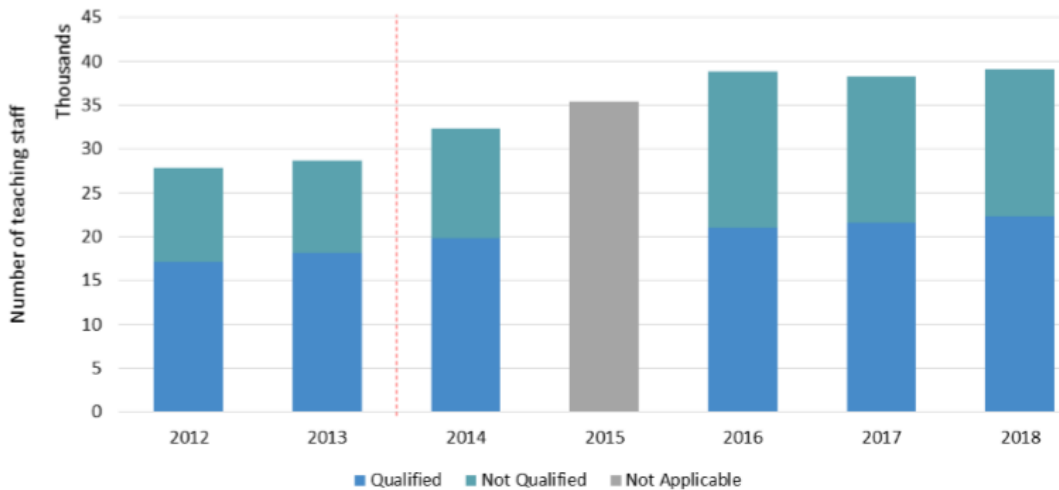
<그림IV-7> 뉴질랜드 인가 서비스 유형별 교직원 수(2012-2018)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Overview of ECE teaching staff in 2018. Figure 1: Number of teaching staff by service, 2012-2018¹⁸⁾

18) 2013년에 자료수집 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3년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직접비교할 수 없음.

○ 전체 교직원 중 자격/비자격 교직원의 수

- 교직원의 자격 수준도 다양하여, 교사위원회에 등록하여 교사등록증을 소지한 등록자격 교사와 교사자격을 갖추었으나 등록은 하지 않은 자격교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직원도 있음
- 자격을 갖춘 교직원은 2012년의 17,111명에서 2018년 22,2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직원의 57%로, 2017년의 56%에 비해 한 해 동안 1% 증가하였음
- 다음 표는 전체 교직원 중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직원의 비율이 2012년에서 2018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정기반센터에서 일하는 교육자(educators)의 상당수가 유아교육 자격을 갖추지 않은데서 기인함. 2018년 기준 가정기반센터 교육자의 90%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전체 교직원 중 가정기반센터 교육자 7,770명을 제외하면 자격을 갖춘 교직원의 비율은 68%로 올라감
- 주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자격교직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기반센터를 지원하는 방문교사(혹은 코디네이터)가 9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유치원 91%이며, 교육보육센터는 64% 임



<그림 IV-8> 뉴질랜드 전체 교직원 중 자격/비자격 교직원의 수(2012-2018)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Overview of ECE teaching staff in 2018. Figure

2: Number of qualified teaching staff and educators, 2012-2018.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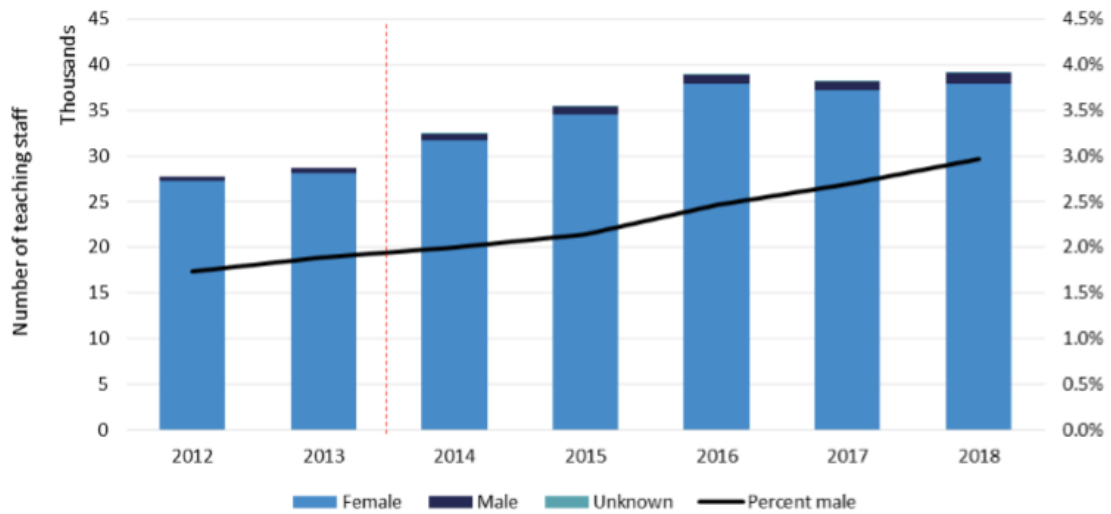
<https://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ECE>

○ 전체 교직원 중 남성의 비율

- 교직원의 대다수는 여성이지만 다음 표와 같이 최근 남성과 성별이 알려지지 않은 교직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2012년의 1.7%에서 2018년에는 3.0%로 증가하였음

19) 2013년에 자료수집 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3년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직접비교할 수 없음.

20) 2013년에 자료수집 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3년 이전과 이후의 자료를 직접비교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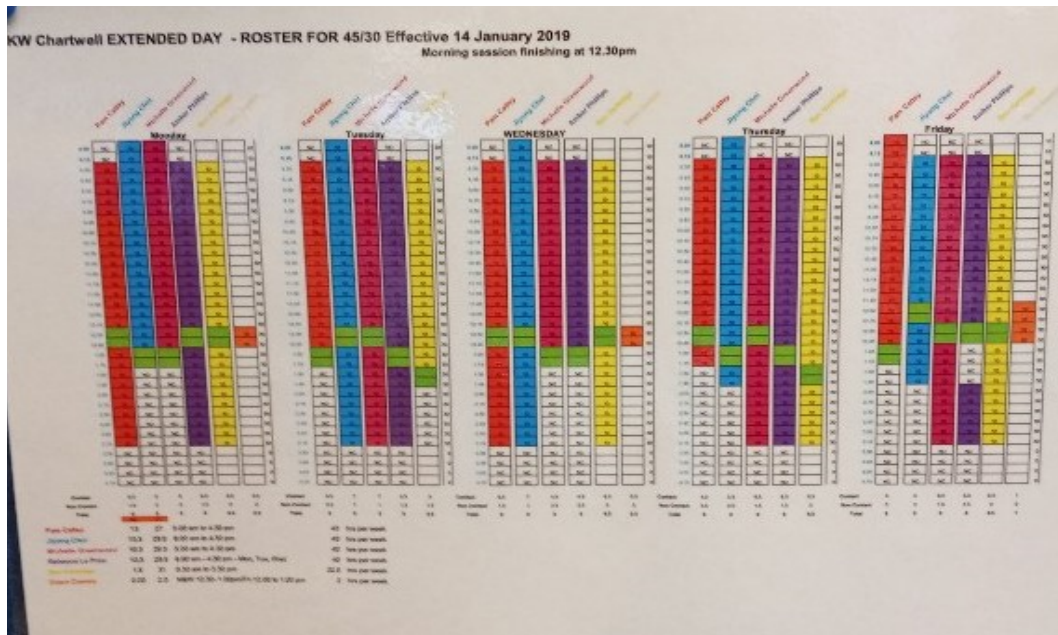
<그림IV-9> 뉴질랜드 전체 교직원 중 남성의 비율(2012-2018)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Overview of ECE teaching staff in 2018.²⁰⁾ Figure 3: Gender of teaching staff and educators, 2012-2018.

<https://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ECE>

나. 교직원의 유형

-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 근무하는 교직원의 유형이 다름
 - 교사주도형 기관 중에서 유치원이나 교육보육센터 경우는 여러 명의 자격교사(Qualified Teacher)와 비자격교사(Non-qualified Teacher)가 팀으로 함께 일하며 자격교사 중에는 등록을 한 교사(Registered Teacher)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교사도 있음. 교사들을 지원하는 보조교사(Relief Teacher)가 있어 교사의 휴게시간 등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규정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함
 - 정원 150명 정도의 규모가 큰 센터 경우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매니저가 있으며 각 반에는 교사 중에 한 명이 수석교사(Head Teacher)의 역할을 함
 - 아동정원 50명에 교사가 5명 정도인 유치원 등에서는 매니저가 따로 없이 교사 중 한 명이 수석교사로 임명되어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유치원이 속해있는 협회에서 파견된 교육서비스매니저(Education Service Manager)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교사지원 등을 맡음
 - 근무시간에 따라 풀타임(전일제) 교사와 시간제 교사가 있으며, 전일제 교사라도 요일에 따라 교사들 간의 협의에 따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짐. 다음 사진은 한 유치원의 교사들 근무시간표로 주 45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등록교사 4명과 30시간 근무하는 비자격교사 1명 그리고 실습을 나온 학생까지 포함하여 요일별 근무하는 시간 및 비접촉시간(기관 안에 있지만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V-10> 뉴질랜드 한 유치원의 교사들 근무시간표(2019년 7월)

○ 교사 당 아동 비율

-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짐. 2세 미만은 1: 5, 2세 이상부터는 1:10임(Ministry of Education, 2019)
- 교사 대 아동의 비율에 대한 규제를 충족한 후 아동과 함께 하는 교사 중 자격교사 비율 상시 50% 이상과 최고 금액의 보조금 지급 구간인 자격교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교사와 보조교사 등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주의깊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교사 근무 여건

- 전일제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40시간임
- 센터 근무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에 비해 계획과 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 적게 주어짐. 유치원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석교사는 보통 주당 10시간, 교사는 7-8시간 정도임. 유치원 협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석교사는 주당 12시간, 교사는 10시간 정도의 계획과 준비 시간을 주기도 함
- 근무시간이나 아동의 연령, 담당하는 아동의 수에 따라서도 계획과 준비시간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함

○ 교사 신분

- 유보통합 이전에 유치원에만 교사가 있었고, 일종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했음. 유치원교사는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일하므로 많은 교사들이 훨씬 적은 시간 일을 함. 예전에 유치원교사는 오전에 3시간 일한 후 집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 2시간만 일했으며 여전히 그 운영방식을 고수하는 협회도 있음. 현재는 모든 유치원 교사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지는 않음
- 유보통합 이전에는 보육시설종사자가 근로자(worker)로 불리고, 교육 연한에 있어서도

유치원 교사와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보육센터와 유치원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가진 교사가 근무함. 자격은 동일해도 전통적인 유치원연합회 소속의 유치원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주정부 영역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현재 유아교사의 10% 정도에 그치며 점차 줄어들고 있음. 보육센터에서 일할 경우 유치원교사 노조에 가입 불가함

○ 교사 급여

- 뉴질랜드는 기관의 교사 수준과 연계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데(김은설·김문정, 2010), 교사주도의 센터 기반 서비스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액은 고용된 모든 자격교사(정규직 풀타임/시간제 교사, 장단기 대체교사, 기간제 계약교사)에게 자격등급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 급여 수준 이상을 지불하기로 동의 한 서비스에만 제공됨
- 자격증을 갖춘 교사(교직원위원회에서 발급된 유효 실무자격증을 소지한 정교사, 임시자격 교사, 확인부조건교사)가 그에 합당한 인정과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기관에 종사하는 자격교사의 수를 늘리고자 함
- 다음 표의 급여 수준은 최저연봉으로 고용주는 교사와의 계약을 통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표IV-21> 뉴질랜드 교사의 자격등급에 따른 최저연봉

단위: 뉴질랜드 \$

자격 등급	자격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부터
Q1	유아교육 수료증	\$40,863	\$41,067	\$45,491
Q2	유아교육 수료증 + 2/3 학위	\$40,863	\$41,067	\$45,491
Q3	- 3년제 유아교육 학위 - 유아교육 심화과정 수료증 - 유아교육 수료증 + 유창한 마오리어	\$44,817	\$45,041	\$45,491
Q3+	- 4년제 학위과정 이상에서 유아교사자격 취득	\$46,137	\$46,368	\$46,832

주: 시간당 임금은 연봉을 2080으로 나누면 됨(52주 X 40시간)

출처: Attestation of minimum salary levels for certificated teachers.

<http://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employment/attestation/>

5.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통합)의 개발

○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Te Whāriki)의 시작

- 테파리키 이전에도 교육과정이 있었음. 7-80년대 교육부에서는 Common House 모임이라고 불린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선하였고 그곳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정책적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완전한 형태의 교육과정은 없었지만, 15-20개의 핵심 아이디어로 구성된 선언문 형태가 있었으며 오랜 시간 여러 형태로 변화를 거쳐 옴
- 1986년 유보통합을 하면서 많은 서비스와 철학을 함께 포함 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생김. 국가 교육과정 개발 소식을 현장에서는 대부분 반기지 않았음. 전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유아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과 비슷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음. 국가 교육과정이 필요했지만 그로 인해 다양한 교육철학을 가진 기관들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 정부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 부정적인 현장의 분위기를 고려해서인지 유치원과 보육현장의 경험을 가지며 두루 존경받는 2명의 와이키토 대학교수인 Margaret Carr와 Helen May에게 개발을 맡김으로 현장의 신뢰를 얻고 순조로운 출발을 함

현장에서 우려하듯 유아를 위한 수학이나 읽기, 사회교과 등으로 구성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시 학교에서는 교과목 마다 다른 소책자로 구성된 교육과정 운영) 기존의 교육과정에 장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발달영역 중심의 교육과정 탈피하려고 했지요. 학교와의 긍정적인 연계를 추구하되, 학교와 같게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개발자 M)

- 프로젝트 리더인 Margaret Carr 교수는 마오리 언어 몰입교육을 하는 코항가 레오에서 핵심역할을 하던 마오리족 교수부부인 Tamati Reedy와 Tilly Reedy도 저자진에 합류시켜 뉴질랜드의 모든 유아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제공 업체의 의견을 경청하며 6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완성함. 테파리키를 개발하는 과정은 하향식보다 상향식임 (Murata, 2014)

○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Te Whāriki)의 개발과정

- 교육과정 개발자는 과거를 전적으로 존중하여, 뉴질랜드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모든 작업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드러나게 함
- 전국 곳곳에 모든 유형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유치원, 보육, 가정기반, 놀이센터 등)를 대표하는 집단들로 작은 허브를 조직함
- 4명의 공동연구자가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몇 측면을 집필한 후에는 전국의 허브에 초고를 보내고 각 연구자가 나누어서 방문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그를 반

영하고자 함: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정말 중요한 측면이었음

- 교육과정 집필자가 원고를 집필하여 관련된 지역사회 모임에 보낸 후 피드백을 받아 다시 원고를 수정해서 보내는 등 유아교육 공동체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과정이 개발됨
- 교육과정 초안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중문화적 요소가 훨씬 약화되어 저자들이 실망하기도 했으나, 이는 나중에 삭제되었다가 결국에는 포함됨
- 초안에 첨부된 엄청난 분량의 각주는 모두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집필자들이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이론적 근거의 깊이를 보여주었음
- 다음 교육과정안부터는 각주가 사라진 대신 자문회의가 실시됨
- 새로운 교육과정안이 관련된 지역사회 모임에 보내지면 실제 적용하고 탐색하는 일종의 시험과정이 최소 2년간 지속됨
- 교육과정 초고가 나오기 이전의 작업부터 포함해서 최종 교육과정이 1996년에 탄생하기 까지 총 5년이 소요됨
- 그 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일련의 개발과정과 비디오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 생산이 이어짐
- 유아교육 서비스 현장에 테파리키를 소개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함: 일 년 동안 센터를 그룹단위로 묶어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센터를 지원하고, 워크숍을 실시하고, 실천사례를 함께 나누었음

현장 적용 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이 '바로 이게 우리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지요. 이는 교육과정의 원칙들이 70년은 된 것처럼 매우 확실했기 때문이며, 바로 개발에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개발자 M).

○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Te Whāriki)의 개정(Tyler-Merrick 외, 2018)

- 2015년 OECD와 교육부 유아교육자문단에서 테파리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실제적 전략과 지원방안을 개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뉴질랜드 교육부는 2016년 7월 테파리키의 개정을 위한 팀과 자문단을 구성함
- 2016년 8월에서 11월에 걸쳐 개정안 초고를 작성한 후 28회에 걸친 전국적 자문회의와 온라인 피드백 수렴과정 그리고 교육부 위원회와 자문단 및 교육과정의 원 저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2017년 4월 개정안이 발표됨
- 개정된 테파리키에는 문화의 중요성과 유아기 문화적 반응성과 유능감의 배경으로 와이탕기 조약을 포함시켰으며,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뉴질랜드의 변화를 반영함
- 테파리키의 원칙이나 가닥 그리고 목표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학습성취는 118개에서 20개로 줄어듬

○ 테파리키(Te Whāriki)의 내용

- 테파리키는 마오리어로 '잘 (엮여서) 짜여진 매트(mat)'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넓고 포괄적임
- 테파리키는 "아동이 마음과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유능하고, 자신감 있는 학습자와 의사소통자로 성장하며, 자신들의 소속과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는 지식에 확신 "

하기를 기대하며 개발됨

- 마오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권한 부여”를 중심으로 네 가지 원칙(principles)과 다섯 가닥(strands)이 결정됨. 네 가지 원칙은 역량 강화(Empowerment), 총체적 발달(Holistic Development), 가족과 지역사회(Family and Community), 그리고 관계(Relationship)임
- 아동의 권한 부여가 가장 먼저이고 다음은 전체적인 융합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는 언제나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사람과 장소 그리고 사물 간의 상호적이고 반응적인 관계를 중요시함. 이는 마오리와의 이중문화에 기반한 것으로 마오리 세계에서는 바위에도 생명이 있음을 믿듯이 영적인 본질이 중요하게 고려됨

<표IV-22>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의 4 원칙

테파리키 4 원칙	설명
역량 강화	유아교육과정은 아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움
총체적 발달	유아교육과정은 아동이 배우고 성장하는 총체적 방식을 반영함
가족과 지역사회	더 넓은 가족 및 지역사회는 유아교육과정의 필수 부분임
관계	아동은 사람, 장소 및 사물과 반응적이고 상호적 관계를 통해 배움

출처: <https://tewhariki.tki.org.nz/en/te-whariki-foundations/>

- 테파리키 개발에 참여한 Tamati Reedy와 Tilly Reedy 교수 부부는 전국 각기에 흩어져 있는 수 천이 넘는 마오리어 사용 지역 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이 지닌 의미를 밝히는데 힘씀
- 연구진이 몇 가지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빠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 추가하는 작업을 통해 5개의 가닥이 만들어짐. 웰빙(Well-being), 소속감(Belonging), 기여(Contribu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그리고 탐구(Exploration)임

<표IV-23>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인 테파리키의 5가닥

테파리키 5가닥	설명
웰빙	아동의 건강과 복지가 보호되고 양육됨
소속감	아동과 그 가족은 소속감을 느낌
기여	학습 기회는 공평하며 각 아동의 기여가 존중됨
의사소통	아동 자신의 언어와 상징 그리고 문화가 장려되고 보호됨
탐구	아동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구함으로써 배움

출처: <https://tewhariki.tki.org.nz/en/te-whariki-foundations/>

- 테파리키(Te Whāriki)는 아이들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틀로

이러한 원칙과 가닥을 확립함

- 다양한 관행을 존중하며, 각 연령에 대한 특정 목표를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 또한 몬테소리(Montessori) 교육, 스타이너(Rudolph Steiner) 교육 및 놀이센터에서 지향하는 교육 철학도 존중하므로 기관에서는 테파리키를 교육과정으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교육 철학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도 테파리키를 사용할 수 있음(Murata, 2014)
- 영어와 마오리어의 이중 문화 교과 과정임

○ 테파리키 기반한 아동의 평가방법 개발

- 1996년 테파리키 개발 이후 교육부에서는 평가 방법에 의해 교육과정의 실체가 좌우될 수 있음을 미리 예측하고, 테파리키 개발자에게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방식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함
- 평가에 관한 많은 자금 지원과 연구 끝에 기존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러닝스토리(Learning Story)가 개발됨

러닝 스토리는 기존의 평가에 변화를 주고자 한 교육부와의 계약에 의해 평가 방식을 개발하던 과정 중에 영감을 받아 탄생함: 유치원 평가방식에 대한 (W의) 원고를 읽던 개발진(M)이 “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뭘지 알아요. 바로 러닝 스토리예요.” (러닝스토리 개발 참여자 W)

- 이 평가방법은 전통적인 목적 기반 평가가 아니며, 아이들에게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는 내러티브 방법의 일환임. 아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여하며, 부모나 확대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지속성 있는 평가임
- 러닝 스토리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유아교육에서의 평가>라는 책이 나오기 이후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러닝 스토리를 작성하기 시작함. 교사들의 러닝스토리를 통한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9년에 걸쳐 테파리키의 각 측면을 다룬 20권의 책을 개발했는데, 2004년 첫 책이 출판되고 마지막은 2009년 출판됨. 20권의 책은 완벽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평가 여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교사들이 테파라키와 연관하여 평가에 관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그를 위해 모든 책 뒤에는 각 권의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성찰 질문을 수록함
- 각 권은 서론, 개요, 중심 아이디어, 해설, 기술 및 참고문헌으로 구성됨. 책 전체에 걸쳐 테파라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와 주석이 제공됨
-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을 할 때, 문해력은 유아들에게 글자를 연습 시키고 쓰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대한 사랑이 읽기로 연계되는 것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

○ 러닝스토리(Learning Story)

- 아동에 대한 평가는 테파리키의 원칙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함. 테파리키는 (마오리어로) ‘잘 짜여진 매트(mat)로 하나의 가닥을 다른 가닥들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없듯이,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아동과의 협력이나 상황이 전개되는 문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함

- 러닝스토리 이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시간 샘플링,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한 평가를 실행했으며, 주로 아동이 할 수 없는 부족함에 대한 것이며, 평가 후 서류철로 사라짐. 러닝 스토리를 통한 평가는 아동이 할 수 있는 것과 유능한 점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며 그에 대해 아동을 축하함
- 러닝 스토리는 아동 자신은 물론 다른 아동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됨(개별 아동의 파일 형태로 보관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
- 초기에는 즉석 사진을 찍어 폴로 붙이고, 손으로 러닝 스토리를 작성함.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해서 출력한 후 파일상태로 공유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부모에게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공유함
- 러닝 스토리는 바로 아동을 위한 것인데, 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 (Story Park이나 Educa 등)은 그 부분을 간과하였고, 일부 센터에서는 종이로 출력된 러닝 스토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아동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짐

온라인 러닝 스토리는 너무 단순화해서 평가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러닝 스토리는 너무 작은 사진과 글로 인해 아동의 흥미 수준을 낮춤으로 학습 자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즉 학습이 아동의 삶에 통합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러닝스토리 개발 참여자 W)

- 러닝 스토리 작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교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서비스 유형 등에 따라 다름(유치원은 다른 서비스유형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 제공)
-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는 평가를 위한 교사들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아동들의 학습 생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는 (질적인) 차이를 만듦
- 러닝 스토리는 길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학습의 전과 후의 진행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임(교육부에서는 예전의 평가방식에서 단계별 진행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듯 러닝 스토리에서도 아동의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심 가짐)
- 가정기반서비스의 경우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되는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많은 대규모 조직에서 교사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교육지도자들이 러닝 스토리나 학습과 교육에 대해 얘기하기보다는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관리자로 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누가 교육지도자인지 그리고 전문지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의깊게 살펴봐야하죠. (러닝 스토리 개발 참여자 W)

○ 테파리키에 대한 평가

- 테파리키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된 뉴질랜드의 이상을 담은 교육과정으로 OECD에서도 선도적인 교육과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음
- 유아교육과정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 이후에 개발된 세계 여러 나라의 유아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아일랜드 경우 거의 유사함)
- 놀이기반의 교육과정으로 어느 연령대어나 적합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

전히 바꿔놓음

- 기관이나 교사가 테파리키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교육적 실재를 스스로 개발하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임

테파리키는 다양한 서비스유형(몬테소리, 루돌프 스타이너, 코헨가 레오, 가정기반서비스, 기독교기반서비스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교육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 공무원)

테파리키를 배우는 초기에는 교육과정이라 하면 떠올리는 수학, 과학, 문학, 국어 등과는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테파리키를 배운 후 영국에 돌아가 영역별 교육과정을 접했을 때 '왜 유아들하고 이렇게 해야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테파리키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지금은 테파리키야말로 모든 아동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아동과 아동의 발달 속도와 단계를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테파리키가 바로 그런 교육과정이지요. (유치원협회 소속 교육서비스 매니저)

- 뉴질랜드에서는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민자들이 유아교사가 되었는데 테파리키는 이민자 교사는 물론 이민자 교사와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환영받고 있음(Murata, 2014)
- 지금은 테파리키가 공식적으로 학교 1학년(5~6세 교실)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됨.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실적인 지식보다는 핵심 역량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관심이 있음. 모든 학교에서는 아니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음

2007년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테파리키에서 따온 부분도 있음(테파리키 관련자들은 테파리키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닝스토리 개발 참여자 W)

- 훌륭한 프로그램은 잘 훈련된 교사에 의해 테파리키의 네 원칙이 교육과정에 완벽하게 적용될 때 가능함
- 원칙은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며, 가닥은 교육과정의 초점을 기술과 지식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킴
- 뉴질랜드에서는 마오리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교사로서 모든 아동들에게 마오리와 관련된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

마오리 신과 같은 영적인 개념을 다루는 데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기독교인들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집단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스토리 개발 참여자 W)

*인터뷰 시작전 마오리어로 짧은 명상의 시간을 가짐. 교육부에서도 동일하게 명상으로 시작. (집필진 첨부)

○ 테파리키에 대한 비판(Murata, 2014)

- 테파리키는 특정한 교육적 성취나 실재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나 기관의 실행 정도나 능력은 매우 다양함
- 테파리키는 사회문화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 성과를 규정하기 어려움. 사회·문화적 가치나 신념에 따라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의 우선순위나 강조할 부분, 교육과정에서 가치를 두는 학습영역을 결정함.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학습 성과는 문화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짐
- 테파리키에 대한 해석이나 러닝 스토리 작성방법이 교사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뉴질랜드 정부에서 유아교육에 많은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Blaiklock, 2013)
- 테파리키의 개발 당시 목적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교육 철학 및 이미 존재하는 많은 교육 서비스의 포함에 있었지 개별적인 교육 서비스 유형에 따른 평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테파리키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실행수준(C유치원의 사례)

-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작동하는 틀로, 모든 계획이나 평가가 테파리키에 맞춰져 있음
- 테파리키는 활동 1, 2가 아닌 존재방식이자,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임.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속도에 맞게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하는 것이며, 아동이 학습하는 총체적인 방식에 대한 것임
- 부모가 아동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그리고 교사들이 (아동의 학습을 위해) 함께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유치원 교사들은 테파리키 실행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함
- 부모들의 테파리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도는 매우 다양한 수준
- 유치원협회 소속의 교육서비스 매니저(ESM)으로서, 교사들로 하여금 부모들과 테파리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인식을 공유하도록 격려함
- 그 일환으로 '아동 개별 계획'을 실시하고 있음
- 아동 개별 계획
 - 테파리키에 기반한 학습 성과와 아동의 발달을 연계하고 부모와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하며 계획하기 위해 작성함
 -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본 협회 소속 기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협력 하에 개별화된 계획을 작성함
 - 아동의 현재 발달 단계에 비추어 노력이 필요한 테파리키의 학습 성과를 제시하고, 러닝 스토리는 학습 성과와 연계해 작성하여 아동의 학습진전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함
 - 아동 개별 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만, 정해진 평가 기한은 없음, 그 이유는 목표로 하는 학습 성과가 아동마다 달라 어떤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취 가능하지만 일 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임. 아동 개인의 발달 속도에 근거한 상당히 개별화된 계획임
 - 아동 개별 계획은 온라인 플랫폼(Story Park)을 통해 부모와 연계됨. 교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아동과 관련한 내용을 올리면 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링크가 전달됨. 부모는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교사가 올린 아동에 대한 계획이나 러닝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올릴 수도 있음' 부모들이 보다 더 활발하고 풍성하게, 부담 없이

-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사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음
- 신임 교사의 경우 테파리키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멘토 교사를 통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예비 유아교사 훈련기관은 너무 다양하고 수준도 달라서 그들의 테파리키 관련 교육이 교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데 충분한지는 알 수 없으나 졸업생들을 보면 모두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재는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치원협회 소속 교육서비스 매니저)

- 테파리키 실행 등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 유치원협회 소속 교육서비스관리자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 테파리키 관련해서 유치원에 서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관련 자료 제공이나 사용법, 기존 자료와의 연계에 대한 지도 등)
 -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테파리키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이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 온라인 세미나가 상당히 좋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유치원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외부에서 개최되는 경우에 참여를 독려하며, 외부 세미나 등에 참여할 경우 협회의 전문성발달예산에서 참가비를 지원하기도 함

6. 평가 및 질 관리

가. 기관 대상 평가 체계²¹⁾

1) 평가담당 기관

- 뉴질랜드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공공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속한 ERO(Educational Review Office)가 맡고 있음. ERO는 1988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교육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하며, 교육부 장관은 ERO와 ERO보고서를 통해 개별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교육을 점검하고 운영을 평가함. ERO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뿐 아니라 초등과 중고등학교의 질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하는 법적 책임을 짐

매년 1,200-1,400개의 유아기관과 750개의 학교를 평가합니다. 이민의 증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평가 수요도 증가해서지요. 130명의 평가자(전국 8개 사무소에 근무하는)가 생후 6주에서 18세까지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기관부터

21) 뉴질랜드에서 교육평가를 맡고 있는 Education Review Office에서 발행한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와 ERO 담당자와의 면접을 중심으로 정리함.

고등학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ERO 담당자)

- 유아교육보육기관을 평가하는 목적은 기관의 다양성 안에서도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 기관이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 성과를 고취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부모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함

ERO 보고서는 교육부에 사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주 대상인 부모를 위한 공적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부모들 볼 수 있게 온라인에 탑재합니다. ERO가 납세자와 부모들에게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보육과 교육의 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지요. (ERO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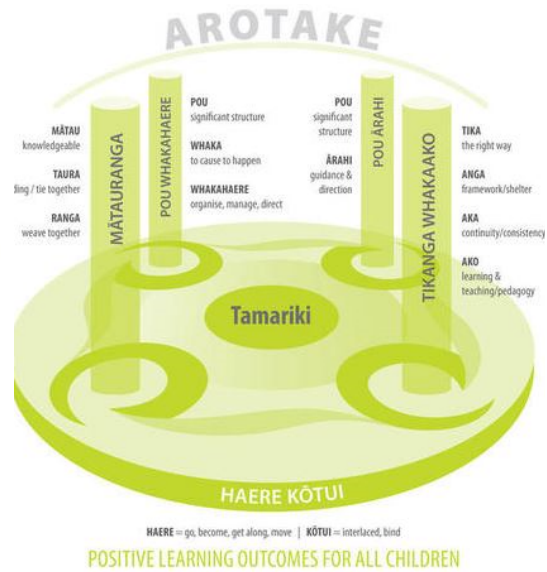
- 평가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89년의 교육법(Education Act)에 있으며, 평가내용은 2008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해 유아교육보육센터, 가정기반센터, 코헝가 레오, 놀이센터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인가 규정(예를 들어, 유아교육보육센터의 인가 규정은 Licensing Criteria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res 2008)과 유아교육 교육과정 틀(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에 의해 이루어짐.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고안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임(장혜진, 송신영, 2014)

2) 평가 틀과 지표

- ERO의 평가 틀(Framework for Review)
 - 마오리어로 Ngā Pou Here이며, 이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론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로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고취시키기 위한 기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임
 - Ngā Pou Here는 다음 <그림 IV-11>과 같이 아동의 성취와 관련된 네 개의 축(마오리어로 Pou, 기둥), 즉 운영과 관리(Pou Whakahaere), 역량 강화(Pou Ārahi), 교육과정(Mātauranga), 교수·학습(Tikanga Whakaako)이 아동(Tamariki)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ERO의 주된 관심이 아동에 있음을 의미함



Ngā Pou Here: 틀 위에서 본 모습



Ngā Pou Here: 틀 옆에서 본 모습

<그림IV-11> 뉴질랜드 ERO의 평가 틀

출처: Education Review Office (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p15-16. Diagram 4: Ngā Pou Here; Diagram 5: Ngā Pou Here to Te Ao Maori

○ 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s)

- 유아서비스를 위한 평가지표는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기반으로 기관의 현재 실행 수준을 점검하고 높은 수준의 실행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음. 평가지표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며, 유아교육보육기관에게 지표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을 달성했다고 증명할 것을 기대하지 않음
- 평가지표는 (기관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 자체로 기관의 질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며,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진술서임
-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유아 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규모와 범위 그리고 초점을 가진 뉴질랜드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음. 뉴질랜드의 상황에 맞는 지표 개발을 위해서 뉴질랜드 국내 연구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ERO 내에서의 다년간의 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하였음
- 평가지표는 '자원(resource)'으로서 활용됨. 즉 다음 <표IV-24>에서와 같이, 평가지표는 ERO 평가자에게 기관의 다양한 측면의 수행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ERO가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서비스 기관의 경우에는 자체 평가를 지원함.

<표IV-24> 뉴질랜드 ERO 평가지표의 역할

ERO에 있어 평가지표의 역할	유아서비스 기관에 있어 평가지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틀인 Ngā Pou Here의 적용을 지원함. • 평가가 성공적인 성과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집중하도록 함. • 마오리 아동의 성공을 우선시 하는 것의 중요성을 유지함. • 기관이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ERO 평가자들이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원함. • 평가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 향상. • 기관의 담당자와 교육의 질과 아동의 학습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과정을 명확하게 함. • ERO가 판단하는 근거를 이해하도록 도움. • 아동의 긍정적인 성과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게 함. • 다양한 집단의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지원함. • 기관의 자체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함. • 평가를 위한 질문과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모델링함으로써 기관의 자체적인 평가 역량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됨.

출처: Education Review Office(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p24. 재구성함

○ 평가지표의 구성

- 평가 틀을 구성하는 네 가지 축 안에 각각의 평가지표들이 있음. 각 축은 부모와의 파트너십과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지표들로 시작되는데 이들은 각 축 사이를 서로 연결하며 그 결과 서로 중복되는 영역도 있음
- 각 축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기 전에 해당 축의 평가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질문 항목이 제시됨
- 우선적 질문 항목(Priority Questions)은 자체 평가를 통해 기관 내에 (마오리나 태평양 제도의 아동 등)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학습자(Priority Learners)에 대해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항들과 각 축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파트너십과 자체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됨
-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질문 항목(Supporting Evaluation Questions)은 각 축의 주요 측면을 강조하는 중요한 평가적인 질문들로 구성됨
- 탐색적인 항목(Investigative Prompts)은 우선적 질문 항목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질문 항목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제시한 예시들임
- 각 축은 부모나 (확대)가족과의 파트너십과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지표인 연결요소와 기관의 특정 측면이나 특정 지표들의 공통 주제에 따라 지표들을 범주화하는 방식인 기여요소로 구성됨

○ 평가 틀의 네 가지 축과 구성 요소

- 운영과 관리(Pou Whakahaere)의 축에서는 기관의 철학, 비전, 목적, 체계가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봄
- 역량강화(Pou Ārahi)에 관한 축에서는 지도자가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관 내의 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교육과정(Mātauranga)의 축에서는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기관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봄
- 교수·학습(Tikanga Whakaako)에 관한 축에서는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실체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봄

<표IV-25> 뉴질랜드 ERO 평가 틀의 네 가지 축과 구성 요소

네 가지 축	연결 요소	기여요소
운영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과 관리와 부모 및 (확대)가족과의 파트너십 • 운영과 관리와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철학 • 전략 방향 • 재정/실행관리 • 건강/안전관리 • 정책 틀 • 역량 제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강화와 부모 및 (확대)가족과의 파트너십 • 역량강화와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철학의 실현 • 기관의 조직문화 확립 및 개발 • 전문성 개발 및 지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부모 및 (확대)가족과의 파트너십 • 교육과정과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 아동권리에 대한 지식 • 교육과정과 교과내용 지식 • 학습과 학습자로서의 아동관련 지식 • 문화/맥락/가족/지역사회에 관한 지식 • 평가와 (아동의) 정체성, 평가 과정, 평가 목적 • 교육과정 계획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과 부모 및 (확대)가족과의 파트너십 • 교수·학습과 자체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 아동 권리 • 효과적인 교수법 실제 • 문해 및 수리/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영역(Domains) • (와이탕기)조약 기반 실제/이중문화 교육과정 • 통합적인 실제, 학습 환경 • 기관 내/기관 간 및 학교로의 전이

출처: ERO(2013). HE POU TATAKI의 pp. 27-28, 30-31, 33-35, 37-39쪽 표를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번역하였음

- 2세 미만 영아기관 대상 지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다음의 연결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긍정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인 상호작용
 - 학습 환경
 - 영아(infants and toddlers)를 위한 구조적 측면의 질

3) 평가 절차

- 평가공지
 - ERO가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실시에 대한 서면 안내와 함께 기관대상 평가관련 책자, 가이드라인, 법적 규정 준수 확인서(Assurance Statement), 자체 점검목록, 자체평가보고서 출력물 및 유관 서류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 평가를 준비하도록 함. ERO는 교사, 부모 및 관련 가족에게 본 점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기관의 자체 평가 보고서
 - 기관은 ERO 평가 전에 자체 평가 보고서(자체 점검 목록이나 법적 규정 준수 확인서 등) 작성을 통하여 법적 규제 사항 준수 여부 뿐 아니라 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함. 자체 점검은 지난 평가 이후 (신규 기관이라면 영유아서비스 제공 이후)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고취하기 위해 해왔던 지속적인 노력들을 “평가 틀 (Review Frame)에 비추어 점검하여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함
 - 자체 평가를 통해 기관은 자신들의 교육적 실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성찰해 봄으로써 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ERO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체 평가를 통해 평가 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평가 시 각 기관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자체 평가 보고서는 기관의 자기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ERO 평가자에게 평가 기관의 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평가자가 개별 센터의 맥락 안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명의 평가자는 센터 방문 전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센터의 상황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점검하거나 확인할 사항에 대해 기록하지요. (ERO 담당자)

- 자체 평가는 체크리스트 형식이 아니라 평가 틀에서 제시하는 여러 질문에 서술형으로 답하게 구성되어 있음. 자체 평가의 질문을 통해 기관이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과 그에 대한 평가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성찰해 보도록 함
- 자체 평가가 단순히 기관에 대한 법적인 규제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차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평가절차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이러한 자체 평가는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장혜진, 송신영, 2014)

- 현장 평가 전 ERO와 기관 간의 정보 교환
 - ERO 점검을 앞둔 유아교육보육기관은 각 지역의 ERO에서 주최하는 단체 설명회를 통해 평가 준비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음. 유치원연합회나 유아교육보육센터 체인을 운영하는 조직 등에서는 자체 설명회나 담당자를 통해 개별 기관의 평가준비를 지원함.
 - 평가 코디네이터는 기관에서 평가 책임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기관에 세부적인 점검절차와 평가자 방문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제출일시에 대해 안내함

- 평가 시 중점 점검 사항 계획
 - ERO는 기관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와 법적 규정 준수 확인서 그리고 지난 ERO 보고서와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평가 틀에 따라 정리하고 현장 평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과 질문 항목을 결정함. 이는 뉴질랜드의 평가가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기관의 교육철학이나 지역사회,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접근방식(one-size-fits-one)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함
 -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계획하고 기관과 공유함. 평가의 각 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배정되는 시간이나 평가 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평가 (보고서) 역시 다르게 보임
 - 평가 틀과 함께 국가 평가 주제(The National Evaluation Topics: NETs)를 활용하여 정부의 교육적 우선순위와 연계된 평가를 수행함
 - 기관에서 법적 규정 준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자체적인 점검 체계가 부적절하여 아동의 안전이나 웰빙에 대한 위험요소가 의심될 경우에는 평가가 법적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장 방문 평가
 - ERO는 현장 점검을 통해 평가지표와 질문 항목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기관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매니저나 다른 관련자들을 면담하며, 프로그램의 실재를 관찰함. 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합함
 - 현장 점검은 기관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들이나 기관장, 서비스제공자, 운영진, 기관이 소속된 연합회의 담당자, 아동, 부모, 마오리 지역사회, 태평양 제도 지역사회나 그 외의 집단 등이 면담 대상에 포함됨
 - 기관의 자체 평가 보고서 점검을 통해 잘 하고 있다고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확인하며, 평가나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ERO의 평가 과정을 통해 기관의 자체적인 평가와 개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문
 - ERO는 기관이 자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함. 특히 기관과 부모 및 (학대)가족 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안이나 교직원이 서비스 평가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에 관심이 지대함

- 평가를 통해 파악한 내용에 대한 논의
 - 현장 점검 중간이나 후반부에 평가 팀은 기관 담당자와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탁월한 영역과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함
 - 심각한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방문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서 알려줌

- 이러한 내용은 운영진이나 교직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과 모두 논의되어야 함

○ 평가 보고서

- ERO 보고서는 정부와 일반 대중 그리고 유아교육보육분야 관련자가 포함됨
- 평가 보고서는 종합적인 평가로 시작하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음
- 현장점검 이후 업무일 20일 이내에 보고서 초안이 기관에 전달되는데 ‘아주 낮은 단계(Not Well Placed)’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현장점검 10일 이내로 전달됨
- 기관은 ERO가 보고서 초안을 보낸 후 업무일 15일 내로 평가의 근거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아주 낮은 단계’ 판정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로 요청해야 함
- ERO는 기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수정한 후 확정된 보고서를 기관에 보냄. 기관에 보고서를 보낸 후 2주 후에 최종 보고서가 ERO 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 평가 결과의 활용

- ERO의 평가 결과는 ERO 사이트나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으로 부모의 기관 선택에 도움을 줌.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함
- 평가 결과는 다음의 4등급으로 나뉘지며, 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달리함으로써 질 높은 기관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 예산을 절약하였으나 곧 수정할 계획이라고 함(ERO 담당자, 2019년 7월 면담)
- 매우 높은 단계(Very Well Placed)는 평가지표에 의해 수행수준의 질이 우수한 기관으로 입증되었으며, 아동의 웰빙과 학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남(평가주기가 4년이었음)
- 높은 단계(Well Placed)는 평가지표에 의해 수행수준의 질이 좋은 기관으로 입증되었으며, 아동의 웰빙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며 학습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평가주기가 3년이었음)
- 개선이 필요한 단계(Requires Further Development)는 아동의 긍정적 학습 성과에 기여하는 많은 요인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상당한 개선을 요하는 기관이지만, 지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임(평가주기가 2년 이내였음). 평가 보고서를 받은 후 기관은 ERO와 교육부와 회의를 통해 개선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부는 기관이 ‘높은 단계’가 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지 감독함. 평가 후 약 6-9개월 후 기관은 ERO에 진전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교육부 역시 ERO에 개선된 측면에 대해 알려야 함. ERO는 이를 기반으로 2년 이내에 재평가할 시기를 결정함.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ERO는 ‘아주 낮은 단계’로 판정을 내리고 교육부에 인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함
- 아주 낮은 단계(Not Well Placed)는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으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육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는 개선될 역량이 없는 경우임. ERO는

교육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교육부에 의해 기관이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확인될 때까지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나. 질 관리

- 뉴질랜드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ERO에 의한 평가는 물론 다음에 의해서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교사의 질적 수준 관리: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교사의 질은 3년마다 실무자 격증 갱신(이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과 성찰 그리고 멘토 교사나 지도자의 멘토링을 통해 꾸준히 관리됨)
 - 부모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리: 러닝스토리 등을 통해 아동의 학업 성과에 대해 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와 가족도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기관과 교사의 교육의 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기여할 수 있음
 - 열린 교실: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실 내 상호작용은 부모의 자연스런 교실 출입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인 됨(공적인 평가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교구 등의 환경 준비를 통한 준비 불가능)
 - 상부 단체나 기관을 통한 개별 센터에 대한 질적 관리와 지원: 유치원협회의 교육서비스 매니저나 가정기반서비스제공자 소속으로 가정기반센터를 관리,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처럼 각 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있음. 평가를 대비한 준비가 아니라 평소에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함으로써 정기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함
 - ERO는 평가지표에 따른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질적 수준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려줌
 - 재정지원과 규제를 통한 질적 수준 관리: 국가는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자격교사비율에 연계한 보조금 지급 비율)과 인가 규정 등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통해 질적 수준을 관리함
 - 부모의 선택권 보장에 따른 질적 관리: 부모에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기관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들 간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경쟁 유도

V. 우리나라 유보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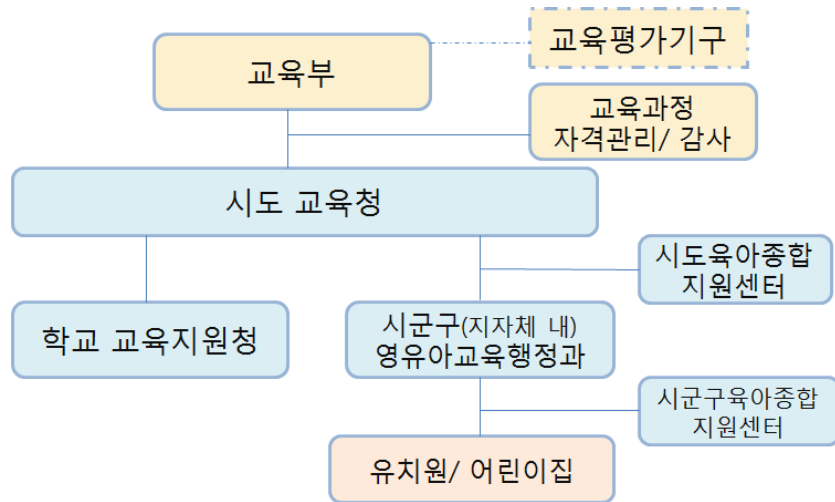
1. 유보통합 행.재정 방안

가. 유보통합 시 행정체계 방안

-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 행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야 함.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법령의 확보가 필요함. 또한 영유아를 위한 독립된 기관 (가칭, 영유아교육청)설립으로 전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 현행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육전달체계와 교육청 중심의 유아교육 전달체계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차례 유보통합에 대한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사(선행연구 언급)한 바 있으며 다수가 교육부로의 통합을 찬성한 바 있음
- 평생복지의 개념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 유보통합의 초점은 영유아보육·교육을 평생교육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 복지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양국 다 평생교육의 개념에 포함시킴
- 유보통합 시 중앙정부(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는 중앙담당 부처와 지방담당부처를 신설하여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되고 통합법에서도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보통합 시 간략한 전달체계는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지원, 관리하는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의 영유아 교육행정과에서 수행하도록 함
 - 상위 전달체계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둬으로써 교육정책의 전체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하위 전달체계로는 시군구에 영유아 교육행정과를 두어 관할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현재 11개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25개구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간 행정 불일치의 문제를 스웨덴과 같이 시군구에 영유아 교육행정과를 둬으로써 해결하고자 함
 - 영유아 교육행정과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교육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영유아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해결함
 - 교육부 산하에는 현재 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격관리 업무와 육아정책연구소 등에서 상시체계가 아닌 필요에 따라 수행해왔던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기구²²⁾를 둬.

- 뉴질랜드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ERO는 교육부가 아닌 공공서비스부 소속임. 이는 실행 부서와 평가부서를 분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그림에서는 뉴질랜드와 같이 교육 평가기구가 교육부와는 별도의 공공서비스(또는 교육서비스) 평가 전문 기구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그림V-1> 유보통합 시 영유아교육 행정 체계

- 그간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과 보육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이원화된 체제를 발전시켜 왔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두 기관의 명칭은 다르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 부처가 달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켜 불편과 불만을 야기 시키고 있음. 즉, 어린이집은 0~5세 취원이 가능하나 유치원은 3~5세만 취원 할 수 있어 영아와 유아의 자녀를 둔 경우는 각각 보내야 하는 등 불편을 유발함. 이는 학부모의 기관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정임
- 이원화 되어있는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질적으로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과 보육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함

나.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통합 행정 체계

- 스웨덴에서 교육부는 산하 행정기구들의 일상적인 운영이나 개별 사례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들 행정기구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취학전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을 뿐 취학전 교육서비스의 지원과 질 모니터링은 '국가교육'

22) 스웨덴에서는 국가교육청이라 칭함

청'과 '국립학교 감사원' 이 담당함

- 국가교육청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활동하며, 교육부는 순수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책 수립을 통해서 이를 통제함
- 기본적으로 프리스쿨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지만 프리스쿨의 설치, 운영, 감독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음. 특히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보육 목적과 지침을 수립하고 재정의 틀을 설정하며, 지자체는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 받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한유미 외, 2005)
- 스웨덴의 경우 1996년 이전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보건복지부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교육을 평생교육의 체계 속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부로 이관하는 과정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스웨덴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로 이관한 것은 유럽연합이 지향한 리스본 전략이 생애초기 모든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에 기초하는 것과 일맥상통함(최윤경 외, 2016)

- 뉴질랜드는 교육부(유치원과 놀이센터)/사회복지부(보육시설)/마오리부(마오리유아학교) 체제에서 1986년도에 교육부로 통합됨.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유보통합은 사회의 큰 쟁점이었음. 각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었으나 통합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조직화하여 반영하였으며, 영유아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됨
- 뉴질랜드의 경우,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했으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은 그대로 유지함. 즉, 교육부 내에서 한 지붕 여러 가족과 같은 형태(지역사회 기반의 유치원/ 종일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가정에서 4명 이하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기반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센터 등)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획일화된 통합은 이루지 못했지만, 다양성을 유지한 통합 유형을 취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되었다고 사료됨. 즉, 교육부라는 단일 부처 아래 있지만 유치원과 보육기관이 자신들의 장점이 되는 특성들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육아지원기관이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기 보다는 교사나 교육과정의 질이 동일하게 높아진 시점에서 운영시간이나 원장의 철학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이 보육이나 교육 어느 쪽이든 강조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 유보통합 시 재정체계 방안

- 필요 무상교육(또는 필요교육 지원) 정책
- 스웨덴과 뉴질랜드 양국 모두 보육료 지원에 있어 가정과 영유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 비취업 부모는 15시간까지 취업 부모는 40시간 이상을 이용하면서 부모 소득과 이용시간, 자녀수 등에 따라 부모부담 비용과 지원 금액이 지자체별로 책정됨(최

윤경 외, 2015)

- 뉴질랜드에서는 취학 전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가 100%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유형과 아동의 연령, 시설에 근무하는 정식 등록교사의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른 수준의 정부 보조금을 아동 1인당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지급함
- 뉴질랜드는 제한된 교육비 지원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사정으로 기관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아동의 휴식권 보장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뉴질랜드에는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과 특정대상을 위한 표적 기금이 있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 장애유아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아, 영어 이외의 언어 문화권 등의 아동을 별도로 추가 지원함

○ 우리나라는 무상보육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충분한 보육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에 비해 1인당 보육·교육 단가가 적은 상태임. 따라서 유보통합을 전제로 재원의 조달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영유아나 가정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더라도 부모의 부담률이 일정정도 있도록 해야 함. 그랬을 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될 수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보육 및 교육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제도처럼 외견상 지원을 줄이는 정책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부로의 통합을 전제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인상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재정 확보가 어렵다면 양국과 같이 적정선까지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초과되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는 자칫 보육에 있어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의 정책적 후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부모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임

○ 사립기관의 비용 지원과 관리에 대한 합리적 원칙 수립

- 스웨덴의 경우 지원은 국공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나 사립 영유아교육기관은 지원금 이외에는 정부가 회계 관리나 이윤 등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음. 부모 또는 직원 협동조합형의 경우 이전에 비해 정부가 관리를 하는 추세이나 조합형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순수 사립의 경우 정부는 지원금 이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음

-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여 보고의 의무가 있으나 사립인 영유아 교육보육센터의 경우 지원된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 이외에 재정 전체의 보고나 투명성을 요구받지는 않음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경우 사립 기관의 관리가 재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영유아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초기 투자가 각 기관마다 다르고 설립자의 투자분이 있는 사립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국공립이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경우와 같이 재정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같은 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공사립 구별 없이 질 관리를 철저히 함
- 양질의 운영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설치 및 인가 규정, 평소 부모에게 모든 운영 상황이 공개되는 일상적인 개방, 교직원 전문성 관리 등을 통해 사립 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과도하게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질을 관리하고 있음

○ 사립기관에 대해 재정이 아닌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한 관리 원칙

-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과 정책의 변화로 재정부분은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하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부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충돌이 생겨나고 있음.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의 비용 지원과 관리 감독의 문제임
-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부지와 건물 설치 등 초기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국공립의 운영과 가장 다른 점임.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초기 투자와 운영 중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용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수립되지 못한 채 비용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 지다보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국공립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보육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비용 지원을 하면서 국공립과 유사한 재정 운영을 요구함. 따라서 향후 유보통합을 계기로 사립기관에 대한 비용지원과 관리의 원칙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함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과 관리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원칙 수립 시 개인 재산의 초기 투자와 감가상각비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사립 영유아기관의 경우 비용을 지원한 후 재정과 회계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원한 비용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여 영유아를 위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의 높은 부채비율(최대 50%) 인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궁극적으로 부채비율은 0%가 되도록 줄여나가야 할 것임.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격차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이 촉진될 것임
- 국공립기관 확충과 아울러 사립·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원칙 확립 및 공적 예산과 사적 자원의 균형 있고 공정한 활용방안 모색을 통하여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들에게 평등한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함

<표 V-1> 공사립 운영 관련 양국 제도 비교

국가		스웨덴		뉴질랜드	
운영 형태		공립	사립	공립(비영리법인)	사립 (순수 사립)
실태	비율 (이용 아동 수)	80%	20%	30%	70%
	형태	코문(지자체) 소유	부모협동, 직원협동 주식회사	비영리법인	개인 기업
설치	초기 투자 부지 건물 용자 가능	정부 소유	임대나 대출 가능 (정부가 임대료 지원)	부지를 임대해주고 형식적으로 임대료 수납	완전 자율
운영	보육료 지원	정해져 있음	공사립 동일	정해져 있음	공사립 동일
	보육료 수납	정해져 있음 (MAXTAXA)	공사립 동일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 자율화
	인건비 (교사 채용)	유아 교사 보육사 * 유아교사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전국 통계 50% 정도)	유아 교사의 비율이 낮은 편 (인건비 비중도 낮아짐)	비영리법인이 운 영하는 공립이 사 립의 비중이 높은 보육교육센터에 비해 교사의 평균 급여가 높으며, 공립이 사립기관 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음	자격 교사, 등록교사 비율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낮으며, 급여도 더 낮음
	교육 점검	학교 감사관; 교사, 부모 면담	코문 : 프리스쿨 방문	ERO에서 평가	ERO에서 평가
	회계 보고	회계 보고 의무화 매해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개	회계보고 의무화 아님	회계보고 의무화	지원금에 한해 4달에 1회 정산 보고/ 부모에게 지원금 사용 보고
	세금	세금	세금	세금 면제	세금 면제 안 됨
운영 결과	이윤 창출 가능 여부	없음	이윤 가능	이윤 불가능	이윤 가능
	이윤 창출 부분	없음	대체로 인건비 낮음. 유아교사 수 적음. 교사 연령 낮은 편. 경영 효율화, 기업의 경영 기법 도입. 전 체 아동 수 많아 대 규모화, 프로그램 다 양화, 영어 수업 등 부모의 선택을 많이	없음	보육료 자율화 대규모화, 경영 효율화 등 사립의 공세적 경영에 대해 학계의 우려 있음.

			의식하는 편 *보수당과 사민당의 입장 차이		
	회계 감사	코문에서 실시	회계 감사 안함. 현재는 부모협동조합형은 점점 실시하는 추세 그러나 주식회사가 운영할 경우 코문이 감사할 권한이 없음	감사 함	감사 안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평생복지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
 -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육·교육이 복지의 개념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야함.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체제나 상위법의 규정 등에 의해 제한을 받겠지만, 향후 서울시 행정체제를 이러한 개념 하에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나가야 한다고 사료됨
- 교육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필요
 - 유아교육과 보육은 관할 부처가 다르다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격차해소를 통한 유보통합을 이루어간다고는 하나 격차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상황임. 따라서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 이전 단계에서라도 교육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개정 누리과정이 양질의 교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의 사업을 하거나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친화형 보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 등 교육과정 관련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음
 - 지역의 원아 수급 상황을 고려한 시설 확충에서도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함
 - 만3~5세 유아에 대한 두 부처의 중복관리로 인해 대상 유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는 어린이집, 교육청은 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급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역의 원아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계획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음
- 민간어린이집 관리의 합리적 원칙 수립과 재정보다 질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스웨덴 사립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국공립과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사립은 회계 감사가 강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등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회계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방침이 다름
 - 그러나 스웨덴, 뉴질랜드 모두 공사립의 구분 없이 영유아가 경험하는 질을 관리함으로써

- 써 운영의 자율성은 주되 부적절한 운영을 통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는 시스템임
- 이와 관련하여 여건과 상황이 달라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에 대해 고려할 점이 있다고 사료됨
-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지원에 역점
 -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다문화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도 그러한 아동의 재원율이 높은 지역이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보육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해당 아동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다문화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공무원의 전문직화 필요
 - 지방 분권의 추세에 맞추어 서울시 차원에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육·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함.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은 교육 공무원이 아니며 계속 순환되므로 교육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제안함
 - 상시 여론 수집과 민의를 반영한 정책 결정 및 상시 정책 홍보
 - 뉴질랜드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상시 여론 수집과 그에 따른 의사 결정, 결정된 정책의 상시 홍보, 스웨덴의 주요 정책 결정 시 조사와 논의, 여론 수렴을 하는 위원회 제도의 뿌리 깊은 전통처럼 향후 서울시에서 보육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을 하거나 국가 차원의 유보통합을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 전체의 의견과 더불어 시민의 여론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 교사의 양성 및 자격 방안

- 현장 실습이 대폭 강화된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이 필요함
 - 현행 양성과정에 있어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스웨덴과 뉴질랜드 양국의 현장실습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임. 양국 모두 재학기간 중 통산 한 학기에 준하는 실습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보육교사는 6주로 되어 있음.
 - 스웨덴 A대학의 경우 현장실습은 7학기(3년 반)의 양성과정 중에서 4-5학기에 걸쳐 각기 4주씩 함. 1, 3, 4, 6학기의 특정일에 프리스쿨에서 종일 현장실습을 하고, 교수가 지도를 나오기도 하며, 다른 전공과목에서도 프리스쿨을 방문 관찰 또는 참여함
 - 뉴질랜드도 3년 과정 매학기 현장실습이 있음
- 양성과정의 교과목 통합보다 교육 직업 표준을 중심으로 운영
 - 뉴질랜드에서는 교사양성과정의 교과목을 통합하기보다 '뉴질랜드 교육 직업 표준'에 맞

게 교사양성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직위원회’를 통해 교사양성과정의 질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음

- 교사 양성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 또한 변화되어야 함.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교사 양성과정의 교과목 명칭이나 양성 체계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스웨덴과 뉴질랜드 또한 서로 다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력 연한을 확장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온 경향이 있으나 교육의 내용 또한 연한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영유아를 교육하고 함께 생활하는 전문성이 높은 교사로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 내용의 변화 또한 필수적임

○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이 요구됨

-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의해 보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스웨덴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방법으로 초임교사 멘토링 제도(1년간의 수련기간을 권리로 보장), 페даго지칼 리더(질 보증, 멘토링, 전문성 발달 등의 업무), 작업팀(Work Team: 한 반에 3명의 교직원),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의 안정화 등의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교사의 실무자격 취득 후 등록 교사가 될 때까지의 수련과정을 필요로 하는 자격승급제도를 갖춘. 교사의 등록과 실무자격증의 분리 그리고 실무자격증 만료 후 재발급 과정은 우리나라 장롱자격증 교사의 교육현장 재진입시 참고할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도 교사의 현장교육을 중시하는데 1)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양성과정에서 강화된 현장실습 2)자격교사에서 등록교사가 되기까지 2년 동안 현장에서의 멘토링 3) 등록교사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멘토링 및 전문성 개발 등이 요구됨
- 현장을 떠나 이론으로 진행되는 집합식 승급교육보다 현장에서 동료 교사의 멘토링을 통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멘토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함

○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

- 뉴질랜드에서는 등록교사의 확보율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보육의 질도 높여나가고 있음
- 등록교사의 확보율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는 정책은 등록교사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케 되므로 교사가 등록교사가 되려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운영자는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운영에 도움이 됨. 영유아와 부모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교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으며, 정부 또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유보통합을 통한 교사 양성체계의 질적 수준 고양

- 이상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둘러싼 양성체계와 지원체계의 통합을 위해서 일원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동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 경력, 처우 등은 끝없는 질적 차이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영유아기 교육과 보호의 상당 부분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유아들은 교사와 보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역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유아들의 일상생활 습관은 물론 정서, 인지, 언어, 신체 등 모든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최소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은 동일한 수준의 양성기관에서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사 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을 재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가 보육교사를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사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용,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보육교사를 유치원교사와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관련 정책에 비추어보았을 때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과정의 변화 추이

- 우리나라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에는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를 유치원교사 양성과 같은 폐쇄적 목적형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어 있음. 아직 모색의 단계이지만 연구진의 의견은 3년제, 개방형 학점제에서 학과 단위의 폐쇄형 목적제로, 학과도 관련 커리큘럼 편성률 80% 이상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이 실현(2022년까지 법제화, 2023년 실시 전망)되면 보육교사의 양성이 유치원교사 양성과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게 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현장의 교사와 원장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현직 교육 필요

- 스웨덴과 뉴질랜드의 신임교사 멘토링 제도나 실무자격 교사로부터 등록교사가 되기 위한 제도는 외부의 교육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멘토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현장에 있는 원장이나 경력이 있는 우수한 교사가 멘토가 되어 장학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현직교육 과정으로 관리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물론 멘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직교육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도록 해야 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원장이나 멘토교사에 대한 비용 지불과 경력 사항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직교육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등 권한위임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함

○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고려한 현직 교육: 대학에서 단일 학과목 수강

-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교사와 원장의 의무교육이 지나치게 많으며, 보수 승급 교육 또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며, 40-80시간 이라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정해진 내용이 이루어지므로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이 어렵고 동기유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통과 의례로 간주될 소지가 높음. 스웨덴 현직교육의 시사점은 대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점이며, 자신이 원하는 학과목을 신청해서 수강하므로 동기유발이 됨. 현

직교육 이수에 관한 법적인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면 서울시의 경우, 시립대나 MOU를 맺은 대학을 활용하여 수강생이 과목별 수강으로 이수하는 등 학점은행제식 현직연수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 필요

- 뉴질랜드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등록교사의 비율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둬으로써 등록교사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서울시의 정책 실행에서도 가급적 인센티브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면 목표 달성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예를 들어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중에는 인센티브보다는 디센티브 정책이 실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 목표의 순조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정책이 보다 더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원장 현직교육 필요

- 스웨덴에서는 1986년 국가와 지자체들이 관여하는 4단계의 원장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각 지자체에서 수정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일반직무교육 등의 의무교육 제도가 있으므로 비교 차원에서 제시함. 원장의 현직교육에서도 대학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1단계: 원장 지원자를 위한 모집훈련 프로그램. 원장의 리더십, 국가의 교육목표
- 2단계: 기초연수, 새로 임명된 원장의 처음 1년 동안 업무를 도움. 원장의 실제 업무와 행정적 업무에 초점. 교육적 리더십 소개
- 3단계: 원장 연수 국립 프로그램. 경력 1년 이상 2년 이하의 원장에게 30일 가량 교육 연수 제공.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 피르스콜라(프리스쿨)에 대한 국가적 목표,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 4단계: 심화연수 프로그램. 경력 2년 이상의 원장을 대상으로 함. 대학에서 제공

3. 교육·보육과정 방안

○ 스웨덴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 레러플랜

- 스웨덴은 교육부 이관 후 다소 늦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1998년). 2010년도의 개정에 이어 2018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98년도의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학습)이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본래 스웨덴의 교육과정은 생활과 놀이와 학습이 위계 없이 결합되는 것이었는데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성이 내재된 학습의 비중이 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 레러플랜(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언어, 수·과학, 기술(IT 포함) 분야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며 영유아기의 지식 습득이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 프리스쿨 교육이 중요성을 띠게 됨. 그러나 학교 교육과 같이 개별 교과목 교육이 강화되는 것

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교육, 영유아의 주도성을 살리는 교육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으며 일과와 놀이 과정에서 보다 의미 있는 교육활동과 내용이 접목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고, 활동은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짐. 그러나 구체적인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했다기보다는 유아의 주체적 활동을 중시하는 레지오 에밀리아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교사의 교육전문성과 유아교사 및 원장의 교육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 테파리키

- 뉴질랜드는 유보통합 후 최초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테파리키가 만들어짐. 이것은 기존의 다양한 교육철학과 아동 및 가족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 맥락을 반영한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개발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에 대해 각계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개발에만 5년 이상이 걸림.
- 또한 테파리키 교육과정에 기반한 아동 평가방법인 ‘러닝 스토리’를 개발함. 러닝 스토리의 실천을 위해 풍부한 사례와 구체적인 성찰을 위한 질문을 담은 20권의 책자가 개발되었음. 즉 교사들은 테파리키를 기반으로 교육적 실재를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교사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 이 평가방법은 전통적인 목적 기반 평가가 아니며, 아이들에게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는 내러티브 방법의 일환임. 아동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여하며, 부모나 확대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지속성 있는 평가임. 우리나라의 개편되는 누리과정의 평가도 특정한 형식이 없이 교사들 스스로 평가방법을 만드는 것인데, 러닝 스토리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스웨덴,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의 개정과 현재 상황

-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개정이 기존의 지나친 교사주도, 학습 위주 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 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의 경우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습의 비중을 높인 교육과정으로 개정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경우도 놀이와 학습, 영유아 주도과 교사주도 간의 균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개정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개정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유아중심의 구체적 실천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임
- 글자와 숫자, IT에 단순하게 다량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실천하는 현장,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교사, 영유아의 놀이와 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현장까지 다양한 모습이 공존하는 상황임
- 특히 IT 강화에 대해서는 스웨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미 영유아가의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과도한 상황에서 심각

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임

- 따라서 보육선진국의 교육과정을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나 한국의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영유아의 삶과 현실에 걸맞으면서도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임

○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과정의 변화 추이

-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래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는 아동중심·놀이중심·흥미중심·생활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교사중심·수업중심·지식중심·주제중심 교육을 실행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만3~5세 누리교육과정은 내용의 획일화는 물론 예산지원 및 기관 평가인증 및 누리과정지원비와 연계하여 획일화 및 강제적인 적용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권과 행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었음
- 표준보육과정(3~5세 누리과정)은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2012년 3월부터 만0~2세 및 만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13년에 3~4세까지 확대되었음
- 이미 일원화된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유아의 자발적 놀이 중심으로 개편되어 2020년 3월부터 현장에 접목될 예정임. 즉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함
- 아이들은 '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기존교육과정과 달리 본인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됨
- 교사와 원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양국의 실천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영유아들의 감성과 상상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체제의 대 전환을 위해 지방분권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자체별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보육의 혁신이 필요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개정과 평가제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교사나 원장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청 사이트에 교사들의 실천을 돕는 풍부한 사례를 제시해 놓았는데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누리과정의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험적 적용이 절실함. 그 예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친화형 보육'은 어른 편익 중심이 아닌 아이의 성장 발달 및 행복

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천을 돕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연수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지원 뿐 아니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여건이 필요함
-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할 때 실외놀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나 인근 공원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하고 자체 놀이터가 없는 경우 인근의 실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서울시 자체의 실태 조사부터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 환경과 인적 여건 조성을 위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서울시가 함께 모색해 나가야함

○ 교사가 영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는 개별 현장에서 영유아와의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실천을 개발하는 것임. 이는 뉴질랜드의 교사들이 테파리키를 기반으로 교육적 실재를 개발하도록 요구받는 상황과 유사하며, 스웨덴의 경우에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교육활동은 다양하게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교육 실천을 소통할 수 있는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25개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사, 원장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교사와 원장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교육 네트워크는 일방적, 하향적, 집단교육 방식보다는 교사와 원장이 교육내용과 실천에 대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그룹의 수평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서울시의 의견 개진 및 수렴과 더불어 현장의 지원 요구에 따라 전문가가 결합하는 방식이어야 함
- 현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셀프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어린이집에서의 자율컨설팅을 기반으로 지역(또는 서울시)의 교사와 원장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율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요구됨

4. 평가 관련(평가제도, 질 관리) 문제

○ 스웨덴의 평가제도 추이

- 스웨덴의 영유아교육기관은 국공립의 비중이 높아 사적 이익과 충돌되는 지점이 적었기 때문에 1인당 실외놀이 면적, 유아교사의 비율, 보조교사 자격 기준 등에 대해 의외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점차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질을 강화하는 추세임
- 하지만 스웨덴은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도 매우 강조되고 있음. 또한 일상적으로 부모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교사의 상호작용 등 보육 상황이 부모에게 등하원 시 일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상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료됨
- 사립기관의 적정한 재정적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질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사립기관에 대한 재정적 자율권 보장이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스웨덴은 평가에 있어 자발적, 참여적 접근을 중요시하던 추세에서 최근 재중앙집권화 추세(학교감사관)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질적 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영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질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자체 평가에 기반한 것이며 스웨덴의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성이 내재된 학습의 비중이 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 뉴질랜드

- 사립의 비중이 높은 뉴질랜드는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공공서비스부 소속의 ERO가 맡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은 ERO와 ERO 보고서를 통해 개별 유아교육 보육기관의 교육을 점검하고 운영을 평가함
- 평가제도 실시 과정에서 자체 평가의 비중이 높는데 그 이유는 외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와 달리 보육교직원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운다는 점임.

<표 V-2> ERO의 평가 : 높은 자체 평가의 비중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의 평가를 담당하는 ERO는 교육부가 아닌 공공서비스부 소속임. 이는 실행 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평가지표 개발 시 뉴질랜드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의 연구결과를 중시함 - 뉴질랜드는 자체 평가의 비중이 높음. 이는 평가기준의 충족뿐 아니라 개별 센터의 맥락 안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자체 평가 과정에서 지금까지 실행한 것과 그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성찰하도록 함 - 평가 절차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 의해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됨 |
|--|

○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관리

-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관리는 단순히 ERO를 통한 평가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음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교사의 질적 수준 관리: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교사의 질은 3년마다 실무자 격증 갱신(이는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과 성찰 그리고 멘토 교사나 지도자의 멘토링을 통해 꾸준히 관리됨)으로 효과를 보고 있음
 - 부모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리: 러닝 스토리 등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학습 과정에 대해 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와 가족도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기관과 교사의 교육의 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기여할 수 있음
 - 열린 교실: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실 내 상호작용은 부모의 자연스런 교실 출입을 통해 상시적으로 자연스럽게 확인됨(공적인 평가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교구 등의 환경준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
 - 상부 단체나 기관을 통한 개별 센터에 대한 질적 관리와 지원: 유치원협회의 교육서비스매니저나 가정기반서비스제공자 소속으로 가정기반센터를 관리,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처럼 각 기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있음. 평가를 대비한 준비가 아니라 평소에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함으로써 정기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함. 또한 ERO는 평가지표에 따른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질적 수준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려줌
 - 재정지원과 규제를 통한 질적 수준 관리: 국가는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자격교사비율에 연계한 보조금 지급 비율)과 인가 규정 등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통해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 부모의 선택권 보장에 따른 질적 관리: 부모에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기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관들 간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이는 곧 질 제고로 이어짐

○ 영유아보육·교육기관의 평가제도 추이

- 우리나라는 2019년 6월(현장평가 기준 9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도입되었음.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가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왔음. 따라서 특히 물리적 환경기준은 인가규정과 평가기준의 동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예를 들어 실외놀이나 낮잠 관련 지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실외놀이터와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법령 및 인가 기준에 이러한 부분이 없거나 예외 규정을 둬으로써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음
- 또한 평가지표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중장기적 안목이 반영되어야 함. 예를 들어 누리과정의 개편 등도 평가지표 개선에 반영되어야 함. 즉, 교육과정이 대강화(大綱化)되어 있으므로 평가도 대강화되어야 되며 이를 위한 고려가 제시되어야 함

- 나아가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질 관리에 대한 관점 등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즉 영유아기관에 대한 획일화된 평가시스템을 통해 누리과정 지도서식 운영을 강제한다면 기관의 교육철학과 지역 특성, 기관 상황, 영유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현이 어려울 것임
- 향후 발전 방향은 특별한 점검이나 감사, 평가 위주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개방 등 일상적인 질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평가에 앞서 기본적 사항의 질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
 - 양국에서는 인적, 물적 환경, 교육과정 준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에도 교사 대 아동비 적정화, 실외놀이터 설치 및 실외놀이를 위한 실외 공간 확보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과도한 특별활동과 대집단 활동 제한 등 기본 사항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인 인적 여건, 물리적 여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 계획과 함께 연간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관리를 해야 함
- 실태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천, 평가와 계획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 서울시 보육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전략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개별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표 V -3> 뉴질랜드 유아교육 전략 계획:단계적 실행 방안(2019-2029)

		단기	중기	장기
목표 1	아동을 위한 질 향상	개선된 2세 미만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도록 혜택을 제공하다 규제사항으로 전환	개선된 2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도록 혜택을 제공하다 규제사항으로 전환	
		기관에서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유자격교사가 100%인 교사주도 센터에 대한 혜택 제공	2022년까지 교사주도 센터에 대한 유자격교사 80%(이상으로) 규정	교사주도 센터에 대한 유자격교사 100%로 규정	
	집단 크기와 환경에 대한 권고안 개발			
	유아교육과정인 테파리기를 관보에 기재함으로써 공유된 기대감을 조성			
	질적 수준이 낮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규 인가 방지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목표 2	모든 아동	필요한 아동에게 형평성기금이 지원되도록 조치		
		아동의 학습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의역량강화	평가도구 공동개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유아서비스 기관의 수를 확대			
목표 3	교직원에 대한 투자		교사의 급여와 근무조건에 대한 서비스유형 전반에 걸친 일관성 및 수준 개선			
		교사 양성 교육(초기 교사 교육) 강화				
		전문성 개발 방안 개선				
		교사 수급 전략 개발				
목표 4	서비스공급 계획		신규 서비스 필요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의 개발 및 도입			
		지역사회 소유 서비스에 대한 자문 및 관리 지원 제공				
			교육부 부지에 유아교육서비스 기관 설립 및 유지 지원			
		코향가레오 재단과 함께 적절한 재정지원 모델 설계				
		놀이센터 연합회와 함께 적절한 재정지원 모델 설계				
			국가 소유의 유아교육서비스 기관 설립 검토			
목표 5	혁신과 개선		유아교육서비스를 위한 혁신 센터 설립			
		유아교육서비스 기관과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업 지원				
		지속적 개선을 위한 충실한 내부 평가 지원				

출처: Ministry of Education(2019). Strategic plan for early learning 2019-29: Draft for consultation. p45.

- 영유아와 교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질 관리 관점 보완 필요
 - 영유아와 교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질 관리에 대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보육정책 전반을 영유아와 교사, 부모의 권리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함(예 : 아동영향평가)

- 서울형 선정 평가와 국공립 전환 시 서울시 정책 목표 반영
 - 뉴질랜드의 경우 인가규정과 평가기준의 내용이 동일한데, 이는 인가를 비교적 수월하게 받은 다음 평가를 통해 질을 높이려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다른 점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운영을 개시한 운영자가 인가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해왔음.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낮잠을 재워야하는 것이 평가와 보육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낮잠을 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인가 기준임
 - 서울형이나 국공립 전환시설을 선정할 때 운영과정에서 바꾸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 등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두어 선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자체 놀이터가 없더라도 외부 실외놀이터 이용의 용이성은 보육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요소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됨

- 평가와 점검에 우선하는 부모에 대한 일상적 개방을 통한 질 제고
 - 특별한 점검이나 감사, 평가 위주가 아니라 등하원 시 부모에 대한 실내외의 일상적인 개방 등 일상적인 질 관리에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는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음. 향후 서울시 정책에 더욱 고려할 점이라고 사료됨
- 보육교직원의 지속가능한 역량 증진을 위한 자체 평가 실시
 -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제도 실시 과정에서 자체 평가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외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와 달리 보육교직원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서울형 평가제도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전반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뉴질랜드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서울형 평가과정에서도 서울시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야 함. 이는 서울시 어린이집의 인적 여건과 물리적 상황 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현재 처한 상황을 토대로 한 단계씩 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의미함

5. 영유아권리/ 교사 권리/ 부모 권리

가. 영유아 권리

- 스웨덴
 - 영유아의 주도성을 살리는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보육시간: 부모의 취업 여부 등 보육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장시간 집단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며, 부모와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 접근성: 10분 이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감독관(유치원 포함)의 중점 점검사항에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가 포함되어 있음
 - 하계 영유아의 장기 휴가(방학)사용: 영유아의 쉼 권리
 - 교사의 휴가기간이 5주 정도 되며,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교사의 휴가기간이 거의 비슷하고, 휴가기간 동안 등원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인근 프리스쿨 중 한 프리스쿨만 오픈하여 보육이 이루어짐. 2013년의 경우 5주 휴가기간 중 6개 프리스쿨에서 12~15명의 영유아가 1주 정도 등원하였음(보육진흥원 2013년 연수보고서)
- 뉴질랜드
 - 영유아교육과정인 테파리키는 아동에게 권한을 부여(empowerment)하는 것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 있음.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영유아에게 주도성을 줌으로써 영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과정임. 유아주도성의 문제는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최대 관건이 되고

있음

- 영유아의 활동과정을 기록한 러닝스토리를 학부모만이 아니라 영유아와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음. 인터넷으로만 부모에게 알릴 때 영유아가 공유하는 측면이 제약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육과정에 대한 기록이 영유아를 위한 기록이기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 ERO의 평가 틀은 아동을 중심으로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ERO의 주된 관심이 아동에게 있음
- 유아의 보육료 지원이 20시간 무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영유아 모두 저소득이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 높은 비용의 실비를 내야하므로 영유아의 보육시간에 제한이 있음. 이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않는 보육시설에서의 단체 생활 시간에 제한을 두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유아가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뉴질랜드에는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과 특정대상을 위한 표적 기금이 있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 장애유아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아, 영어 이외의 언어 문화권 등의 아동을 지원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보육과정 운영에서의 권리존중

- 우리나라의 누리과정 개정 방향도 영유아의 주도성과 영유아의 권리를 강조하는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이며 평가제의 보육과정 운영 방향도 마찬가지임. 그러나 아직까지 교사 주도적인 활동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으므로 개선이 시급함
- 평가제의 보육과정 1-1 지표 내용이 영유아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며 필수지표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의 보육정책에서도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존중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구체적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관리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운영 시간에서의 권리존중 : 장시간 보육은 최소화해야 함

- 스웨덴의 프리스쿨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11시간 이상이나 개별 영유아의 이용시간은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한해서 이루어지도록 함. 뉴질랜드 또한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른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양육자의 단시간 보육 이용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특별한 기준 제시 없이 장시간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보육체계 개편에서는 영아의 장시간 보육은 구체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유아는 부모의 요구에 의함. 아직까지 유아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에서도 보육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서울시가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정의 구체적 필요에 준해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

○ 영유아의 쉼 권리 보장: 동계, 하계 출석 일수 준수에 융통성 필요

- 스웨덴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여름 하계 휴가기간이 일치함으로써 영유아의 대다수가 등

원하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영유아가 연중 계절과 무관하게 11일 이상 출석해야 지원금이 100% 지급되므로 부모가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7, 8월에도 영유아는 11일 이상 출석이 의무임. 이는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정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영유아의 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와 여행을 다니는 것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교와도 비교되는 사항임

- 또한 여름과 겨울은 교사의 연차 집중휴가 기간이기도 하며, 향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부모와 영유아의 관계 형성도 중요하므로 여름과 겨울의 1개월(또는 여름 2개월) 정도는 11일 이상 출석과 보육료 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부모의 사유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함
- 보육료 지원은 중앙정부 소관이므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에서의 권리존중: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뉴질랜드의 경우 유아교육 형평성 기금이나 표적 기금을 통해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동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웨덴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에도 다문화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재원율이 높은 지역이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보육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아동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다문화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경우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차량 운행에서의 권리존중: 점진적으로 차량운행 금지

- 향후 점차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가까운 어린이집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함. 우리나라 또는 서울시 내 아이들의 평균 차량 이용 시간 조사 결과 평균 27.46분임(전국보육실태조사 2018년, 보건복지부)

나. 교사 권리

○ 스웨덴 영유아기관에서는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교사의 권리도 존중하고 있음

○ 대체교사 인력풀 활성화

- 교사 휴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인력풀이 잘되어 있으며, 시간제 교사 활용도 또한 높음(전직교사 인터뷰, 최윤경 외, 2016)
- 단기 대체교사는 자격이나 연령 제한 없으며 2주 정도의 단기교육으로 가능함
- 교사가 휴가를 가는 경우 원장이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함

○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배려

-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함
- 놀이터 그네를 없애게 된 이유를 말하면서 교사가 그네를 밀어주는 것이 교사가 힘든 것 때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함
- 교사들이 유아들을 돌보기 위해 구부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하므로 바퀴가 달린 의자 마련해서 사용
- 기저귀 갈이대에 영아가 직접 오르내릴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거나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리모컨을 설치한 전동식 기저귀 갈이대 사용
- 교사 휴게실로 사용되는 별도의 공간 마련
- 휴게시간 준수

○ 유아교사와 보육사 간 위계가 없는 업무 분위기

- 대학에서 3년 반을 이수한 유아교사와 고등학교 또는 성인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배출된 보육사 간 교실 내 업무의 구분이나 위계가 없는 분위기에서 근무
- 스웨덴 사회 전체가 위계나 상하의 구별이 없는 직장 문화임
- 그러나 점차 영유아기의 교육이 중시되면서 유아교사의 교육적 책임에 대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임

○ 노조 조직 활성화

- 교사는 교원노조에 가입해서 권익을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유아교사는 초등교사와 같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음
- 교원노조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및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 유아교사들의 지속적인 직무발달을 돕는 등 중요한 역할 수행
-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실업연금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력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함
- 스웨덴의 노조는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권익 중심으로 활동 함
- 유아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강의와 토론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네트워크에도 활발하게 참여함
- 아동과 교사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부모-교사 간 갈등 시 노조가 개입하지 않고 코문이 개입하며, 심각한 경우 학교감사관이 들어옴

○ 교사와의 소통

- 스웨덴의 경우 1년에 1-2회 교사 설문조사를 부모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대체교사 인력풀 강화

- 대체교사 인력풀 강화할 필요 있음
- 현재 질병, 육아, 연차 등 휴가 사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향후 연차휴가 확대를 대비하

여 대체교사 인력풀을 강화해야 함

- 교사의 일상적 근무여건에 대한 세심한 배려
 - 교사의 근무여건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들어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 있음. 현재 휴게실 등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곳이 많은 상황임
 - 물리적 공간 뿐 아니라 근무환경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야 함
- 보육교직원 간 상호 권리존중 풍토 요구됨
 - 우리나라도 보육교사 뿐 아니라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보육교직원 인력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보육교직원 간 상호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향후 연장근무 교사 등에 대한 상호 배려가 필요함
- 교사와의 소통 활성화
 - 서울시는 교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교사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교사들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SNS를 기반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교사들이 자원해서 참여하는 가칭 ‘교사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정기적,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권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노조 조직 활성화
 - 스웨덴 교사의 경우 노조 조직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권익이 신장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특히 보육은 소규모 사업장 위주이므로 노조 가입률이 높지 않음
 - 뉴질랜드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킨더가르텐의 경우 교사가 노조에 가입해 있고 사립인 교육보육센터의 경우 교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노조 조직 가입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임금의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항임
 - 스웨덴 노조가 실업연금을 관리함으로써 조직률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노조 가입을 권유²³⁾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불이익 등을 감수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요인이 있을 때 조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봄.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관련 사업권의 일부를 노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노조와 교사의 접촉면을 확대시키고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다. 부모 권리

- 대표 중심의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회로의 전환

23) 방송을 통해 권유하고 있음

- 스웨덴과 뉴질랜드는 모든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회와 일상적인 개방과 소통을 통해 부모가 의사결정에 참여함
- 부모회는 1년에 1-4회 정도 전체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간담회로 운영되고 있음(전 교육청 국장; 전직 교사; 예테보리대학교 교수; 현직교사 인터뷰)
- 프리스쿨의 모든 책임은 교직원이 맡지만 부모가 영향을 미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음(교육부)
- 부모회에서는 원장이 운영의 중점사항을 말하면 부모들이 의견을 이야기함
- 부모가 집중학습 내용에 대해 투표로 결정에 참가하기도 하는 등(스티커 붙이기, 과학, 언어, 민주주의, 견학 등에서 선호하는 것 투표) 다양한 방식의 부모회 운영이 이루어짐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운영위원은 한 반에 1-2명을 부모들이 결정
- 1학기 1회 정도 개최. 그러나 이곳에서도 전체 부모가 모이는 부모회가 더 큰 역할을 함(전직교사)
- 운영위원회는 현재 축소되었으며 역할이 크지 않음. 특정 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실익이 없다는 생각은 생각을 하게 됨(예테보리대학 교수)
- 운영위원을 통해서보다는 부모가 직접 소통하며, 등하원시에 교사와 직접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함. 원장과의 직접 전화 가능(전직교사/ 원장이 여러 곳을 관리하므로 전화라는 표현을 썼을 수 있었음)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전체 부모와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

- 대표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소수 부모의 참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부모회와 같이 부모 전체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운영위원을 부모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반의 대표성을 가지고 학급 전체 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되어야 함
- 부모에게 무언가 준비해서 보여줘야 하고 부모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의사를 충분히 보육과정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가야 함
- 현재 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수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 구체적 보육 상황에 대해 부모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

- 부모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개방을 통한 보육 상황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 보육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부모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 참여에 그치게 됨

참 고 문 헌

- 고민경, 권건일(2007).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 고찰.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3), 49-79.
- 곽노의(2007).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방안 모색. 교원교육, 23(2), 45-80.
- 권건일, 김재환, 최순자(2007). 쟁점연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 분석. 유아교육연구, 27(6), 67-100.
- 국무조정실(2013). 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12.3.
- 국무조정실(2014). 국무총리소속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 14일 공식 출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2.14.
- 국무조정실(2015). '제5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허용방안(안). 2015.9.2.
- 김은설(2011).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과정. 육아정책포럼 25, 26-34.
- 김은설, 김문정 편역(2010).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영, 김길숙, 이연주(2016).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비한 교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 교사양성기관 교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3(1), 141-160.
- 김종필(2013). 유보통합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의 대처 및 발전방향, 한국가정분과위원회, 국가책임제보육실천을 위한 유보통합·영아보육지원확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50-63.
- 김현정(2018).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모색,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 공병호, 한유미, 장혜진, 이완정, 김연하 역(2018). Starting Strong V: 아동 교육·보육에서 초등교육으로의 연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OECD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Paris: OECD).
- 김혜진, 손유진, 전윤숙(2014). 일본의 유보통합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일본근대학연구 47.
- 류민정(2013).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제도적 개선방향. 행·재정적 관점에서 본 유아교육 및 보육의 실태와 통합방안 정책토론회. 현영희 의원실.
- 박은혜, 장민영(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비교: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교육과학연구소, 47(1), 149-180.
- 송기창(2009).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위한 재정 시스템 설계. 유아교육연구, 29(4), 197-216.

- 신은수, 박은혜(2012).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의 재방향 설정. 육아지원연구, 7(1), 27-50.
- 유해미, 서문희, 한유미, 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윤인숙(2016).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인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희(2016).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 김은설, 신나리, 문무경, 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일주(2013). 유보통합 어떻게 논의 되고 있는가?, 유보통합 제1차 정책토론회 ‘유보통합’ 현장에서 그 길을 묻는다. 20-43.
- 이일주(2008).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317-332.
- 이일주(1991). 한국 유아교육 일원화 체계 모형 탐색.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옥(2015). 단계별 유보통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35(6), 221-240.
- 임명희(2014). 유아교육기관 평가체계의 통합과 방안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4(2), 83-102.
- 장명림(2014). 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6, 465-481.
- 장명림(2013a).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정책적 측면에서. 한국유아교육학회, 7-26.
- 장명림(2013b). 유보통합모형 탐색과 통합 추진 현황.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 73-86.
- 장신애(2015). 유보통합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영인(2014).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교육중심의 통합에 대한 보육관점의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87, 113-142.
- 장혜진, 송신영(2014). 유아교육과 보육 질관리 국제비교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2013). 유보통합과 유아교사의 전문성. 한국유아교육학회 사단법인 창립총회 및 추계정기학술대회.
- 조부경(2013). 유아교육·보육통합을위한교원정책방안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23-53.
- 지성애, 홍혜경, 이정옥, 장명림(2015). 유아교육, 보육 통합 모델 구축. 유아교육연구, 35(5), 5-29.
- 최미미(2018). 일본 유보통합기관 교원의 보육 실천 사례 연구-: 분쿄구립(文京区立) 보육 소형 인정이유아원을 중심으로-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보육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 최윤경, 김은설, 신동주, 장혜진, 박창현, 홍성은(2015). 유아교육(ECEC)교원 양성·자격정비 및 재교육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김은영, 김나영, 김승진(2016). 유아학비 지원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 김윤환 이해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한유미, 오연주, 권정윤, 강기숙, 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 한유미(2009). 보육바우처 도입의 과제: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3(1). 33-57.
- 한유미(2010a). 스웨덴의 유아학급 설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취학연령 하향화 대처 방안. 한국생활과학회지, 19(4).1-17.
- 한유미(2010b). “북유럽의 육아지원정책: 육아휴직, 양육수당, 보육제도를 중심으로”. UNI-KLC(국제사무직노조연합 한국협의회) 주최 ‘한국과 북유럽 국가의 보육정책 비교’ 세미나 발표. 2010. 11. 30. 서울 한국노총 국제세미나실.
- 한유미(2010c). 스웨덴의 보육바우처: 나까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0. 10. 27. 서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바우처 전문가 간담회발표 자료.
- 한유미, 권정윤, 신미자 역(2011). 북유럽의 아동기와 유아교육: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철학, 연구, 정책, 실제. 고양시: 한권(J. Einarsdottir & J. T. Wagner.(Eds.) Nordic Childhoods And Early Education: Philosoph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in Denmark, Finland, Iceland, Norway, And Sweden.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Inc.)
- 한유미(2013).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보육 제도. 스칸디나비아 연구, 14, 181-214.
- 한유미(2016). 핀란드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14, 219-248.
- 한유미, 조경자(2018). 스웨덴 아동 보육·교육기관 평가의 배경과 실제. 스칸디나비아 연구, 22. 149-180.
- 홍인혜(2006).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통합정책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원, 40, 7-122.
-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7.07.11.
- Aronsson, L.(2019). Building a Better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Lessons from Each Other’s Experiments and Movements : bottom-up process of generating national early childhood curriculum in Sweden. 2019 한국 유아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2019. 9. 28.
- Bennett, J. & Kaga, Y.(2010),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Systems with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4(1), 35-43.
- Cottell, J.(2018). Why is early years provision so different in Sweden and the UK?
<https://www.familyandchildcaretrust.org/why-early-years-provision-s>

- o-different-sweden-and-uk.
- Education Review Office(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 Engdahl, I.(2004). Implementing a National Curriculum in Swedish Pre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0(2), 53-78.
- EURYDICE(2018). Sweden Overview.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urydice/content/sweden_en
- Giardiello, P., Häikiö, T. K., & Mårtensson, P.(2019). Reggio Emilia(With perspectives from Sweden). In McLeod, N. & Giardiello, P.(Eds). *Empowering Early Childhood Educators: International Pedagogies as Provocation*. NY: Routledge.
- Garvis, S.(2018). Country report: Sweden. European Union.
- Karlsson, R., Bigsten, A., & Garvis, S.(2018). A snapshot of substitut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Sweden and Australia: Differences in training, regulation and quality. *Journal of Early Childhood Studies*, 2(1). 21-32.
- Korpi, B. M.(2016). The Politics of Preschool -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Stockhol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Lohmander, M. K.(2017). Sweden: ECEC workforce profile 2017. State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Research.
- Manning, S.(2016). Meade Report/Before Five. *Dictionary of Educational History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DEHANZ)*, Available: <http://dehanz.net.au>
- Meade, A., & Podmore, V. N.(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Department/Ministry of Education-A Case Study of New Zealand*. UNESCO: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 no.1.
- Meeting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The Institute for Child & Family Policy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2000.5.11.~5.12.
- Miller, L., Cameron, C., Dalli, C., & Barbour, N.(Eds.)(2017). *The SAGE Handbook of Early Childhood Policy*. L.A.: Sage reference.
- Ministry of Education(2019). Strategic plan for early learning 2019-29: Draft for consultation.
- Ministry of Education & Education Counts.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Moss, P. (2000). Workforce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Consultative.

Murata, K.(2014). Overview and Recent Issues of New Zeal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Te Whāriki).

https://www.childresearch.net/projects/ecec/2014_04.html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cation.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New Zealand.

Schreyer, I. & Oberhuemer, P.(2017). Sweden: Key context data. State Institute of Early Childhood Research.

Shelbi Aris Taylor.(2018). Redefining *Undervisning* for Swedish Preschool: Viewing preschool teachers' conceptions of teaching through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Thesis Project, Jönköping University.

Skolverket(2017). PM - Barn och personal i förskolan hösten 2016. [Memorandum on Children and Staff in Preschool, Autumn 2016]. <http://www.skolverket.se/publikationerid=3777>.

Tyler-Merrick, G., Phillips, J., McLachlan, C., McLachlan, T.,Aspden, K., & Cherington, S.(2018).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otearoa/New Zealand, Routledge.

<인터넷 사이트>

<https://education.govt.nz/early-childhood/funding-and-data/funding-handbooks/ece-funding-handbook/> (2019.07.23.인출)

<http://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employment/attestation/> (2019.09.20.인출)

<https://www.educationcounts.govt.nz/publications/ECE> (2019.08.17.인출)

<http://www.nztertiarycollege.ac.nz/early-childhood-education> (2019.09.20.인출)

<https://teachingcouncil.nz/> (2019.09.20.인출)

<https://www.teachnz.govt.nz> (2019.09.20.인출)

<https://tewhariki.tki.org.nz/en/te-whariki-foundations> (2019.09. 21.인출)

<https://www.waikato.ac.nz/study/> (2019.09.20.인출)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연구기관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연구자 공병호, 최인화, 한유미

발행일 2019년 10월

발행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02-2133-5092(代)

ISBN 979-11-6161-738-1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 품/무료

